정책연구자료 96-04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現況과 政策課題

下 傛 粲 李 相 暎 李 尚 憲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目 次

I. 基本方向 ····································
Ⅱ.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1.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運營 改善15
2. 施設從事者의 處遇改善
3. 無許可 社會福祉施設의 陽性化36
4. 社會福祉法人의 規制合理化 43
Ⅲ. 要約 및 政策建議
參考文獻
附錄 主要 統計表
附錄 1. 社會福祉 收容施設
附錄 2.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80
附錄 3. 無許可施設91
附錄 4. 社會福祉法人

表目次

〈表	1>	法人代表理事와 社會福祉 收容施設 施設長간의 關係	16
〈表	$2\rangle$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의 採用方法	16
〈表	3>	豫算을 總額으로 支援하는 데 대한 意見	18
〈表	$4\rangle$	定額支援(小規模施設)과 遞減率 適用(大規模施設) 方式에	
		대한 意見	18
〈表	5>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收容率	19
〈表	$6\rangle$	社會福祉 收容施設 入所者의 入所經路	21
〈表	7>	社會福祉 收容施設 入所 要件	21
〈表	8>	社會福祉 收容施設 退所 理由	21
〈表	$9\rangle$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老朽期間 分布(棟 基準)	22
〈表	10>	保健衛生施設 現況	23
〈表	11>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建築狀態(棟 基準)	23
〈表	$12\rangle$	스프링클러 設置與否 및 設置面積	23
〈表	13>	火災保險 加入現況	24
〈表	$14\rangle$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入所人員 現況	25
〈表	15>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居室當 收容人員	26
〈表	$16\rangle$	現行「社會福祉事業法」의 施設設置 基準 緩和에 대한	
		意見	26
〈表	$17\rangle$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分布	28
〈表	18>	1日 平均 勤務時間 分布	29
〈表	19>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數	31
〈表	20>	施設從事者의 社會福祉士 資格證 所持率	31
〈表	21>	專門施設從事者의 未確保 理由	32

〈表 22〉	施設從事者의 지난 1年 동안 訓練 經驗 與否32
〈表 23〉	施設從事者의 지난 1年 동안 받은 訓練의 도움 與否 33
〈表 24〉	從事者의 職位 및 職種別 平均 給與額34
〈表 25〉	施設從事者의 未認定 類似經歷 年數34
〈表 26〉	諸 手當 受給率35
〈表 27〉	其他 福祉給與 受給率
〈表 28〉	施設從事者의 現 職場 不滿足 理由35
〈表 29〉	無許可施設 收容人員 現況37
〈表 30〉	入所經路37
〈表 31〉	從事者 1人當 入所者數38
〈表 32〉	收入規模斗 源泉別 構成比38
〈表 33〉	無許可施設 運營 宗教團體別 後援金現況39
〈表 34〉	無許可施設 支出項目別 構成比39
〈表 35〉	施設 및 設備의 不良率41
〈表 36〉	火災保險 加入率 및 스프링클러 設置率41
〈表 37〉	無許可施設 從事者 現況37
〈表 38〉	從事者의 賃金水準
〈表 39〉	社會福祉法人의 收入現況(1995年 決算基準)45
〈表 40〉	社會福祉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 保有 現況45
〈表 41〉	社會福祉法人의 資産現況45
〈表 42〉	社會福祉法人의 自負擔 規程에 대한 意見46

附表目次

〈附表 1- 1〉	社會福祉 收容施設 調査完了率
〈附表 1- 2〉	地域 및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分布55
〈附表 1- 3〉	設立年度 및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分布
〈附表 1- 4〉	宗教 및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分布
〈附表 1- 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1個 施設當 平均定員 對
	平均現員
〈附表 1-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者의 入所經路分布56
〈附表 1- 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退所者의 退所理由
〈附表 1-8〉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數 57
〈附表 1- 9〉	老人施設 從事者數 57
〈附表 1-10〉	兒童施設 從事者數 58
〈附表 1-11〉	障碍人施設 從事者數 58
〈附表 1-12〉	母子/婦女施設 從事者數
〈附表 1-13〉	精神療養施設 從事者數 59
〈附表 1-14〉	浮浪人施設 從事者數60
〈附表 1-15〉	結核施設 從事者數60
〈附表 1-16〉	癩障碍人施設 從事者數 61
〈附表 1-1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各 福祉厚生制度 있는 比率 61
〈附表 1-1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各 手當制度 있는 比率61
〈附表 1-19〉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總收入62
〈附表 1-2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總 後援金 및 施設當
	平均後援金62
〈附表 1-2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總支出 및 支出項目別 支出 62

〈附表 1-22〉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敷地面積 및 施設當 平均面積 … 63
〈附表 1-23〉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建築面積 및 施設當 平均
	建築面積63
〈附表 1-24〉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建築物 老朽期間 分布63
〈附表 1-2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建築狀態63
〈附表 1-2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事務室數 및 面積64
〈附表 1-2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保健衛生施設64
〈附表 1-2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安全設備 現況65
〈附表 1-29〉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火災保險 加入與否 및
	스프링클러 設置與否67
〈附表 1-3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지난 5年間 施設當 平均
	收容人員 增減推移67
〈附表 1-3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法定 施設運營基準 遵守與否 68
〈附表 1-32〉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者의 收容形態 및 入所制限 …69
〈附表 1-33〉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收容能力 및
	適正收容人員 規模69
〈附表 1-34〉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者에 대한 職業教育實施
	與否 및 未實施 理由70
〈附表 1-3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行政機關, 他 社會福祉 收容施設과
	有關團體와의 協助關係71
〈附表 1-3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專門從事者 確保의 어려움 및
	重要 從事者 資質72
〈附表 1-3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在 活動하는 自願奉仕者 및
	施設當 平均 自願奉仕者數72
〈附表 1-3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在 活動하는 自願奉仕者에
	대한 態度73

〈附表 1-39〉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後援者數 및 後援 結緣事業에
	대한 態度 ·············74
〈附表 1-4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訪問者에 대해 가장
	바라는 점
〈附表 1-4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 事業內容에 대한 反應 및
	施設 移轉意思75
〈附表 1-42〉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開放化를 위해 가장
	效果的인 方法
〈附表 1-43〉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自體에서 하고 있는
	收益事業76
〈附表 1-44〉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95年度 總 收益金額 및
	平均金額76
〈附表 1-4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현행 政府補助金 支援方式인
	收容人員 比例方式에 대한 意見77
〈附表 1-4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行 項目別 豫算編成·執行方式을
	탈피하여 總額으로 支援하는데 대한 意見77
〈附表 1-4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總數, 單純勞務者 및
	社會福祉士 比率77
〈附表 1-4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行 施設運營主體 制限規定에
	대한 意見 ···································
〈附表 1-49〉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현행 施設設置基準에 대한 意見
	및 適定 收容人員78
〈附表 1-5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無許可 施設을 合法的으로
	許可하는데 대한 意見 78
〈附表 1-5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長과 法人代附表理事와의
	關係78
〈附表 1-52〉	兒童福祉 收容施設의 小宿舍 形態79

〈附表 2- 1〉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一般特性 百分率 分布(Ⅰ)80
〈附表 2- 2〉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專攻 百分率 分布 및 資格證
	(免許證) 數
〈附表 2- 3〉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현재 職位 및 職種 百分率 分布 82
〈附表 2- 4〉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職場 採用 方法, 現施設
	從事期間 및 社會福祉에 從事한 總期間 百分率 分布 83
〈附表 2- 5〉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施設에 勤務하기 以前
	다른 施設에 勤務한 經驗 및 다른 施設로 옮긴 理由
	百分率 分布
〈附表 2-6〉	從事者의 現職位 및 職種別 認定받지 못하고 있는
	類似經歷 年數
〈附表 2- 7〉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1日 平均 勤務時間 百分率 分布 85
〈附表 2-8〉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社會福祉 收容施設에 從事하게 된
	動機 百分率 分布
〈附表 2- 9〉	現職位 및 職種別 社會福祉 收容施設에 從事하게 된 動機
	百分率 分布
〈附表 2-10〉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職場의 滿足度 및 不滿足 理由
	百分率 分布
〈附表 2-11〉	現職位 및 職種別 現職場에 대한 滿足度86
〈附表 2-12〉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職場에서 계속 從事할 생각이
	있는 從事者 百分率 分布 87
〈附表 2-13〉	從事者의 現職位 및 職種別 平均 給與額 및
	希望給與額87
〈附表 2-14〉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月給與額 대비 年間賞與金 比率
	百分率 分布 및 諸手當 受惠率87
〈附表 2-15〉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福祉制度 受惠率88

〈附表 2-16〉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停年 年齡 有無 百分率 分布 및
	平均 停年 年齢
〈附表 2-17〉	現職位 및 職種別 지난 一年동안 敎育訓練 받은 經驗
	百分率 分布
〈附表 2-18〉	現職位 및 職種別 지난 一年동안 敎育訓練 받은자의
	도움정도 百分率 分布89
〈附表 2-19〉	現職位 및 職種別 지난 一年동안 敎育訓練 받지 못한
	理由 百分率 分布90
〈附表 3- 1〉	地域 및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分布91
〈附表 3- 2〉	設立年度 및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分布91
〈附表 3-3〉	宗教 및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分布91
〈附表 3- 4〉	施設 種別 1個 無許可 施設當 平均定員 對 平均現員 92
〈附表 3-5〉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收容人員規模92
〈附表 3-6〉	無許可施設 宗教別 收容人員規模92
〈附表 3-7〉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入所者의 入所經路92
〈附表 3-8〉	無許可施設 宗教別 入所者의 入所經路93
〈附表 3- 9〉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退所者의 退所理由93
〈附表 3-10〉	無許可施設 宗教別 退所者의 退所理由93
〈附表 3-11〉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從事者 現況94
〈附表 3-12〉	施設 種別 및 宗教別 無許可施設 從事者 賃金現況94
〈附表 3-13〉	施設 種別 및 宗教別 無許可施設 收入規模斗 構成比 95
〈附表 3-14〉	施設 種別 宗教別 無許可施設 後援金 現況95
〈附表 3-15〉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總支出 및 支出項目別
	支出構成比96
〈附表 3-16〉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敷地面積96
〈附表 3-17〉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建築面積 및 平均 建築面積96
〈附表 3-18〉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의 施設設備現況 (設備率) 97

〈附表 3-19〉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의 施設設備 安全度97
〈附表 3-20〉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火災保險과 스프링클러
	設置與否97
〈附表 3-21〉	施設 種別 1個 無許可 施設當 生活保護對象者 比率 97
〈附表 3-22〉	無許可施設 宗教別 1個 施設當 生活保護對象者 比率 98
〈附表 3-23〉	施設 種別 門戶開放, 基準緩和 및 合法化에 대한
	贊成率98
〈附表 3-24〉	無許可施設 宗教別 門戶開放, 基準緩和 및 合法化에
	대한 贊成率98
〈附表 3-25〉	生計費補助 및 施設運營費 補助에 대한 態度98
〈附表 3-26〉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의 適切한 收容人員99
〈附表 3-27〉	無許可施設 宗教別 적절한 收容二元99
〈附表 4- 1〉	地域別 社會福祉法人 分布100
〈附表 4- 2〉	地域別 法人 設立年度別 分布100
〈附表 4-3〉	地域別 法人 種類別 分布101
〈附表 4- 4〉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總計101
〈附表 4-5〉	法人種類別 任員現況: 理事 및 監事
〈附表 4-6〉	地域別 平均 理事 및 監事102
〈附表 4-7〉	法人種類別 專門分野別 任員 分布: 理事102
〈附表 4-8〉	法人種類別 專門分野別 任員 分布: 監事103
〈附表 4- 9〉	法人種類 및 專門分野別 平均 理事 및 監事數103
〈附表 4-10〉	法人種類別 年間運營經費의 20/100以上을 充當할 수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保有與否 및 收益用 基本財産
	保有規定에 관한 意見104
〈附表 4-11〉	現行 社會福祉關係 法令中 改正의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되는 法令104

〈附表 4-12〉	法人種類別 個人이나 法人이 아닌 團體의 施設運營을
	위한 門戶開放에 대한 意見104
〈附表 4-13〉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總計 104
〈附表 4-14〉	法人種類別 收益用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 105
〈附表 4-15〉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總收入
〈附表 4-16〉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收益事業收入 105
〈附表 4-17〉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補助金 및 支援金中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補助106
〈附表 4-18〉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補助金 및 支援金中 外援團體補助
	및 民間補助106
〈附表 4-19〉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其他收入
〈附表 4-20〉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事業費 比率
〈附表 4-21〉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事務費 比率
〈附表 4-22〉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人件費 比率
〈附表 4-23〉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施設運營 轉出金 比率108
〈附表 4-24〉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備品費 比率
〈附表 4-25〉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諸稅 公課金 比率108
〈附表 4-26〉	法人種類別 負債: 總計108
〈附表 4-27〉	法人種類別 目的事業, 收益事業 및 其他 負債109
〈附表 4-28〉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目的事業用 基本財産109
〈附表 4-29〉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目的事業用 基本財産 110
〈附表 4-30〉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不動産110
〈附表 4-31〉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不動産 110
〈附表 4-32〉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動産 111
〈附表 4-33〉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動産

I. 基本方向

- 社會福祉서비스를 施設保護서비스와 在家福祉서비스로 구분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는 收容施設을 통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財政의 脆弱 등으로 인해 보호수준이 단지 수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시설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
 - 수용시설의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衣食住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의식주 이외의 敎育, 醫療, 再活, 社會復歸 프로그램 등 入所者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 施設從事者의 처우가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專門家의 확보가 어렵고 이직률이 높아, 입소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아울러, 法人代表者나 시설장의 親族 中心의 폐쇄적인 운영으로 인해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는 실정임.
 - 또한, 현행 施設許可要件이 수용인원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30명 이내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못해 無許可施設이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는 1996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社會福祉 收容施設, 施設從事者, 無許可施設, 社會福祉法人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調查對象 및 調查結果

(單位: 개소, 명, %)

구 분	조사대상	조사완료	회수율
사회복지 수용시설	778	716	92
사회복지법인	601	489	81
시설종사자	10,887	8,108	74
무허가시설	293	284	97

• 調査期間: 1996년 4월 15일 ~ 6월 15일(60일간)

• 調查方法: 郵便調查斗 現地訪問調查를 並行

- 본 연구는 이러한 調査結果를 바탕으로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운영을 개 선함으로써 시설보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目的으로 수행되었음. 연구 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음.
 - 시설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시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地域福祉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開放化하고,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透明性을 확보함.
 - 시설운영에서 正常化 概念을 도입하여 시설을 收容의 場에서 生活의 場으로 전환함. 시설의 現代化 및 小規模化를 추진함.
 - 시설입소자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補助金 등 정부지원을 확대함. 아울러 시설종사자의 處遇를 개선하고 專門性을 확보함으로써 입소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 관련 法·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운영의 效率化를 기하고, 무허가시설의 陽性化 등을 추진함.

Ⅱ.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 1.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運營 改善
 - 가. 施設 및 法人運營의 開放化와 透明性 提高
- 1) 現況 및 問題點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방하고 친인척 중심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社會福祉事業法」제14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理事 5인이상, 그리고 監事 2인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理事會 구성에 있어서 친인척 등의 관계를 가진 자가 理事 現員의 1/3이상을 초과할 수없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법인의 경우 理事會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親姻戚 中心의 폐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施設長이 친족관계¹⁾를 가진 시설이 43.1% 에 달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종사자 採用方法에 있어서도 공개채용은 10.9%에 지나지 않고 연고 및 소개의 의한 채용이 6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 수용시설당 年間 平均 後援金은 1억 2천 1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후원금을 법인이나 시설이 폐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후원금 수입과 집행이 公開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¹⁾ 민법 제777조에 의하면, 친족관계는 ① 8촌이내의 혈족, ② 4촌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를 의미한다.

〈表 1〉 法人代表理事와 社會福祉 收容施設 施設長間의 關係

(單位:%)

친족관계	비율
 친족관계가 아닌 사회복지사	35.3
친족관계가 아닌 비사회복지사	14.4
친족관계인 사회복지사	35.6
친족관계인 비사회복지사	7.5
무응답	7.2
	100.0

〈表 2〉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의 採用方法

(單位: %)

채용방법	공개채용	학교장/기관장추천	연고 및 소개	기타	무응답
100.0	10.9	7.9	61.9	17.5	1.8

2) 改善方案

- 任員의 數도 증원하여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로 참여시킬 수 있는 친인척의 상한선인 이사 현원의 1/3 규정을 개 정하여 1/5로 하향 조정함.
 - 단순히 임원의 수만 增員할 경우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親姻戚의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한편, 시설의 개방화를 위해 시설내에 晝間保護施設, 短期保護施設 등의 이용시설을 부설·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紐帶關係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및 기업체별로 사회복지 수용시설과 姉妹結緣을 맺게 하고, 후 원·결연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을 법인의 理事 및 監事로 참여토록 하여 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시설의 開放化와 透明性을 증대시킴.

- 후원·결연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官認 領收證 發給制'를 도입하고, 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稅制上의 惠澤範圍를 상향 조정함.
- 시설의 재정규모, 정부보조금 및 민간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地域新聞 등에 公告토록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社會福祉 收容施設 運營 및 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지역별 시설수급계획 시설의 운영평가 등을 담당토록 함.
 -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시설운영자 등으로 구성된 '社會福祉 收容施設 運營 및 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지역별 施設需給計劃, 시설운영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의 개발, 社會福祉 收容施設 운영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업무와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평가체계 개발과 施設 運營評價를 담당토록 함.
 - 아울러 政府의 補助金 지급시 이러한 社會福祉 收容施設 평가결과를 토대로 差等支援하는 방안을 강구함.

나. 運營費 支援方式의 改善

1) 現況 및 問題點

-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한 政府支援金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豫算執行의 效率性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지원 방식을 바꾸어 수용인원 규모별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후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86.5% 가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表 3〉 豫算을 總額으로 支援하는데 대한 意見

(單位:%)

	찬성	반대	기타	무응답	계
비 율	86.5	5.0	4.5	4.0	100.0

-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방식은 收容人員에 比例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시설은 기본운영 경비마저 부족한 실정인 반면, 대규모 시설의 경 우에는 과다하게 지급되어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용인원 비례방식을 따르고 있는 현행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바꾸어 일정 규모이하 시설에는 基本 運營經費를 定額 支援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遞減率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65.9%가 찬성하였음.

〈表 4〉 定額支援(小規模施設)과 遞減率 適用(大規模施設) 方式에 대한 意見

(單位:%)

	찬성	반대	기타	무응답	계
비 율	65.9	18.2	10.9	5.0	100.0

2) 改善方案

- 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불가피하게 각 항목간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경비를 통합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包括性을 제고함²⁾.
- 입소자 수에 비례하여 획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을 시설종별, 시설 규모, 지역, 시설평가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差等支給하는 방안을 도입함.
 - 일정 규모 이하 시설에는 기본운영경비를 정액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체감율을 적용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함.

²⁾ 일본에는 정부보조금을 事務費(인건비, 관리비)와 事業費로만 구분하고, 각각 의 범위내에서는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遊休施設의 活用

1) 現況 및 問題點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정원 대비 收容率이 83.2%에 불과하여. 시설 및 설 비의 유휴로 인한 수용 능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특히 결핵시설은 收容率이 28.1%에 불과하고,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 애인시설, 모자/부녀시설 등은 70%대의 收容率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부랑인 시설은 법정정원을 초과하여 收容率이 136.7%에 이르는 등 시설 종별로 收容率에 큰 차이가 있음.

〈表 5〉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平均收容率

시 설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전체
수용률	75.3	74.3	72.4	71.4	100.0	136.7	28.1	78.1	83.2

- 이와 같이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시설. 모자/부녀시설 등의 경우 收 容率이 낮은 것은 현행 시설입소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
 - 특히, 아동시설의 경우 시설입소 대상인 無依無託 要保護 兒童數가 감 소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74.2%가 부모가 생존하고 있어서, 수용아 동과 부모간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노인시설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이 시설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강 하기는 하지만, 시설입소 기준을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老人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입소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수용인원에 비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인하여. 現員이 法定定員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2) 改善方案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입소자격을 현행 무의무탁하여야 한다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자격조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시설서비스 수급기회의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遊休施設의 活用度를 제고함.
- 晝間 및 短期保護事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개발·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휴시설의 활용과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도모함.
 - 시설의 일부를 주간 및 단기보호소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유휴시설을 타 목적의 시설로 轉換코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라. 入·退所 管理體系의 改善

1) 現況 및 問題點

- 1995년 12월 31일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입소자의 입소경로를 보면, 62.5%가 行政官署의 의뢰로, 4.3%는 警察官署의 의뢰로 입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총 입소자의 2/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타 시설로부터의 轉院 14.9%, 緣故者 依賴 11.1% 등임.
 - 전문가 집단인 入·退所 審查委員會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는 2.9%에 불과한 실정이며, 自進入所하는 경우는 1.8%에 불과함.
 - 따라서 입소자의 정확한 복지욕구에 부합되는 시설입소보다는 행정편 의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음.

〈表 6〉 社會福祉 收容施設 入所者의 入所經路

(單位:%)

입소경로	행정관서 의뢰	경찰관서 의뢰	병원에서 후송	타 시설 전원	연고자 의뢰	입·퇴소 심사결정	자진입소	기타
비율	62.5	4.3	1.0	14.9	11.1	2.9	1.8	1.5

- 入所經路와 관련하여, 행정관서에서 결정을 하면 시설에서는 단순히 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비율이 50.3%로 높았으며, 다 음이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44.9%로 나타났음.
 - 한편, 管轄住民이어야 한다는 비율이 17.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지 역이기주의의 일면을 엿보게 함.

〈表 7〉 社會福祉 收容施設 入所 要件

(單位:%)

입소자격	설치목적 부합	관할지역 주민	설치목적부합/ 관할지역주민	행정관서에서 결정	무제한	무응답
비율	28.8	1.0	16.1	50.3	3.4	0.4

- 퇴소자의 주된 退所 理由는 연고자 인도로 31.7%를 차지하고 있음.
 - 無斷 退所가 5.1%나 차지하고 있어 시설의 입·퇴소 관리가 철저히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表 8〉 社會福祉 收容施設 退所 理由

퇴소이유	취업	연고자 인계	타시설 전원	무단퇴소	입양위탁	사망	연령초과 기간만료	기타
비 율	10.8	31.7	14.3	5.1	8.6	9.6	9.7	10.2

2) 改善方案

- 입·퇴소 결정시, 시·군·구 행정관청이나 경찰서의 단순 결정보다는 入·退 所 審査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입·퇴소심사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한 만큼, 이의 활성화를 위해 法 的 根據를 마련하고, 업무활동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하며, 지역사회 관 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무단퇴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소자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아동시설 및 모자보호시설 퇴소자에 지급되는 自 立支援金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현실화함. 아울러 시설운영이 인간적이고 민주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指導·監督 體系를 강화함.

마. 施設의 現代化 및 安全設備 擴充

1) 現況 및 問題點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건축물(棟 기준) 중에서 설립기간이 10년 미만인 건물은 전체 棟의 52.5%이고, 10~20년이 33.4%, 그리고 20년 이상인 건물도 14.1%에 달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건물이 老朽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

〈表 9〉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老朽期間 分布(棟 基準)

(單位:%)

노후기간	10년 미만	10~20년	20년 이상	계
비율	52.5	33.4	14.1	100.0

- 수용시설은 다수의 입소자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給水施設 등 保健衛生施設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나 열악한 위생환경을 가진 시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 • 급수를 우물이나 펌프지하수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시설이 전체의 47.0%나 되며, 시설들이 갖추고 있는 전체 화장실 중에서 5.5%가 아직도 재래식임.

〈表 10〉 保健衛生施設 現況

(單位:%)

	화경	장실			급수시설		
구분	수세식	재래식	상수도	우물	펌프	기타	무응답
비율	94.5	5.5	52.8	1.1	45.8	0.1	0.2

- 상당수의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건물상태가 불량하거나, 스프링클러 및 화 재보험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조치가 미흡함.
 - 건물상태가 불량한 棟이 전체의 16.8%에 달하고 있어서 이들 시설의 개축 및 보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表 11〉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建築狀態(棟 基準)

(單位:%)

시설상태	양호	보통	불량	계
비율	52.3	30.9	16.8	100.0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전체 시설의 81.6%에 달하고 있 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면적은 시설당 평균 건물면적 1,900m² 의 8.4%인 160m²에 불과한 실정임.

〈表 12〉 스프링클러 設置與否 및 設置面積

(單位: m², %)

구분	비율 · 면적
스프링클러 비설치 시설의 비율	81.6
시설당 평균 스프링클러설치 면적	160
시설당 평균 건물면적	1,90
시설당 평균 건물면적 대비 스프링클러설치 면적 비율	8.4

• 火災保險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시설이 전체 시설의 47.6%에 달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시설은 전체시설의 반 정도인 52.0%에 불과함.

〈表 13〉 火災保險 加入現況

(單位:%)

<u></u> 화재보험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무응답	계
비율	52.0	47.6	0.4	100.0

2) 改善方案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개·보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20년 이상된 老朽施設의 개·보수를 위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와 같은 위생적인 급수시설이 미확보된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급수시설을 확충토록 함.
- 火災保險 未加入施設에 대해 1997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스프 링클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화재보험료에 대해 국고를 지원함.

바. 施設의 小規模化

1) 現況 및 問題點

- 최근 在家福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있어서도 가 정적인 분위기의 조성을 통한 시설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와 같은 그룹홈(Group Home) 등의 시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용시설은 시설당 평균 입소인원 이 99명에 달할 정도로 大型化되어 있음.
 - 특히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시설의 평균 입소인원은 타 시설에 비해 2~6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表 14〉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入所人員 現況

(單位: 명)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 부녀	정신 요양	부랑인	결핵	癩障 碍人	합계
시설당 평균정원	81	101	127	70	224	240	96	302	119
시설당 평균현원	61	75	92	50	224	328	27	236	99

- 이와 같은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대규모화는 현행「社會福祉事業法」의 시설설치 기준과 정부의 국고지원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현행「社會福祉事業法」의 시설 설치기준에는 시설의 최소규모가 30 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 또는 집단수용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정부보조금 지원이 입소인원 비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 설들이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입소자를 長期 收容하거나 입소자를 많 이 확보하려 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대규모화와 장기수용은 입소자들에 대한 개 별상담이나 보호 등 시설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長期 收容으로 인해 입소자들이 사회복귀 의욕과 능력을 상실하는 소위 '施設病'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시설당 입소인원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설내의 거주환경 측면에서도 상당수의 시설이「社會福祉事業法」의 시설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즉,「社會福祉事業法」의 시설설치 기준에서는 거실당 평균 수용인원을 8 명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 12%에 가까운 시설이 8명을 초과하고 있음.
- 특히 부랑인시설과 장애인 시설의 경우 8명을 초과하는 시설의 비율이 각각 34.6%, 21.0%에 이르고 있음.

〈表 15〉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居室當 收容人員

(單位:%)

시 설	8명 이하	9명 이상	무응답	
 노인시설	97.1	2.2	0.7	100.0
아동시설	88.9	10.7	0.4	100.0
장애인시설	78.3	21.0	0.7	100.0
모자/부녀시설	96.4	1.8	1.8	100.0
정신요양시설	83.3	16.7	_	100.0
부랑인시설	65.4	34.6	_	100.0
결핵시설	100.0	_	_	100.0
나장애인시설	100.0	_	_	100.0
계	87.4	11.9	0.7	100.0

- 따라서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입소자들이 건전하게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수용인원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社會福祉事業法」의 시설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조사질문에 전체시설의 과반수인 50.0%가 찬성하였음.

〈表 16〉 現行「社會福祉事業法」의 施設設置 基準 緩和에 대한 意見

의견	찬성	반대	기타	계
비율	50.0	38.0	12.0	100.0

2) 改善方案

-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단위 시설(예: 그룹홈, SOS 마을의 小宿舍制度(Cottage System))의 설립을 유도함.
- 이를 위한 법적 조치로, 현재 수용인원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社會福祉事業法」의 시설설치 기준을 '10인 이상'으로 개정하고, 5~9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이와 함께, 입소인원 비례인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사회복지 수용 시설의 대형화를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인 만큼, 이를 개선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운영경비를 정액 지원함.

바. 施設의 地域 및 種別 不均衡 解消

1) 現況 및 問題點

- 1994년 말 현재 전국의 230개 시·군·구중 50개(21.7%)에는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반면 47개(20.4%) 시·군·구에는 6개소 이상의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음.
 - 시설이 많이 분포된 地方自治團體는 시설운영비 지원 등의 재정부 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의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양상을 나 타내기도 함.
- 조사가 완료된 전체 716개 사회복지 수용시설중 28.2%인 202개 시설이 서울 및 경인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경남지역의 경우는 노인 및 모 자/부녀시설이 전혀 없는 등 地域別 不均衡이 심함.

〈表 17〉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分布

(單位: 개소)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합 계
서울	12	28	18	12	2	1	_	-	73
부산	7	25	14	5	11	_	_	_	62
대구	8	18	9	7	4	_	1	_	47
인천	4	11	7	2	4	1	_	_	29
광주	7	11	7	4	3	_	_	_	32
대전	4	14	8	3	4	3	-	-	36
경기	22	36	27	1	9	5	_	_	100
강원	6	11	6	5	1	3	-	-	32
충북	9	8	9	2	5	2	-	-	35
충남	12	19	10	2	12	1	-	-	56
전북	16	20	8	5	5	3	-	-	57
전남	12	22	9	2	3	2	-	2	52
경북	10	17	12	5	6	2	1	2	55
경남	_	23	7	_	2	2	-	-	34
제주	6	6	1	1	1	1	_	_	16
전체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 지방자치단체별 財政與件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사회복지 수 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격차가 심하여 지역별로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의 처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를 들면, 1995년도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仁川市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월 150천원씩 지원하고 있는 반면, 기타 지역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改善方案

- 지역별 시설수급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시설보호대상자 규모나 시설수 요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定期的인 需要調査가 필요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의 시설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3~5년에 1회)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설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함.

- 시설수급 계획에 따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신규시설의 설립을 유도 하고, 시설의 設立要件을 緩和함.
- 시설설립을 기피하는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 시설이 과다 배치되어 지방비 부담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 고에서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설 운영비의 地方費 負擔分은 廣域自治團體에서 부담토록 일원화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社會福祉 收容施設 運 營 및 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지역별 시설수급계획 수립, 시설운영에 대 한 세부 운영지침의 개발,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함.

2. 施設從事者의 處遇改善

가. 施設 從事者의 勤務 與件 改善

1) 現況 및 問題點

-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는 從事者는 30.1%에 불과한 반면, 12시간 근무가 22.4%, 16시간 근무가 7.4%,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8.0%나 되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表 18〉 1日 平均 勤務時間 分布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	12시간	16시간	16시간 이상	기타	무응답
비율	30.1	22.4	7.4	8.0	29.3	2.8

- 이처럼 시설종사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從事者 配置 基準이 각 시설관련법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음.
 - 현재 兒童福祉法에 의한 영아시설의 경우 保育士는 영아 5인당 보육 사 1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보조금 배치기준에는 영아 7인 당 보육사 1인으로 되어 있음³).
 - 또한 상당수의 시설종사자가 휴일이나 휴가도 없이 24시간 대기근무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당 입소자 수는 부랑인시설 및 정신질환자시설의 경우 17명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시설운영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100명 이하의 시설에서는 보조원/보육사 등의 명의로 고용한 종사원을 사무직원 및 시설관리인으로 편법 활용하고 있음.

2) 改善方案

- 배치기준 상향조정

- 현재의 사회복지 수용시설 職員 人件費 補助指針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각 시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배치기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나아가서는 1일 8시간 交代勤務制를 원칙으로 한 적정 종사자 배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 각 시설 관련법에는 시설당 1인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원과, 이외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차량기사, 시설관리인 등 施設運營人力에 대하여 人件費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개정함.

³⁾ 현재 우리나라의 法的 從事者 配置基準은 일본의 1/2 수준에 불과함.

나. 施設 從事者의 專門性 確保

1) 現況 및 問題點

-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중 社會福祉士 資格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는 1 급이 평균 1.3명, 2급이 0.7명, 3급이 0.5명이며, 합계 2.5명의 사회복지사 가 근무하고 있음.

〈表 19〉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數

(單位: 명)

	종사자수			入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계	남	여	격	1급	2급	3급	
시설당 평균	13.7	3.7	9.9	2.5	5 1.3	0.7	0.5	

- 전반적으로 社會福祉士 資格證 所持率이 낮아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施設長이 72.3%로 가장 높고, 다음이 總務 48.7%, 生活指導員 45.2%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사회복지 업무의 성격상 전문적인 업무 를 수행해야 할 총무나 생활지도원의 자격증 소지율이 50%에도 미달 하여 專門性 確保가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음.

〈表 20〉 施設從事者의 社會福祉士 資格證 所持率

=						
	구분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보조원	직업훈련교사
	소지율	72.3	48.7	45.2	8.5	10.2

- 현행 社會福祉事業法 제1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수용시 설은 당해 종사자 총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음.
 - 단, 의사, 약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영양사,

-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他職種 資格證 所持者, 타자·경리 등 사무보조 원, 그리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종사자 총수에서 제외함.
- 타직종 자격증소지자와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시설종사자중 사회복지 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24.3%로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인 1/3에 미달하고 있음.
- 시설에서 전문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여도 전문가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給與水準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75.0%를 차지하고 있으며, 9.9%가 열악한 勤務環境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이것은 전문성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專門家를 시설종사자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給與水準의 上向調整과 勤務環境의 改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表 21〉 專門施設從事者의 未確保 理由

(單位:%)

구분	낮은급여 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사회인식이 나빠서	기타	무응답
비율	75.0	9.9	4.6	7.0	1.7	1.1	0.7

- 한편 시설종사자의 敎育·訓練과 관련하여, 지난 1년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은 시설장이 5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물리치료사 52.1%, 총무 51.2%, 생활지도원 46.7% 등의 순이었음.

〈表 22〉 施設從事者의 지난 1年 동안 訓練 經驗 與否

구분	시설장	총무	생활 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보조원	물리 치료사	직업훈련 교사	간호 조무사
훈련 경험률	54.7	51.2	46.7	45.5	43.8	28.8	52.1	29.3	37.4

- 지난 1년동안 받은 敎育訓練이 실제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 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설장이 9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총무로서 88.3%, 물리치료사 87.7% 등의 순이며, 교육훈련을 받은 거의 모든 시 설종사자들이 교육훈련이 실제업무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 정하고 있었음.

〈表 23〉 施設從事者의 지난 1年 동안 받은 訓練의 도움 與否

(單位:%)

 구분	시설장	총무	생활 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보조원	물리 치료사	직업훈련 교사	간호 조무사
· 훈련 도움률	90.2	88.3	84.8	85.3	79.7	87.1	87.7	75.0	81.4

2) 改善方案

- 專門人力을 確保하기 위하여 시설종사자 보수 및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들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함.
 - 시설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나 기타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간은 1주일 내지 2주 일 정도로 함.

다. 施設從事者의 處遇 改善

1) 現況 및 問題點

- 시설종사자들의 賃金水準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등을 포함한 평 균급여액은 시설장 140.1만원, 총무 116.5만원, 생활지도원 88.2만원, 물리 치료사 89.1만원 등임.
 - 이는 1994년도 大卒專門家의 平均賃金(勞動部)에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

으로서, 평균연령이 42.2세인 총무의 임금은 40~44세 대졸자의 평균임금 157만원에 비해 40여만원이나 적으며, 평균연령이 35.2세인 생활지도원의 임금은 35~39세 대졸자의 평균임금 134만원에 비해 46만원이나 적은 등, 전반적으로 시설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이 매우 열악함4).

〈表 24〉 從事者의 職位 및 職種別 平均 給與額

(單位: 만원, 세)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월평균 급여액 ¹⁾	140.1	116.5	88.2	89.1	96.0
평균 연령	55.7	42.2	35.2	30.0	35.5

註: 1) 월평균 급여액 = 기본급 + 상여금 + 제수당

- 현행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의 號俸制度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 지 수용시설 경력과 군복무경력만을 인정하며(社會福祉 收容施設職員 人 件費 補助指針), 타 시설의 근무경력 및 유사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위의 인건비 보조지침에 의하면, 최고 호봉이 21호봉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군복무 호봉 합산의 경우 24호봉까지 인정),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은 요인이 되고 있음.
- 시설종사자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總 類似經歷은 평균 2.1년으로 나타 났으며, 직위 및 직종별로 볼 때, 시설장이 가장 긴 3.9년, 다음이 총무로 서 3.4년, 생활지도원 2.3년, 간호조무사 2.3년, 물리치료사 2.1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表 25〉 施設從事者의 未認定 類似經歷 平均年數

(單位: 년)

구분	시설장	총무	생활 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보조원	물리 치료사	직업훈련 교사	간호 조무사
평균년수	3.9	3.4	2.3	1.8	1.6	1.8	2.1	0.7	2.3

⁴⁾ 勞動部「賃金構造基本統計調查報告書」(1995)에 의하면, 1994년도 대졸전문가의 年齡別 平均賃金은 55~59세 193만원, 40~44세 157만원, 35~39세 134만원, 30~34세 106만원임.

- 時間外 勤務手當 등의 각종 수당과 學費補助制度 등의 복지혜택이 미흡 한 실정임.
 -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종사자의 비율은 8.5%에 불과하며, 일· 숙직 수당은 10.9%, 체력단련비는 5.6%의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음.

〈表 26〉 諸手當 受給率

(單位: %)

구분	시간외 근무수당	일숙직 수당	복지 수당	효도 휴가비	체력 단런비	교통 수당	기타수당
제수당 수급률	8.5	10.9	21.5	13.1	5.6	2.2	25.8

• 기타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비율을 보면, 퇴직금은 98.0% 가, 의료보험은 97.3%가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學費補助는 8.9%만이, 住宅補助는 6.1%만이 제공하고 있음.

〈表 27〉 其他 福祉給與 受給率

(單位: %)

구분	퇴직금 제도	의료보험	학비보조제도	주택보조
급여수급률	98.0	97.3	8.9	6.1

- 현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不滿足하다는 종사자중 52.9%가 낮은 給與水 準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表 28〉 施設從事者의 現 職場 不滿足 理由

구분	낮은 급여 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장래성이 없어서	사회인식이 나빠서	기타	무응답
비율	52.9	19.5	10.9	9.1	1.9	3.9	1.8

2) 改善方案

- 시설종사자의 근무의욕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종사자의 賃金 水準을 上向調整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국·공 립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 봉급의 약 70%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함.
 - '97년부터 국·공립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의 수준으로, '99년부터 공무원 인건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의 號俸算定에 타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유사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현재 2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 호봉을 공무원의 수준인 30호봉으로 상향조정함.
-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의 法定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수용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을 개정함.

3. 無許可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陽性化

가. 無許可 施設의 陽性化

1) 現況과 問題點

- 無許可 施設에 수용되어 있는 입소자는 평균 22명으로 허가시설의 평균 99명에 비하여 수용인원의 규모가 월등히 적은 수준임.
 - 무허가 수용시설 1개소당 平均 適正 收容人員은 16명이나 現員은 22명으로 적정 수용인원의 138%를 수용하고 있음. 이것은 적정 수용인원이 119명이고 현원이 99명으로 수용률이 83.2%에 불과한 허가시설과 비교해 볼 때, 과밀수용되어 있음.

• 수용인원의 규모를 施設 許可基準인 30명에 미달하는 소규모 시설과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로 구분해 볼 때, 30인 미만의 소규 모 시설이 79.9%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30인 이상의 시설은 20.1%로 나타났음.

〈表 29〉 無許可施設 收容人員 現況

(單位: 명, %)

 구 분	계
시설당 평균 적정인원	16
시설당 평균현원	22
수용인원 분포	100.0
30인 미만	79.9
30인 이상	20.1

- 시설 입소자의 입소경로를 보면, 緣故者 依賴가 39.6%, 自進入所가 24.2%로서 이 두가지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행정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의한 의뢰도 8.5%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無許可施設이 현실적으로 허가시설을 補完하는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임.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서 허가시설에 입소 할 수 없거나, 행정구역내에서 적절한 허가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무허가시설이 차선책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

〈表 30〉 入所經路

입소 경로	구성비
행정관서 의뢰	7.1
경찰관서 의뢰	1.4
병원에서 후송	4.2
타시설로 부터의 전원	4.6
연고자 의뢰	39.6
자진입소	24.2
기타	18.9
	100.0

- 따라서, 허가시설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無許 可施設을 더 이상 放置해서는 안될 것임.
- 從事者 1人當 平均 入所者數는 허가시설이 6.9명인데 비하여 무허가시설 의 경우 6.2명으로 나타나 무허가시설이 허가시설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表 31〉 從事者 1人當 入所者數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 부녀	정신 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 애인	 평균
허가시설	5.7	5.7	4.4	8.4	13.3	18.5	4.8	13.5	6.9
무허가시설	5.7	6.0	5.3	4.0	8.6	10.4	14.3	15.0	6.2

- 1995년도 決算基準으로 무허가시설의 收入現況을 보면, 시설의 총수입은 평균 4,550만원이며, 이를 원천별로 구분해서 보면 자체수입이 32.9%, 민 간보조가 25.6%, 외원보조가 13.2%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정부보조가 총수입 중 차지하는 비율은 7.8% 수준인데, 이것은 입소자가 生活保護對象者일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生計補助 費가 합산되었기 때문임.

〈表 32〉 收入規模와 源泉別 構成比

(單位: 만원, %)

그ㅂ	구분 총수입규모 자			<u></u> 원금	 기타	
丁七			정부보조	외원보조	민간보조	잡수입
구성비	4,550(100.0)	32.9	7.8	13.2	25.6	20.5

- 무허가시설에 들어오는 後援金은 시설당 평균 약 2,034만원이며, 이를 종 교단체별로 볼 때, 불교가 가장 많아 3,300만원, 천주교 2,343만원의 순이

며, 비종교시설인 경우에는 후원금이 543만원에 불과하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表 33〉 無許可施設 運營 宗教團體別 後援金現況

(單位: 만원)

운영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시설	계/평균
후원금수준	2,179	2,343	3,300	1,654	543	2,034

- 한편, 無許可施設에서 1995년 1년동안 지출한 금액은 시설당 평균 4,930 만원으로 총수입 4,550만원보다 380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재 정상태가 열악함.
- 支出項目別 構成比를 보면, 생활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목적으로 입소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경비인 直接費는 56.2%로서 허가시설의 36.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 間接 費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무허가시설의 경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대 부분이 無給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원의 부족으로 임금수준이 낮아 인건비의 비중이 낮기 때문임.

〈表 34〉 無許可施設 支出項目別 構成比

(單位: 만원, %)

그ㅂ	금액	계 ·		직:	접비			간접비			
丁正	ㅁ쯱	계	계	주식비	부식비	기타	계	인건비	시설유지비	기타	
지출	4,930	100.0	56.2	12.5	14.9	28.8	43.8	21.8	6.2	15.8	

- 대부분의 무허가시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자 개인이 부담하거나 종교단체 등 민간의 보조 또는 부정기적인 後援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收入이 不安定함.

• 아울러, 대부분의 무허가시설이 개인이나 종교적 차원의 자선적인 형 태로 운영됨으로써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體系的이고 專門的인 서비 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

2) 改善方案

- 수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시설중에서 資産基準 등을 고려하여 정규시설로 허가하고 있는 현행 시설기준이 무허가시설을 양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여 무허가시설을 陽性化함.
 - 시설허가를 위한 收容人員의 基準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5~9인 규모의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자산기준도 완화함으로써 무허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의무탁한 입소자들을 정부의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으로 국한된 시설의 운영주체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個人이나 團體까지 확대해야 하며, 신고만으로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社會福祉事業法을 개정함.
 - 이때 사이비 무허가시설이 허가시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 저한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도감독체계 를 강화함.

나. 施設의 安全性 提高

1) 現況과 問題點

- 消火施設의 不良率이 15.3%로 허가시설의 1.7%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비상구가 불량한 비율이 11.6%로서 허가시설의 2.9%에 비해 높은 등 시 설의 안전성이 미흡함.

〈表 35〉 施設 및 設備의 不良率

구분	전기 시설	가스 시설	급수 시설	배수 시설	소화 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누전 차단시설	축대, 난간	비상구
허가시설	2.2	0.6	6.9	5.5	1.7	5.0	1.7	6.5	2.9
무허가시설	2.2	1.2	7.1	7.3	15.3	7.5	3.9	8.4	11.6

- 또한 火災保險 加入이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발생시를 대비한 대책이 크게 미흡함.
 - 무허가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11.4%로서 허가시설의 5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3.2%에 불과하여 허가시설의 17.5%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表 36〉 火災保險 加入率 및 스프링클러 設置率

(單位:%)

구분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 부녀	정신 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 애인	시설 합계	허가 시설
화재보험 가입률	16.9	7.4	10.9	0.0	0.0	4.5	0.0	0.0	11.4	52.0
스프링클러 설치률	5.0	3.7	3.0	0.0	0.0	0.0	0.0	0.0	3.2	17.5

2) 改善方案

- 소화기 교체, 비상구 확보, 스프링클러 설치 및 화재보험 가입과 같은 火 災豫防措置를 강화하며, 비상시 안전대책을 강구함.
 - 약 90%의 시설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사후대 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를 지원함.

다. 從事者의 專門性 確保

1) 現況과 問題點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는 45명으로서 전체 종사자의 4.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입소자가 비전문인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자선 차원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表 37〉 無許可施設 從事者 現況

(單位: 명, %)

구 분 -		성 별		사회복지사수 - 소지자수/전체종사자수
丁 七	계	남	여	시설당 평균 사회복지사수
종사자수	927	338	589	45
비율	100.0	36.5	63.5	4.9
시설당 평균	3.3	1.2	2.1	0.2

- 無許可施設은 宗教團體에서 많이 운영하는 관계로 종사자중 無給奉仕者 가 많고, 임금을 받고 있는 종사자라 할지라도 이들의 평균 임금은 31만 원정도로서 매우 낮은 수준임.

〈表 38〉 從事者의 賃金水準

(單位: 천원)

운영종교단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 시설	평균
임금수준	294	285	659	533	254	310

2) 改善方案

- 施設의 陽性化를 통해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종사자중 최소한 1인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專門人力을 확보토록 함.
 -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社會福祉 收容施設職員 人件費 補助指針을 개정함.
- 지역사회에 많이 설립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상담, 치료, 재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相互 連繫 體系를 구축함.
- 社會福祉硏修院, 大學, 社會福祉館 등은 무허가시설에서 입소자들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4. 社會福祉法人의 規制合理化

가. 施設運營 主體의 制限 規程 閉止

1) 現況 및 問題點

- 社會福祉事業法 제28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에 한해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단, 보육시설 및 유료노인시설 제외).
- 이는 사회복지의 公益性을 고려한 조치이기는 하나 사회복지 수용시설 운영에 뜻을 가진 個人이나 團體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무 허가 시설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改善方案

-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施設 設置 및 運營의 門戶를 開放할 필요가 있음.
 - 현행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함. 다만,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시설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마련함.
 - 시설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施設運營 能力이 나 專門性 등에 관한 審査를 强化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확대 개정하여 시설운영 能力이 있는個人이나 團體들이 각종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法人 自負擔 規程 閉止

1) 現況 및 問題點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및 2항에서는 연간 운영경비의 2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을 갖추고 시설 운영경비의 20%이상을 법인이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1994년부터 障碍人福祉施設(6개종별 시설전체), 浮浪人善導施設, 婦女職業輔導施設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폐지되었음.
 - 이외 기타 兒童福祉施設, 老人福祉施設의 경우는 자부담비율이 5%로 하향 조정되었음.

- 사회복지법인의 총수입중에서 國庫나 地方費補助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은 13.6%에 지나지 않음.

〈表 39〉 社會福祉法人의 收入現況(1995年 決算基準)

(單位: 천원, %)

구 분	금액
수익사업수입	90,778(13.6)
보조금 및 지원금	
국고보조	283,662(42.5)
지방비보조	139,522(20.9)
외원단체보조	18,832(2.8)
민간보조	44,237(6.6)
기타수입	90,344(13.5)
총수입	667,375(100.0)

• 사회복지법인의 50.5%만이 收益用 基本財産을 보유하고 있으며, 年間 運 營經費의 10% 이상은 충당할 능력이 없는 법인이 62.0%에 달하고 있음.

〈表 40〉 社會福祉法人의 收益用 基本財産 保有現況

(單位: %)

수익용재산	없음	1~10%	10% 이상
비율	49.5	12.5	38.0

• 사업목적을 위한 기본재산은 법인 총자산의 74.1%인 24억 6천만원인 반면, 收益用 基本財産은 23.5%인 7억8천만원에 지나지 않음.

〈表 41〉 社會福祉法人의 資産現況

(單位: 천원, %)

 총계	목진	^{복사업용} 기본재	수익용	 보통재산		
동계 -	소계	부동산	동산	기본재산	모동세간	
3,326,474	2,463,865	2,211,177	252,688	782,001	80,608	
(100.0)	(74.1)	(66.5)	(7.6)	(23.5)	(2.4)	

- 財政能力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불법적인 이중장부 작성이나 입소자 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社會福祉法人의 自負擔 規定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이 57.1%에 달하고 있음.

〈表 42〉 社會福祉法人의 自負擔 規程에 대한 意見

 의 견	비 율
 규정대로 20/100이 적합함.	7.6
15/100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1.8
10/100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15.6
5/100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1.2
전면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57.1
기타	4.7
무응답	12.0

2) 改善方案

-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운영경비 조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自負擔 義務規定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실적으로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이미 95~10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음.
- 그러나 정부보조금 이외에, 법인 자체적으로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稅制支援은 확대되어야 함.

라. 公益法人으로서의 惠澤附與

1) 現況 및 問題點

-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國家의 責任 이며, 각종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러한 임무를 국가로 부터 위임받아 일선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임.

- 그러나 국민복지의 일익을 담당하는 公益法人으로서 이에 걸맞는 세제상 의 혜택 등이 미흡함.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84조에 따르면, 종교·자선·학술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부동산에 한해 取得稅와 財産稅를 면제해 주고 있음.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收益事業用 不動産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 지방세법 제174조와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서는, 학교, 교회, 사찰등 비영리법인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만 住民稅의 免除 惠澤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 소득세법 제34조에서는, 사회복지, 자선 등에 기부한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의 7% 한도내의 寄附金에 대해서만 所得稅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면세조치를 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내에 建築이 허용되고 있으나, 지역주 민의 반대로 시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큰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경우 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2) 改善方案

- 사회복지사업의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收益事業用 不動産에 대해서 도 登錄稅, 取得稅, 財産稅를 면제해 주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
- 이와 함께, 사회복지 수용시설 중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에만 주어지고 있는 住民稅 免稅惠澤을 모든 시설로 확대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
- 한편, 收益事業으로 인한 수입이 사회복지사업에 충당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會計帳簿의 公開와 담당행정부서의 指導·監督이 强化되어야 할 것임.

Ⅲ. 要約 및 政策建議

1.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運營改善

- 施設 및 法人運營을 開放化하고 透明性을 提高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가 아닌 地域社會에 거주하고 있는 地域有志를 의무적으로 법인 이사로 참여시킴.
 - 후원·결연금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官認 領收證 發給制'를 도입하고 後援金 寄附者에 대해 稅制上의 惠澤을 상향 조정함.
 - 시설의 재정규모, 정부보조금 및 민간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의 收入 및 支出內譯을 지역신문 등에 公告토록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社會福祉 收容施設 運營 및 評價委員會'를 구성하여 지역별 시설수급계획, 시설의 운영평가 등을 담당토록 함.
- 현재 입소인원 비례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일정 규모시설 이하까지는 基本運營經費를 정액 지원하고, 일정 대규모 시설 이상에는 遞減率을 적용하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예산 집행의 包 括性을 제고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入所資格을 저소득층에게까지 확대하고, 시설의 일부를 주간 및 단기보호소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改·補修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재보험 미가입시설에 대해 1997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함.
- 현재 수용인원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社會福祉事業法」의 시설설치 기준을 '10인 이상'으로 개정하고, 5~9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근 거를 마련함.

2. 施設從事者의 處遇 改善

- 현재의 사회복지 수용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상의 從事者 配置基準을 법정 배치기준으로 상향 조정함.
 - 각 시설 관련법에는 시설당 1인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원과 이외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차량기사, 시설관리인 등 施設運營人力에 대하여 人件費를 追加 支援할 수 있도록 배치기준을 개정함.
- 시설종사자들의 補修敎育은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이나 기타 관련 연구소 또는 대학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간은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로 실시토록 함.
-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 봉급의 70%수준 인 시설 종사자들의 봉급수준을 號俸體系 改善 및 各種 手當 支給을 통해 연차적으로 현실화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의 호봉산정에 타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類 似經歷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현재 2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 호 봉을 공무원의 수준인 30호봉으로 상향 조정함.
 - 超過勤務에 대한 시간외 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수용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을 개정함.

3. 無許可 社會福祉 收容施設

- 시설허가를 위한 收容人員의 基準을 현행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5~9인 규모의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資産基準 도 완화함으로써 무허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무의무탁한 입소자들을 정부의 제도권내로 흡수함.
 - 단, 사이비 무허가시설이 허가시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

한 審査를 거쳐 陽性化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

- 소화기 교체, 비상구 확보, 스프링클러 설치 및 화재보험 가입과 같은 火 災豫防措置를 강화하며, 비상시 안전대책을 강구함.
- 施設의 陽性化를 통해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종사자중 최소한 1인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함.
- 社會福祉館 등에서는 무허가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에 많이 설립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상담, 치료, 재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相互 連繫 體系를 구축함.

4. 社會福祉法人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도 市長·郡守·區廳長의 許可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이를 擴大 改定하여 施設運營 能力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각종 사회복지 수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運營經費 調達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자부담 의무규정을 폐지함.
- 사회복지사업의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收益事業用 不動産에 대해서도 登錄稅, 取得稅, 財産稅를 면제해 주고, 영유아 보육시설에만 주어지고 있 는 住民稅 免稅惠澤을 모든 시설로 확대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

參考文獻

- 김미혜,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運營改善方案」, 『한국적 복지모형의 정립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김응석 외, 『兒童福祉收容施設 運營評價 및 改善方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노동부,『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5.
보건복지부, 『兒童福祉事業指針』, 1996.
,『老人福祉事業指針』,1996.

- _____, 『障碍人福祉事業指針』, 1996.
-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社會福祉 收容施設運營 內實化 方案』, 사회복지 분과 정책토론회 자료, 1996.
- 안창수 외, 『社會福祉 收容施設의 效率的인 管理方案에 관한 研究』, 한국 인구보건연구원, 1987.
- 이영희, 『社會福祉 收容施設行政』,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4.
- 최영욱 외, 『社會福祉 收容施設論』, 1990.
- 행정쇄신위원회, 내부자료, 『社會福祉 收容施設 運營制度 改善』, 1996.

附 錄: 主要 統計表

- 1. 社會福祉 收容施設 / 55
- 2.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 / 80
- 3. 無許可施設 / 91
- 4. 社會福祉法人 / 100

附錄 1. 社會福祉 收容施設

〈附表 1-1〉 社會福祉 收容施設 調査完了率

(單位: 개소,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시설수 ¹⁾	146	269	174	66	75	42	2	4	778
조사완료 시설수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조사완료율	92.5	100.0	87.4	84.8	96.0	61.9	100.0	100.0	92.0

註: 1) 1995년 12월말 현재

〈附表 1-2〉 地域 및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分布

(單位: 개소)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서울 12 28 18 12 2 1 - - - 부산 7 25 14 5 11 - - - - 대구 8 18 9 7 4 - 1 - <t< 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										
부산 7 25 14 5 11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대구 8 18 9 7 4 - 1 - 1 - 인천 4 11 7 2 4 1 1	서울	12	28	18	12	2	1	-	-	73
인천 4 11 7 2 4 1 1	부산	7	25	14	5	11	_	_	_	62
광주 7 11 7 4 3	대구	8	18	9	7	4	_	1	_	47
대전 4 14 8 3 4 3	인천	4	11	7	2	4	1	_	_	29
경기 22 36 27 1 9 5	광주	7	11	7	4	3	_	_	_	32
장원 6 11 6 5 1 3	대전	4	14	8	3	4	3	_	_	36
충북 9 8 9 2 5 2	경기	22	36	27	1	9	5	_	_	100
충남 12 19 10 2 12 1 전북 16 20 8 5 5 3 전남 12 22 9 2 3 2 - 2 경북 10 17 12 5 6 2 1 2 경남 - 23 7 - 2 2 2 제주 6 6 1 1 1 1 1 1	강원	6	11	6	5	1	3	_	_	32
전북 16 20 8 5 5 3		9	8	9	2	5	2	_	_	35
전남 12 22 9 2 3 2 - 2 경북 10 17 12 5 6 2 1 2 경남 - 23 7 - 2 2 제주 6 6 1 1 1 1	충남	12	19	10	2	12	1	_	_	56
경북 10 17 12 5 6 2 1 2 경남 - 23 7 - 2 2 제주 6 6 1 1 1 1	전북	16	20	8	5	5	3	_	_	57
경남 - 23 7 - 2 2 제주 6 6 1 1 1 1		12	22	9	2	3	2	_	2	52
제주 6 6 1 1 1 1	경북	10	17	12	5	6	2	1	2	55
	경남	_	23	7	_	2	2	_	_	34
N 135 269 152 56 72 26 2 4	제주	6	6	1	1	1	1		_	16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3〉 設立年度 및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分布

(單位: 개소)

설립년도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1919년 이전	-	2	-	_	-	-	-	-	2
1920년대	3	2	_	1	_	_	_	_	6
1930년대	2	2	_	_	_	_	_	_	4
1940년대	4	30	2	=	-	_	_	-	36
1950년대	23	134	22	14	2	2	_	_	197
1960년대	10	44	20	9	4	3	1	_	91
1970년대	5	7	13	6	13	4	_	_	48
1980년대	49	23	37	12	44	16	1	3	185
1990년 이후	35	9	52	10	5	1	_	1	113
무응답	4	16	6	4	4	_	_	_	34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 宗教 및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分布

(單位: 개소)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종교법인									
기독교	53	116	41	25	22	7	_	2	266
천주교	23	18	23	6	2	6	2	1	81
불교	7	5	_	_	_	3	_	_	15
원불교	10	2	_	1	1	1	_	_	15
천도교	1	_	1	_	_	_	_	_	2
기타	4	3	4	1	1	_	_	1	14
비종교법인	37	125	80	21	45	8	_	_	316
무응답	-	=	3	2	1	1	-	=	7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1個 施設當 平均定員 對 平均現員

(單位: 명,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1개 시설당 평균정원	81	101	127	70	224	240	96	302	119
1개 시설당 평균현원	61	75	92	50	224	328	27	236	99
평균수용률(%)	75.3	74.3	72.4	71.4	100.0	136.7	28.1	78.1	83.2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者의 入所經路分布

(單位:%)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u></u> 계
행정관서의 의뢰	79.7	65.4	54.5	79.1	57.5	63.9	17.0	5.2	62.5
경찰관서의 의뢰	1.5	3.5	0.6	1.7	2.3	18.5	_	_	4.3
병원에서 후송	0.3	0.1	0.6	1.0	1.5	2.1	24.5	12.7	1.0
타시설 전원	6.5	20.3	22.5	1.1	9.2	12.3	37.7	25.2	14.9
연고자 의뢰	5.1	7.9	9.5	3.0	25.7	0.3	9.4	42.6	11.1
입·퇴소 심사결정	2.4	0.3	10.9	2.8	0.2	1.1	9.4	_	2.9
자진입소	3.4	0.1	0.9	7.7	2.4	1.2	_	14.3	1.8
기타	1.1	2.4	0.5	3.6	1.2	0.6	2.0	_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946	17,924	13,886	2,661	15,095	9,040	53	942	67,547

〈附表 1-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退所者의 退所理由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취업	=	18.2	13.3	23.1	0.3	3.3	5.0	-	10.8
연고자 인계	25.0	28.7	34.1	36.9	64.6	19.6	5.0	4.8	31.7
타시설 전원	14.1	19.1	21.5	1.0	21.8	7.7	40.0	20.6	14.3
무단퇴소	3.9	5.2	4.2	2.4	0.5	9.5	_	_	5.1
입양위탁	_	25.0	0.5	_	_	_	_	_	8.6
사망	53.9	0.9	14.0	0.1	7.8	6.7	45.0	74.6	9.6
연령초과, 기간만료	_	2.3	_	24.5	=	25.5	_	=	9.7
기타	3.1	0.6	12.4	12.0	5.0	27.7	5.0	_	1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034	7,031	1,719	2,374	2,461	4,956	20	63	20,658

〈附表 1-8〉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數

	2	종사자수		정부 보조	조인원	사회복	지사 자	격증소	지자	'95년도	증감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697	364	333	615	613	504	358	106	40	33	25
총무	705	409	296	641	636	343	187	94	62	67	66
사무원	168	51	117	21	21	9	5	3	1	18	16
상담원	97	30	67	69	70	61	44	15	2	13	8
보육사	2,051	181	1,870	1,870	1,848	292	91	97	104	651	612
보조원	2,754	784	1,970	2,385	2,505	234	75	74	85	501	486
영양사	178	4	174	133	132	8	2	2	4	28	33
생활지도원	498	193	305	418	436	225	102	75	48	80	79
직업훈련교사	236	147	89	197	188	24	11	9	4	32	28
의사	208	185	23	185	191	3	2	1	_	23	18
간호사	757	32	725	683	702	24	8	7	9	153	124
물리치료사	175	41	134	150	155	8	2	3	3	30	27
치사부	760	53	707	609	612	2	1	-	1	80	82
세탁부	411	90	321	330	330	4	-	4	_	417	46
기타	85	75	10	67	71	3	3	-	-	12	16
전체	9,780	2,639	7,141	8,373	8,510	1,744	891	490	363	2,138	1,666
시설당 평균	13.7	3.7	9.9	12.1	12.3	2.5	1.3	0.7	0.5	3.0	2.4

〈附表 1-9〉 老人施設 從事者數

	콩	수사자수		정부보조	조인원 	사회복	지사 자	격증소7	지자	'95년도	 증감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133	61	72	107	108	89	41	35	13	9	6
총무	142	69	73	113	112	55	27	17	11	14	16
사무원	16	6	10	7	8	_	_	_	_	1	2
상담원	3	_	3	1	1	1	_	1	_	_	_
보육사	11	3	8	8	8	1	_	_	1	2	2
보조원	559	95	464	424	412	46	12	15	19	48	44
영양사	14	_	14	9	9	_	_	_	_	3	3
생활지도원	59	5	54	42	44	40	14	14	12	4	6
직업훈련교사	1	1	_	_	_	_	_	_	_	-	_
의사	43	40	3	31	35	1	1	_	_	5	6
간호사	157	10	147	127	126	2	1	_	1	18	16
물리치료사	37	10	27	26	28	_	_	-	_	4	3
치사부	148	2	146	120	121	_	_	_	_	13	16
세탁부	74	5	69	49	53	-	_	-	-	6	6
기타	7	7	_	3	3	_	_	-	_	_	_
전체	1,404	314	1,090	1,067	1,068	235	96	82	57	127	126
시설당 평균	10.5	2.4	8.0	8.8	8.9	1.7	0.7	0.7	0.4	0.9	0.9

〈附表 1-10〉 兒童施設 從事者數

	 ਵੋ	증사자수		정부보조	<u>-</u> 인원	사회복	지사 자	격증소지]자	'95년도	증감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260	132	128	244	238	224	186	31	7	9	7
총무	258	153	105	250	243	152	97	32	23	15	14
사무원	35	8	27	1	1	3	2	1	_	4	1
상담원	32	9	23	23	22	15	11	2	2	6	3
보육사	1,535	148	1,387	1,455	1,453	236	82	83	71	469	417
보조원	267	25	242	211	220	28	18	8	2	49	39
영양사	13	_	13	3	1	_	_	_	_	1	_
생활지도원	90	52	38	70	73	54	28	16	10	16	17
직업훈련교사	39	34	5	34	33	3	1	2	_	5	7
의사	5	5	_	2	2	_	_	_	_	-	_
간호사	159	_	159	151	146	8	5	1	2	52	26
물리치료사	4	1	3	3	3	_	_	_	_	1	1
치사부	293	9	284	239	234	_	_	_	_	30	29
세탁부	128	23	105	89	87	_	_	_	_	14	14
기타	19	16	3	12	12	1	1	_	-	3	5
전체	3,137	615	2,522	2,787	2,807	724	431	176	117	674	580
시설당 평균	11.6	2.3	9.4	10.4	10.4	2.7	1.7	0.7	0.4	2.4	2.2

〈附表 1-11〉 障碍人施設 從事者數

	₹ 2	· 사자수		정부 보조	즈인원 -	사회복	지사 자	격증소기	기 자	'95년도	등감
	계	남	여	'95	'96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132	78	54	120	122	87	60	18	9	8	8
총무	146	87	59	136	137	70	31	26	13	19	16
사무원	46	19	27	1	3	4	2	1	1	6	5
상담원	11	5	6	2	2	11	10	1	_	2	3
보육사	472	23	449	451	387	52	9	11	32	171	184
보조원	1,321	269	1,052	1,234	1,255	112	26	38	48	302	311
영양사	119	4	115	114	115	4	1	2	1	20	21
생활지도원	145	50	95	127	133	53	25	17	11	22	27
직업훈련교사	122	91	31	100	96	18	8	7	3	12	8
의사	82	68	14	85	76	2	1	1	_	14	9
간호사	159	8	151	149	151	7	1	2	4	30	28
물리치료사	122	23	99	113	112	8	2	3	3	24	22
치사부	177	13	164	148	150	1	-	-	1	24	27
세탁부	148	28	120	135	136	2	-	2	-	390	20
기타	10	7	3	9	13		_	_	_	1	2
전체	3,212	773	2,439	2,924	2,888	431	176	129	126	1,045	691
시설당 평균	21.3	5.2	16.1	19.6	19.4	2.8	1.2	0.9	0.8	7.1	4.7

〈附表 1-12〉 母子/婦女施設 從事者數

	종사자수			정부보조	인원	사회복	지사 자	격증소지	자	'95년도	증감
_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54	20	34	50	49	45	28	12	5	3	3
총무	55	19	36	50	49	30	14	9	7	12	12
사무원	5	_	5	_	_	_	_	_	=	_	_
상담원	17	_	17	17	17	10	7	3	-	2	1
보육사	3	1	2	3	3	_	_	_	_	1	1
보조원	8	2	6	12	13	_	_	_	-	2	2
영양사	2	_	2	2	2	1	_	_	1	_	_
생활지도원	44	2	42	39	38	26	9	10	7	19	8
직업훈련교사	58	9	49	56	52	3	2	_	1	15	13
의사	1	_	1	-	_	-	_	_	-	-	-
간호사	17	_	17	16	15	-	_	_	-	3	4
물리치료사	_	_	-	-	_	_	_	_	-	_	-
치사부	24	8	16	15	17	_	_	_	-	2	2
세탁부	15	11	4	15	15	1	_	1	-	1	1
기타	19	17	2	18	18					3	5
전체	322	89	233	293	288	116	60	35	21	63	52
시설당 평균	5.7	1.6	4.2	5.4	5.3	2.2	1.1	0.6	0.4	0.9	0.9

〈附表 1-13〉 精神療養施設 從事者數

	종사자수			정부보조	-인원	사회-	복지사 지) 격증소지	기자	'95년도	증감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84	51	33	64	66	40	27	8	5	4	1
총무	72	55	17	64	66	28	14	10	4	4	5
사무원	41	12	29	4	3	1	_	1	_	4	5
상담원	7	3	4	1	2	4	1	3	_	_	_
보육사	22	3	19	9	9	2	_	2	_	4	4
보조원	451	332	119	362	456	42	17	13	12	82	71
영양사	22	-	22	3	2	2	1	_	1	-	3
생활지도원	14	7	7	5	5	5	4	1	_	_	_
직업훈련교사	6	2	4	2	2	-	_	_	_	-	_
의사	68	64	4	60	71	_	_	_	_	4	3
간호사	213	12	201	194	217	4	_	3	1	45	45
물리치료사	6	1	5	4	5	_	_	_	_	1	1
치사부	89	14	75	71	73	1	1	_	_	8	5
세탁부	30	14	16	25	28	1	_	1	_	4	3
기타	21	19	2	18	18	2	2			4	4
전체	1,146	589	557	886	1,023	132	67	42	23	164	150
시설당 평균	15.7	8.1	7.6	12.8	14.7	1.8	0.9	0.6	0.3	2.4	2.1

	종사자수			정부보조	인원	사회복	지사 자	격증소지	자	'95년도	증감
_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28	17	11	25	26	15	13	1	1	_	
총무	28	22	6	24	26	7	4	_	3	2	2
사무원	22	5	17	6	6	1	1	_	_	3	3
상담원	26	12	14	24	25	20	15	5	_	3	1
보육사	8	3	5	8	8	1	_	1	_	4	4
보조원	128	63	65	120	126	6	2	_	4	18	19
영양사	7	_	7	2	3	1	_	_	1	4	6
생활지도원	142	73	69	132	140	47	22	17	8	19	21
직업훈련교사	10	10	_	5	5	_	_	_	_	_	_
의사	5	4	1	4	4	_	_	_	_	_	_
간호사	37	2	35	33	34	3	1	1	1	5	5
물리치료사	4	4	_	2	4	_	_	_	_	_	_
치사부	22	7	15	13	14	-	_	_	_	3	3
세탁부	12	9	3	9	9	_	_	_	_	2	2
기타	9	9	_	7	8	_	_	_	_	1	
전체	488	240	248	414	438	101	58	25	18	64	66
시설당 평균	18.8	9.3	9.5	16.0	16.9	4.0	2.3	1.0	0.7	2.5	2.5

〈附表 1-15〉 結核施設 從事者數

	종,	사자수		정부보조	인원	사회복	지사 자	격증소지	가	'95년도	증감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2	1	1	1	1	2	1	1	-	-	
총무	1	1	_	1	1	1	_	_	1	-	_
사무원	_	-	_	_	_	_	_	_	_	_	_
상담원	_	-	_	_	_	_	_	_	_	_	_
보육사	_	-	_	_	_	_	_	_	_	_	_
보조원	4	1	3	1	2	_	_	_	_	_	_
영양사	_	_	_	_	_	_	_	_	_	_	_
생활지도원	_	-	-	_	=	_	=	_	_	_	_
직업훈련교사	_	_	_	_	_	_	_	_	_	_	_
의사	_	-	_	_	_	_	_	_	_	_	_
간호사	3	_	3	1	1	_	_	_	_	_	_
물리치료사	_	_	_	_	_	_	_	_	_	_	_
치사부	1	-	1	_	_	_	_	_	_	_	_
세탁부	_	-	_	_	_	_	_	_	_	_	_
기타	=	-	-	=	=	_	=	_	_	-	
전체	11	3	8	4	5	3	1	1	1	_	
시설당 평균	5.5	1.5	4.0	4.5	5.0	1.5	0.5	0.5	0.5	_	_

	종사자수			정부보조	 돈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95년도 증감	
	 계	남	여	'95	'96	계	1급	2급	3급	퇴직자	 충원자
시설장	4	4	_	4	4	2	2	-	_	_	
총무	3	3	_	3	3	-	_	_	_	-	_
사무원	3	1	2	2	2	-	_	_	_	1	1
상담원	1	1	_	1	1	-	_	_	_	-	_
보육사	_	_	_	_	_	-	_	_	_	-	_
보조원	26	7	19	21	21	-	_	_	_	_	_
영양사	1	-	1	_	_	-	_	-	_	_	_
생활지도원	4	4	_	3	3	-	_	_	_	-	_
직업훈련교사	_	_	_	_	_	-	_	_	_	-	_
의사	4	4	_	3	3	-	_	-	_	_	_
간호사	12	_	12	12	12	-	_	_	_	-	_
물리치료사	2	2	_	2	2	-	_	_	_	-	_
치사부	6	-	6	3	3	-	_	-	_	_	_
세탁부	4	_	4	2	2	-	_	_	_	-	_
기타	_	_	_	_	_	_	_	_	-	_	_
전체	70	26	44	56	56	2	2			1	1
시설당 평균	17.5	6.8	10.8	14.0	14.0	0.5	0.5	_	_	0.3	0.3

〈附表 1-1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各 福祉厚生制度 있는 比率

(單位: 개소,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퇴직금제도	97.0	98.1	98.0	100.0	100.0	92.3	100.0	100.0	98.0
학비보조	9.6	10.8	5.9	7.1	6.9	7.7	50.0	25.0	8.9
학비대여	_	2.6	3.3	1.8	_	_	_	_	1.8
경조금제도	13.3	15.6	21.1	7.1	16.7	11.5	50.0	25.0	15.8
의료보험	95.6	98.1	97.4	94.6	98.6	100.0	100.0	100.0	97.3
국민연금	97.0	98.1	96.1	96.4	97.2	100.0	100.0	100.0	97.3
산재보험	34.1	37.5	49.3	21.4	44.4	30.8	50.0	_	38.4
고용보험	11.9	9.3	35.5	8.9	19.4	42.3	100.0	_	17.7
주택보조	6.7	8.6	4.6	5.4	2.8	-	_	-	6.1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1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各 手當制度 있는 比率

(單位: 개소,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시간외수당	5.2	3.3	6.6	1.8	15.3	7.7	-	=	5.6
휴일근무수당	4.4	1.9	9.9	1.8	11.1	3.8	_	-	5.0
야간근무수당	17.0	8.6	9.9	1.8	9.7	3.8	_	_	9.8
일직수당	9.6	4.5	16.4	5.4	20.8	30.8	_	_	10.6
숙직수당	5.2	1.5	11.8	7.1	47.2	42.3	_	_	10.9
특수수당	14.8	12.3	15.1	1.8	13.9	11.5	_	_	12.6
가족수당	89.6	95.5	95.4	98.2	98.6	92.3	100.0	100.0	94.8
주택수당	_	0.4	0.7	_	_	_	_	_	0.3
통근수당	2.2	1.1	3.3	3.6	2.8	_	_	25.0	2.2
출산수당	0.7	2.2	0.7	_	_	_	_	_	1.1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單位: 백만원, %)

	총수입	시설당	법인		보조금 !	및 지원금		기타	—————————————————————————————————————
	금액	평균수입	전입금	소계	정부보조	외원보조	민간보조	잡수입	/4] (1 N)
노인	32,844	243	10.4	86.0	77.6	1.6	6.8	3.6	100.0(135)
아동	90,535	337	9.7	86.6	73.1	5.7	7.8	3.7	100.0(269)
장애인	73,741	485	6.5	87.8	76.5	3.4	7.9	5.7	100.0(152)
모자/부녀	14,535	260	41.6	57.1	53.1	1.3	2.7	1.3	100.0(56)
정신요양	38,611	536	4.2	82.7	79.7	0.5	2.5	13.1	100.0(72)
부랑인	18,640	717	4.7	93.0	87.9	0.5	4.6	2.3	100.0(26)
결핵	382	191	21.7	74.3	59.7	2.1	12.5	4.0	100.0(2)
나장애인	1,705	426	20.4	76.0	75.8	_	0.2	3.6	100.0(4)
계	270,993	378	9.6	85.1	75.5	3.2	6.4	5.3	100.0(716)

〈附表 1-2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總 後援金 및 施設當 平均後援金

(單位: 개소, 백만원)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총후원금	14,632	21,598	15,943	720	3,797	129	22	3	56,844
시설당 평균후원금	212	99	155	21	127	12	22	3	122
N^{1}	69	218	103	34	30	11	1	1	467

註: 1) 전체 716개 시설중 무응답한 249개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附表 1-2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總支出 및 支出項目別 支出

(單位: 개소, 백만원,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직접비	35.7	39.1	27.9	37.5	44.1	44.3	38.0	59.8	36.9
주식비	11.5	5.3	4.8	7.3	9.6	11.8	3.6	14.6	7.2
부식비	8.9	10.1	8.5	11.7	16.6	18.4	9.2	20.0	11.2
피복비 ¹⁾	1.4	3.3	1.6	2.0	2.5	3.0	1.2	2.7	2.4
의료비	0.8	0.3	0.9	0.7	5.5	1.2	16.3	3.7	1.4
연료비	2.8	2.6	2.2	2.2	3.3	2.5	0.6	4.8	2.6
간식비	3.4	3.0	2.6	0.8	0.9	1.6	_	7.9	2.5
위생재료비	0.8	0.1	0.9	0.2	0.1	0.2	_	2.4	0.4
수용경비	1.3	1.3	1.1	1.2	1.4	1.4	2.7	1.3	1.3
공공요금	1.4	1.3	1.1	1.5	1.2	1.3	2.7	1.4	1.3
학용품비 ²⁾	_	1.6	0.4	1.2	0.1	0.1	_	_	0.7
교통비	0.2	1.0	0.1	0.2	0.1	0.1	_	0.2	0.4
기타	3.2	9.2	3.7	8.5	2.8	2.7	1.7	0.8	5.5
간접비	64.3	60.9	72.1	62.5	55.9	55.7	62.0	40.2	63.1
인건비	40.2	40.7	48.0	41.1	33.5	30.7	46.6	34.0	40.8
시설유지비	2.3	2.6	2.4	2.3	3.0	2.6	3.9	2.4	2.5
사무비품비	0.7	0.6	0.5	1.5	0.6	0.5	3.6	0.1	0.6
제세공과금	1.2	1.1	0.9	1.1	0.8	1.7	0.6	0.1	1.1
기능보강사업	11.9	9.7	13.7	12.3	12.1	14.4	_	0.1	11.7
장비보강 사업	2.7	0.7	1.3	1.4	2.4	0.8	_	0.2	1.4
기타	5.3	5.5	5.3	2.8	3.5	5.0	7.3	3.3	5.0
총지출액	35,075	91,094	70,315	8,953	39,572	18,845	337	1,744	265,935
시설당 평균지출액	260	339	463	160	550	725	169	436	371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註: 1) 피복비에는 교복비와 운동화가 포함되었음.

²⁾ 학용품비에는 부교재비가 포함되었음.

〈附表 1-22〉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敷地面積 및 施設當 平均面積

(單位: 천m², %)

	시설부지면적	시설당 평균면적	대지	전답	임야	기타	계(N)
노인	4,015	30	21.8	12.1	65.7	0.4	100.0(135)
아동	11,938	44	13.0	17.7	65.2	4.1	100.0(269)
장애인	4,477	29	32.4	7.5	59.1	1.0	100.0(152)
모자/부녀	530	9	33.6	14.2	45.7	6.5	100.0(56)
정신요양	1,736	24	24.4	16.2	56.4	3.0	100.0(72)
부랑인	693	27	32.6	5.6	50.2	11.6	100.0(26)
결핵	13	7	46.2	53.8	-	_	100.0(2)
나장애인	69	17	18.8	55.1	26.1	_	100.0(4)
계	23,471	33	20.1	14.4	62.5	3.0	100.0(716)

〈附表 1-23〉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建築面積 및 施設當 平均 建築面積

(單位: 천m², %)

									
	시설부지면적	시설당 평균면적	철근조	벽돌조	연와조	스레트	목조	기타	계(N)
노인	192	4	77.1	15.6	3.1	1.0	0.5	2.7	100.0(48)
아동	437	4	70.7	18.3	5.7	1.6	1.1	2.6	100.0(109)
장애인	466	7	79.8	3.6	13.9	0.2	-	2.5	100.0(67)
모자/부녀	219	12	90.0	3.2	0.9	_	2.3	3.6	100.0(18)
정신요양	174	4	72.4	17.2	2.3	5.7	_	2.4	100.0(44)
부랑인	102	6	92.2	5.9	_	_	_	1.9	100.0(17)
결핵	4	4	75.0	_	_	_	_	25.0	100.0(1)
나장애인	23	11	60.9	13.0	-	-	26.1	-	100.0(2)
계	1,617	5	78.1	10.8	6.4	1.3	1.2	2.2	100.0(306)

註: 전체 716개 시설중 무응답한 410개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附表 1-24〉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建築物 老朽期間 分布

(單位: 동수, %)

	총건물동수	5년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25년	25~30년	30년이상	계(N)
노인	439	24.4	28.9	19.6	12.1	3.6	5.5	5.9	100.0(135)
아동	1,216	18.1	27.7	25.7	8.3	3.9	5.2	11.1	100.0(269)
장애인	569	27.8	39.0	19.0	6.9	3.2	1.6	2.5	100.0(152)
모자/부녀	171	17.5	26.9	36.3	8.8	2.3	4.1	4.1	100.0(56)
정신요양	369	21.7	33.3	22.2	12.7	3.5	1.9	4.7	100.0(72)
부랑인	150	16.7	40.0	36.0	5.3	0.7	0.7	0.6	100.0(26)
결핵	4	_	_	50.0	50.0	-	-	_	100.0(2)
나장애인	18	16.7	22.2	33.3	11.1	16.7	-	-	100.0(4)
계	2,936	21.2	31.3	24.3	9.1	3.5	3.8	6.8	100.0(716)

〈附表 1-2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建築狀態

(單位: 동수, %)

	총건물동수	양호	보통	불량	계(N)
노인	439	54.4	28.1	17.5	100.0(135)
아동	1,216	53.3	27.6	19.1	100.0(269)
장애인	569	56.1	29.8	14.1	100.0(152)
모자/부녀	171	40.4	47.9	11.7	100.0(56)
정신요양	369	48.2	35.3	16.5	100.0(72)
부랑인	150	50.7	34.6	14.7	100.0(26)
결핵	4	_	100.0	-	100.0(2)
나장애인	18	22.2	66.7	11.1	100.0(4)
계	2,936	52.3	30.9	16.8	100.0(716)

〈附表 1-2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事務室數 및 面積

(單位: 개소, 천m²,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사무실	154	307	216	75	123	50	2	5	932
거실	2,921	3,387	2,094	735	2,072	936	1	592	12,738
교육훈련실	22	134	239	70	57	20	_	1	543
작업(치료)실	87	88	190	23	30	37	2	3	460
강당	73	230	92	28	58	19	1	2	503
상담실	69	194	120	40	72	32	1	2	530
도서실	17	216	57	44	27	11	1	1	374
오락·휴게실	112	165	123	20	66	41	3	3	533
창고	167	532	259	84	141	62	1	9	1,255
기타	540	778	484	128	281	193	7	9	2,420
전체 사무실수	4,110	6,170	3,852	1,165	2,926	1,399	19	628	20,269
시설당 평균사무실수	30.4	22.9	25.3	20.8	40.6	53.8	9.5	157.0	28.3
사무실	5	30	9	3	5	3	_	-	55
거실	53	112	79	21	67	33	_	8	373
교육훈련실	-	12	29	5	1	7	_	_	54
작업(치료)실	3	3	27	1	2	5	_	_	41
강당	8	32	17	2	11	7	_	_	77
상담실	1	4	3	2	2	1	_	_	13
도서실	_	16	2	14	_	_	_	_	32
오락·휴게실	5	9	9	1	4	2	_	_	30
창고	5	26	15	1	7	6	_	_	60
기타	67	124	158	80	57	37	_	2	525
전체 면적	166	373	411	135	68	112	_	16	1,381
시설당 평균면적	1.2	1.4	2.7	2.4	2.3	4.3		4.0	1.9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2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保健衛生施設

(單位: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지정병·의원									
있다	67.4	68.8	65.1	33.9	68.1	61.5	100.0	100.0	64.9
없다	30.4	30.1	34.2	66.1	31.9	38.5	_	_	34.1
무응답	2.2	1.1	0.7	_	_	_	_	_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급수시설									
상수도	45.9	60.6	46.1	80.4	31.9	42.3	50.0	75.0	52.8
우물	2.2	0.7	0.7	1.8	1.4	_	_	_	1.1
펌프지하수	51.1	38.7	52.0	17.8	66.7	57.7	50.0	25.0	45.8
기타	0.7	-	0.7	_	-	_	_	_	0.1
무응답	0.1	-	0.5	_	-	_	_	_	0.2
_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물부족상태									
별문제없음	60.7	74.0	59.2	75.0	47.2	38.5	100.0	100.0	64.7
다소부족	25.2	17.5	28.9	19.6	33.3	42.3	_	_	23.9
절대부족	12.6	7.4	9.9	5.4	16.7	19.2	_	_	10.1
무응답	1.5	1.1	2.0	_	2.8	_	_	_	1.3
_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장실									
전체수 ¹⁾	2,590	3,543	2,854	867	1,584	953	22	153	12,566
수세식	96.0	91.7	97.5	96.1	90.4	97.8	100.0	85.6	94.5
재래식	4.0	8.3	2.5	3.9	9.6	2.2	_	14.4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註: 1) 각 시설에 있는 화장실의 총수임.

〈附表 1-2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安全設備 現況

									(中四・/0)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전기									
안전	77.8	88.5	84.9	80.4	83.3	61.5	_	100.0	83.4
보통	17.8	11.2	11.2	12.5	15.3	30.8	100.0	_	13.8
불량	3.0	0.3	2.6	7.1	_	7.7	_	_	2.2
무응답	1.4	_	1.3	_	1.4	_	_	_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u></u> 가스									
안전	87.4	90.7	86.2	73.2	87.5	76.9	50.0	100.0	86.9
보통	10.4	7.8	11.2	23.2	8.3	19.2	50.0	_	10.8
불량	0.7	0.7	_	1.8	_	_	_	_	0.6
무응답	1.5	0.8	2.6	1.8	4.2	3.9	_	_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냉방									
안전	33.3	28.3	30.9	35.7	23.6	15.4	_	25.0	29.3
보통	15.6	26.4	23.7	17.9	26.4	11.5	_	75.0	22.8
불량	17.8	7.8	15.8	14.3	11.1	15.4	50.0	_	12.6
무응답	33.3	37.5	29.6	32.1	38.9	57.7	50.0	_	3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난방									
안전	71.1	78.8	73.0	71.4	76.4	73.1	_	100.0	75.0
보통	23.0	16.4	21.1	17.9	18.1	15.4	100.0	_	19.0
불량	4.4	4.8	4.6	10.7	4.2	11.5	_	_	5.4
무응답	1.5	_	1.3	_	1.3	_	_	_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급수									
안전	65.2	73.6	69.1	67.9	61.1	61.5	50.0	100.0	69.0
보통	24.4	20.8	23.0	17.9	26.4	34.6	50.0	_	22.8
불량	5.9	5.6	5.9	14.2	8.3	3.9	_	_	6.8
무응답	4.5	-	2.0	-	4.2	-	_	_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배수									
안전	65.2	71.7	57.9	67.9	66.7	76.9	_	100.0	66.9
보통	25.2	24.9	31.6	26.8	20.8	23.1	100.0	_	26.1
불량	5.9	3.4	7.2	5.3	11.1	_	_	_	5.4
무응답	3.7	_	3.3	_	1.4	_	_	_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화									
안전	71.9	79.2	73.0	73.2	79.2	76.9	50.0	100.0	76.0
보통	24.4	20.1	21.1	25.0	16.7	19.2	50.0	-	21.1
불량	2.2	0.4	3.3	1.8	1.4	3.9	_	-	1.7
무응답	1.5	0.3	2.6	-	2.7	_	_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 · · · · · · · · · ·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u>합</u> 계
위험물저장									
안전	62.2	69.5	67.1	58.9	75.0	76.9	50.0	100.0	67.7
보통	19.3	13.8	21.1	16.1	12.5	19.2	50.0	_	16.6
불량	5.2	2.2	2.0	3.6	4.2	3.9	_	_	4.5
무응답	13.3	14.5	9.8	21.4	8.3	_	_	_	1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누전차단									
안전	81.5	90.7	80.3	75.0	87.5	80.8	_	50.0	84.4
보통	14.8	7.1	14.5	17.9	9.7	7.7	100.0	50.0	11.7
불량	1.5	0.7	1.3	7.1	_	7.7	_	_	1.7
무응답	2.2	1.5	3.9	_	2.8	3.8	_	_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축대난간									
안전	67.4	75.1	64.5	75.0	72.2	65.4	_	100.0	70.7
보통	18.5	16.7	19.7	21.4	16.7	26.9	50.0	_	18.4
불량	8.9	3.3	9.2	3.6	6.9	7.7	_	_	6.1
무응답	5.2	4.9	6.6	_	4.2	_	50.0	_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상구등대피									
안전	72.6	72.1	71.1	76.8	77.8	69.2	50.0	25.0	72.5
보통	20.0	20.8	22.4	21.4	15.3	30.8	50.0	50.0	21.1
불량	5.2	2.2	2.6	-	4.2	-	-	-	2.8
무응답	2.2	4.9	3.9	1.8	2.7	_	_	25.0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안전	3.7	10.4	9.9	5.4	8.3	15.4	-	-	8.5
보통	2.2	5.2	5.3	_	5.6	3.8	_	_	4.2
불량	=	0.7	_	=	_	_	_	_	0.3
무응답	94.1	83.7	84.8	94.6	86.1	80.8	100.0	100.0	8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29〉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火災保險 加入與否 및 스프링클러 設置與否

(單位: 만원, 백m², %)

								/	. ,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화재보험가입 여부									
가입	49.6	65.4	46.1	55.4	27.8	30.8	_	=	52.0
미가입	49.6	34.6	53.3	44.6	70.8	69.2	100.0	100.0	47.6
무응답	0.8	_	0.6	_	1.4	-	_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재보험 월평균 보험료	36	28	76	13	277	30	_	_	51
스프링쿨러 설치여부									
설치	14.8	10.8	22.4	12.5	45.8	7.7	_	-	17.5
미설치	83.7	88.5	77.0	83.9	54.2	92.3	100.0	100.0	81.6
무응답	1.5	0.7	0.6	3.6	_	_	_	_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스프링클러 설치 평균면적	1.3	0.6	2.5	0.4	4.2	2.3	_		1.6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3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지난 5年間 施設當 平均 收容人員 增減推移

	1991	1992	1993	1994	1995
노인	67	68	67	67	67
아동	91	90	82	79	74
장애인	105	102	104	105	105
모자/부녀	69	64	63	56	53
정신요양	225	230	232	228	229
부랑인	309	322	328	328	324
결핵	39	34	35	25	17
나장애인	356	356	331	319	306
전체시설	112	112	109	107	104

〈附表 1-3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法定 施設運營基準 遵守與否

								(月	型位・%)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연1회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지키고 있다	91.9	95.5	96.7	87.5	95.8	84.6	100.0	100.0	94.1
지키지 못하고 있다	8.1	4.1	2.6	12.5	4.2	15.4		_	5.6
무응답	_	0.4	0.7		_	-	_	_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영양사 혹은 보건소의									
지도에 의한 식단작성									
지키고 있다	52.6	56.9	92.1	19.6	80.6	80.8	_	_	63.4
지키지 못하고 있다	41.5	30.9	5.9	17.9	18.1	19.2	50.0	75.0	25.1
해당없음	4.4	10.0	1.3	55.4	_	_	50.0	_	9.4
무응답	1.5	2.2	0.7	7.1	1.3	-	_	25.0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직, 인사등에 관한									
필요규정의 제정 및 시행									
지키고 있다	83.0	86.2	88.8	83.9	88.9	84.6	100.0	75.0	86.2
지키지 못하고 있다	9.6	7.8	6.6	5.4	5.6	7.7	_	_	7.4
해당없음	5.9	3.3	2.0	10.7	2.8	7.7	_	25.0	4.3
무응답	1.5	2.7	2.6	_	2.7	_	_	_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운영장부 및 서류비치									
지키고 있다	99.3	99.3	98.7	98.2	98.6	100.0	100.0	100.0	99.0
지키지 못하고 있다	0.7	_	=	_	1.4	=			0.3
무응답	_	0.7	1.3	1.8	_	_	_	_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에서의 직원기거									
지키고 있다	83.7	97.8	93.4	76.8	90.3	73.1	100.0	100.0	90.9
지키지 못하고 있다	9.6	1.1	2.6	7.1	4.2	15.4	-	-	4.3
해당없음	6.7	0.4	2.6	14.3	5.5	7.7	_	_	3.9
무응답	_	0.7	1.4	1.8	=	3.8	_	_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립, 재활가능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시설									
지키고 있다	6.7	19.7	63.8	50.0	23.6	57.7	_	_	30.6
지키지 못하고 있다	17.0	9.7	10.5	7.1	31.9	26.9	50.0	_	14.0
해당없음	70.4	58.7	20.4	35.7	38.9	15.4	=	100.0	47.5
무응답	5.9	11.9	5.3	7.2	5.6	_	50.0	_	7.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지키고 있다	77.8	91.1	87.5	96.4	97.2	92.3	100.0	75.0	88.8
지키지 못하고 있다	14.8	2.6	6.6	1.8	1.4	7.7		25.0	5.9
해당없음	5.9	4.1	4.6	1.8	1.4	-	_	-	3.9
무응답	1.5	2.2	1.3	_	-	_	_	_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지키고 있다	63.0	84.0	87.5	82.1	93.1	84.6	100.0	50.0	81.4
지키지 못하고 있다	33.3	14.1	10.5	14.3	6.9	15.4	-	50.0	16.5
해당없음	1.5	-	0.7	3.6	-	-	_	-	0.7
무응답	2.2	1.9	1.3	-	_	_	_	_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199	۷09	102	סט	14	∠0		4	110

〈附表 1-32〉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入所者의 收容形態 및 入所制限

								`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현재 한방에 기거하는									
평균 인원수									
2인 이하	26.7	3.0	0.7	10.7	_	_	_	75.0	7.5
3∼8인	70.4	85.9	77.6	85.7	83.3	65.4	100.0	25.0	79.9
9~14인	2.2	9.3	18.4	1.8	12.5	19.2	_	_	9.9
15~19인	_	0.7	1.3	_	1.4	11.5	_	_	1.1
20~49인	_	0.7	1.3	_	2.8	_	_	_	0.8
50인 이상	_	_	_	_	-	3.9	_	-	0.1
무응답	0.7	0.4	0.7	1.8	_	_	_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입소자의 수용형태 ¹⁾									
성별로 분리수용	86.7	86.2	87.5	10.7	95.8	100.0	100.0	100.0	82.3
장애유형별로 수용	53.3	5.2	40.1	_	50.0	34.6	50.0	75.0	27.4
연령별로 분리 수용	7.4	71.7	37.5	14.3	20.8	26.9	_	-	40.5
전염병환자는 격리수용	45.9	44.2	54.6	14.3	81.9	76.9	_	50.0	49.3
분리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3.7	0.7	3.3	8.9	4.2	15.4	_	-	3.4
기타	13.3	7.4	6.6	66.1	4.2	7.7	_	-	1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제한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23.7	22.3	44.7	32.1	22.2	26.9	100.0	75.0	28.8
관할지역 주민이어야 함	0.7	1.1	0.7	-	2.8	_	_	-	1.0
설치목적부합+관할지역주민	15.6	16.0	19.7	12.5	18.1	3.8	_	_	16.1
행정관서에서 결정	53.3	58.0	32.2	50.0	51.4	69.3	_	_	50.3
제한이 없다	5.9	2.2	2.0	3.6	5.5	_	_	25.0	3.4
무응답	0.8	0.4	0.7	1.8	-	_	_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註: 1) 각각의 항목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즉, 각 항목별로 100.0%로 했을 때 응답한 비율임.

〈附表 1-33〉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의 收容能力 및 適正收容人員 規模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귀 시설의 수용능력									
시설수용능력에 비해	15.6	6.7	21.7	8.9	11.1	26.9		_	12.8
정원수가 많음									
적합하다	33.3	26.8	46.1	39.3	50.0	30.8	_	_	35.3
시설수용능력에 비해	17.0	18.2	8.6	19.6	20.8	30.8	50.0	25.0	16.9
정원수가 적음									
정원수 적합, 현원부족	31.1	47.2	21.1	28.6	9.7	7.7	50.0	50.0	32.0
기타	3.0	0.7	2.0	1.8	6.9	3.8	_	25.0	2.4
무응답	_	0.4	0.5	1.8	1.5	_	_	_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의 적정수용인원 규모									
20명 미만	5.2	1.1	1.3	3.6	_	_	_	_	2.0
20~49명	20.0	25.3	21.1	32.1	1.4	_	100.0	25.0	20.8
50~ 99명	54.8	62.1	49.3	55.4	4.2	23.1	_	_	49.7
100~199명	16.3	8.9	23.0	3.6	25.0	38.5	_	50.0	15.8
200~299명	0.7	0.7	3.3	_	58.3	11.5	_	_	7.4
300명 이상	0.7	1.1	0.7	_	11.1	23.1	_	25.0	2.9
무응답	2.3	0.8	1.3	5.3	_	3.8	_	_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34〉 社會福祉收容施設 種別 入所者에 대한 職業敎育實施 與否 및 未實施 理由

								, ,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 여부									
실시하고 있다	1.5	13.4	50.7	33.9	13.9	30.8	50.0	=	21.4
위탁교육 실시	_	15.6	3.3	19.6	1.4	_	_	=	8.2
실시하지 않고 있다	84.4	45.4	37.5	35.7	75.0	53.8	50.0	75.0	53.8
기타	7.4	16.4	4.6	7.1	8.3	3.8	_	_	10.1
무응답	6.7	9.2	3.9	3.7	1.4	11.6	_	25.0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직업교육 미실시 이유									
취업과의 연관성희박	6.7	3.3	2.6	1.8	4.2	7.7	50.0	-	4.1
직업기술지도원 부족	_	4.5	2.6	-	5.6	15.4	_	=	3.4
시설부족	_	2.6	2.0	_	13.8	3.8	_	_	2.9
재정부족	_	4.1	_	3.6	12.5	_	_	_	3.1
입소자의 기피현상	4.4	3.3	_	1.7	_	_	_	_	2.2
입소자의 특성이	68.1	25.7	30.3	28.6	38.9	26.9	_	75.0	36.5
직업교육과 무관									
기타	5.2	1.9	_	_	_	_	_	_	1.6
비해당	15.6	54.6	62.5	64.3	25.0	46.2	50.0	25.0	4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3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行政機關, 타 社會福祉施設과 有關團體와의 協助關係

								(耳	4位: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시설의 사업수행시 행정기관에									
가장 바라는 것									
업무담당 행정기관이 가까운곳에 위치	3.0	2.2	0.7	1.8	1.4	_	-	_	1.8
업무담당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배치	11.1	7.4	11.2	14.3	12.5	19.2	-	_	10.3
불필요한 행정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43.7	54.6	49.3	46.4	51.4	38.5	100.0	25.0	49.9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효율성 향상	36.3	32.7	33.6	26.8	31.9	38.5	-	75.0	33.4
기타	2.2	1.1	3.3	7.1	1.4	3.8	_	_	2.4
무응답	3.7	2.0	1.9	3.6	1.4	_	_	_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사회내 타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와의 협조 및 의뢰									
긴밀한 협조·의뢰가 이루어짐	11.9	23.8	21.7	12.5	22.2	15.4	_	50.0	19.8
부분적인 협조·의뢰가 이루어짐	68.1	68.0	67.1	67.9	62.5	61.5	100.0	50.0	67.0
거의 협조·의뢰없음	18.5	7.8	9.9	17.9	15.3	23.1	-	_	12.3
기타	0.7	_	_	1.7	_	_	-	_	0.3
무응답	0.8	0.4	1.3	_	_	_	_	_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시설간 원활한 협조방안									
현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시설 간의 협조를 담당하는 기능보강	28.9	14.9	25.7	25.0	31.9	30.8	50.0	75.0	23.3
사회복지시설간의 협조 등을 담당할 복지사무소 신설	40.0	42.8	47.4	42.9	44.4	46.2	-	_	43.2
민간 사회복지협의회지부 기능보강 및 협조기능 담당	12.6	23.4	18.4	14.3	12.5	11.5		_	17.9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별로 위치 및 협조기능 담당	12.6	15.2	4.6	14.3	9.7	11.5	-	25.0	11.7
무응답	5.9	3.7	3.9	3.5	1.5	_	50.0	_	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3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専門從事者 確保의 어려움 및 重要 從事者 資質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전문종사자 확보의 어려움									
낮은 급여수준	85.2	63.2	78.9	80.4	83.3	88.5	50.0	75.0	75.0
나쁜 근무환경	5.9	15.2	5.3	8.9	11.1	3.8	_	=	9.9
과중한 업무	0.7	7.4	7.9	-	=	_	_	=	4.6
장래성이 없음	4.4	9.7	6.6	5.4	4.2	7.7	_	_	7.0
그릇된 사회인식	1.5	1.9	0.7	3.6	1.4	_	_	25.0	1.7
기타	1.5	1.9	_	1.7	_	_	_	_	1.1
무응답	0.8	0.7	0.6	_	_	_	50.0	_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장 중요한 종사자 자질									
인격	19.3	24.2	21.7	26.8	18.1	11.5	_	=	21.6
전문지식	6.7	14.9	11.2	14.3	27.8	15.4	_	25.0	13.8
경험	6.7	5.2	4.6	12.5	6.9	11.5	_	=	6.3
인간애	39.3	30.9	38.2	26.8	31.9	38.5	100.0	75.0	34.5
열성(의욕)	25.2	23.8	23.7	16.1	15.3	23.1	_	_	22.3
기타	0.7	0.4	_	3.5	=	_	_	=	0.6
무응답	2.1	0.6	0.6	_	_	_	_	_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3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在 活動하는 自願奉仕者 및 施設當 平均 自願奉仕者數

(單位: 명, %)

								(+-1	0, /0/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전체 자원봉사자수	5,077	15,144	22,211	351	1,576	1,174	9	131	45,673
시설당 평균 자원봉사자수	44.5	63.9	163.3	9.0	32.2	65.2	4.5	65.5	76.5
전문의료진	2.6	1.6	0.8	2.8	1.9	4.4	11.1	0.8	1.5
전문법률가	_	_	_	0.3	-	_	_	_	_
상담원	0.6	0.1	_	1.4	_	0.2	_	_	0.1
기술교육강사	_	0.4	0.1	3.1	-	0.3	_	_	0.2
특수교육강사	_	0.3	0.1	2.6	-	_	_	_	0.2
취미·교양강좌강사	0.4	2.3	0.3	19.7	5.2	3.5	22.2	_	1.4
부업지도	0.1	0.7	0.1	_	_	_	_	_	0.3
아동청소년 학습교사	_	7.6	1.3	14.2	1.1	_	_	_	3.3
보모	1.7	1.8	11.5	_	_	_	_	_	6.4
학생자원봉사자	35.9	62.8	35.9	39.3	36.4	30.4	_	42.0	44.7
기타	58.7	22.4	49.9	16.6	55.4	61.2	66.7	57.2	41.9
_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자원봉사자수	1,607	5,686	8,262	104	413	652	3	36	16,763
시설당 평균 자원봉사자수	14.1	24.0	60.8	2.7	8.4	36.2	1.5	18.0	28.1
전문의료진	5.6	2.9	1.5	5.8	3.1	6.1	33.3	2.8	2.4
전문법률가	_	0.1	_	1.0	-	_	_	-	0.1
상담원	0.1	0.1	0.1	1.9	0.2	0.2	_	-	0.1
기술교육강사	_	0.7	0.2	1.0	_	0.6	_	_	0.4
특수교육강사	_	0.4	0.1	1.0	_	_	_	-	0.2
취미·교양강좌강사	0.3	2.7	0.1	9.6	5.8	0.3	66.7	_	1.3
부업지도	0.1	0.7	0.2	=	=	_	_	_	0.3

(單位: 명,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아동청소년 학습교사	-	8.9	1.6	12.5	2.4	_	_	_	4.0
보모	0.9	0.3	0.7	_	_	_	_	_	0.5
학생자원봉사자	37.0	61.4	41.6	53.8	45.3	26.8	_	55.6	47.5
기타	56.0	21.8	53.9	14.4	43.2	66.0	_	41.6	4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자원봉사자수	3,470	9,458	13,949	247	1,163	522	6	95	28,910
시설당 평균 자원봉사자수	30.4	39.9	102.6	6.3	23.7	29.0	3	47.5	48.4
전문의료진	1.4	0.9	0.5	2.1	1.5	2.2	_	_	0.8
전문법률가	_	_	_	_	_	_	_	_	_
상담원	0.9	0.1	_	1.2	_	0.2	_	_	0.2
기술교육강사	_	0.3	_	4.0	_	_	_	_	0.1
특수교육강사	_	0.3	_	3.2	_	_	_	_	0.1
취미·교양강좌강사	0.4	2.0	0.4	23.9	5.0	7.5	_	_	1.4
부업지도	0.2	0.8	0.1	_	_	_	_	_	0.3
아동청소년 학습교사	_	6.8	1.1	15.0	0.6	_	_	_	2.9
보모	2.0	2.8	18.0	-	_	_	_	_	9.8
학생자원봉사자	35.4	63.6	32.5	33.2	33.2	34.9	_	36.8	43.1
기타	59.7	22.4	47.4	17.4	59.7	55.2	100.0	63.2	4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4	237	136	39	49	18	2	2	597

註: 전체 716개 시설중 자원봉사자가 전혀 없는 119개 시설은 분석에서 제외시켰음.

〈附表 1-3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在 活動하는 自願奉仕者에 대한 態度

								\(\)	- 1
	노인	아동	장애인 5	고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현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수									
적당하다	37.8	42.0	44.1	19.6	15.3	26.9	100.0	-	36.6
조금 부족하다	26.7	26.4	24.3	28.6	12.5	11.5	_	25.0	24.2
많이 부족하다	11.9	11.5	15.1	8.9	22.2	19.2	_	_	13.4
기타	3.0	6.7	5.9	3.6	1.4	3.8	_	25.0	5.0
무응답	20.6	13.4	10.6	39.3	48.6	38.6	_	50.0	2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원봉사자 활동의 도움정도									
큰 도움이 된다	43.7	40.1	46.7	42.9	33.3	30.8	100.0	_	41.3
조금 도움이 된다	30.4	36.8	40.8	19.6	16.7	26.9	_	50.0	32.7
별로 도움이 안됨	5.9	9.3	1.3		1.4	3.8	_	_	5.2
전혀 도움이 안됨	-	0.7	1.3	-	_	_	_	-	0.6
무응답	20.0	13.1	9.9	37.5	48.6	38.5	_	50.0	2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움이 된다면 가장 큰 이유									
인건비의 절약	9,6	7.1	8.6	3.6	4.2	7.7	50.0	_	7.4
전문인력의 활용	13.3	23.4	14.5	30.4	15.3	11.5	_	50.0	19.0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17.8	18.6	27.0	5.4	15.3	26.9	_	_	19.0
수용자들의 사기향상	21.5	24.9	26.3	17.9	12.5	7.7	50.0	_	22.1
기타	11.9	2.9	11.1	5.2	2.7	3.9	_	-	6.5
비해당	25.9	23.1	12.5	37.5	50.0	42.3	_	50.0	2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장 큰 이유									
충분한 확보 어려움	_	1.1	_	_	_	-	_	_	0.7
자원봉사기간이 너무 자의적임	2.2	1.1	_	_	_	3.8	_	_	1.5
자원봉사자의 책임감 부족	1.5	5.2	_	_	-	_	_	-	2.2
사업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2.2	1.9	1.8	_	1.4	_	_	-	0.8
자원봉사자가 부족									
기타	_	0.7	0.8	_	_	_	_	_	0.6
비해당	94.1	90.0	97.4	100.0	98.6	96.2	100.0	100.0	9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원봉사자 확보의 주된방식									
매스콤을 통하여	2.2	3.7	0.7	3.6	2.8	3.8	_	-	2.7
지역사회 종교단체를 통하여	35.6	24.2	48.0	14.3	23.6	30.8	100.0	25.0	31.0
지역내에서 벽보등을 통하여	_	0.7	0.7	1.8	_	_	_	_	0.6
이웃과 친지의 권유로	1.5	5.9	2.0	7.1	1.4	_	_	_	3.6
지원에 의하여	36.3	43.1	34.9	19.6	19.4	23.1	_	25.0	34.9
기타	3.0	8.9	2.6	14.3	9.7	3.8	_	_	6.7
무응답	21.4	13.5	11.1	39.3	43.1	38.5	_	50.0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39〉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後援者數 및 後援 結緣事業에 대한 態度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 계
귀 시설의 후원자수		, 0	0 1/ 2		0 2 - 0	7 0 2		10 11	
0명	14.8	3.0	5.9	30.4	41.7	38.5	_	25.0	13.3
1~2명	4.4	2.2	1.4	7.1	7.0	7.6	_	-	3.5
3~5명	5.2	3.3	3.3	7.1	8.4	_	50.0	_	4.4
6~9명	8.9	1.9	5.3	5.4	2.8	7.7	-	_	4.5
10명 이상	54.8	88.1	79.6	44.6	33.3	34.6	50.0	50.0	68.9
무응답	11.9	1.5	4.5	5.4	6.8	11.6	_	25.0	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후원 결연사업에 대해									
결연후원금은 시설운영에	51.1	81.8	73.0	50.0	44.4	30.8	F0.0	F0.0	65.8
큰 도움이 됨							50.0	50.0	
별로 도움이 안됨	10.4	5.6	13.8	5.4	4.2	11.5	EO O		8.4
없는 편이 차라리 났겠음	0.7	0.4	1.3	-	1.4	3.8	50.0	_	0.8
기타	11.1	7.7	1.5	8.8	1.5	3.8	_	50.0	6.3
비해당	26.7	4.5	10.4	35.8	48.5	50.1	100.0	100.0	1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후원결연사업의 가장									
효율적인 확대방안									
특정수용자에 대한	4.4	2.2	2.6	_	2.8	7.7	_	-	2.8
특정후원자 결연 확대									
시설에 대한	17.8	30.5	27.0	14.3	13.9	11.5	50.0	-	23.6
개인 결연후원자를 증가									
기업 및 사회단체와의	27.4	47.6	40.8	32.1	27.7	11.6	_	50.0	37.7
자매결연 추진									
기타	1.5	1.5	2.6	3.6	_	_	_	_	1.7
비해당	48.9	18.2	27.0	50.0	55.6	69.2	50.0	50.0	3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訪問者에 대해 가장 바라는 점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자주 방문해 주었으면	36.3	23.4	36.2	28.6	36.1	38.5	_	25.0	30.7
좋겠다									
연말연시의 형식적인	30.4	30.9	21.7	23.2	37.5	26.9	_	-	28.5
방문은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	40.5	22.0	22.0	00.4	22.2	20.4	1000	0	22.0
방문시 예의를 갖추어	18.5	29.0	26.3	30.4	20.8	23.1	100.0	75.0	26.0
수용자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나치게 업무에 지장을	12.6	11.9	13.2	10.7	1.4	3.8	_	_	10.8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타	-	3.0	1.3	3.6	1.4	_	_	-	1.8
무응답	2.2	1.8	1.3	3.5	2.8	7.7	_	-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 事業內容에 대한 反應 및 施設 移轉意思

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	노인 22.2 63.7	아동 21.2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지역사회의 반응 매우 좋다		21.2							
지역사회의 반응 매우 좋다		21.2							
매우 좋다		21.2							
		41.4	22.4	19.6	8.3	26.9		_	20.3
내세도 놓나	(),), (70.3	65.1	69.6	58.3	50.0	100.0	75.0	66.1
별로 좋지 않다	12.6	5.9	10.5	10.8	27.8	15.4	-	25.0	11.2
매우 좋지 않다		0.4	0.7	-	5.6				0.8
무응답	1.5	2.2	1.3	-	=	7.7	_	-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응이 좋지 않다면, 시설									
이전의사는?									
없다	8.9	7.8	9.2	10.8	19.4	15.4	_	25.0	10.6
있다	3.7	1.5	2.0	-	14.0	-	_	_	1.4
비해당	87.4	93.7	88.8	89.2	66.6	84.6	100.0	75.0	8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반응이 좋지 않다면, 그 이유									
지역주민들의 편견의식	10.4	4.0	9.2	5.4	30.6	15.4	_	25.0	9.6
시설자체의 개방화 노력부족	1.5	0.4	J. <u>/</u> _	- 0.4	2.8	- 10.4	_	<i>2</i> 0.0	0.7
시설이 외딴 곳에 위치	-	-	0.7	1.8	2. 0	_	_	_	0.3
기타	0.7	1.9	1.3	3.6	_	_	_	_	1.4
비해당	87.4	93.7	88.8	89.2	66.6	84.6	100.0	75.0	8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전의사가 있다면, 이에									
따른 가장 큰 요구사항은?									
세제상의 혜택	_	0.4	0.7	_	_	_	_	_	0.3
이전비용 지원	2.2	0.4	0.7	_	7.0	_	_	_	0.6
개발제한지역의 완화	1.5	0.7	0.6	_	7.0	_	_	_	0.5
기타	-	-	-	_	-	_	_	_	-
비해당	96.3	98.5	98.0	100.0	86.0	100.0	100.0	100.0	9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2〉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開放化를 위해 가장 效果的인 方法 $^{1)}$

								` '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강당, 운동시설, 물리치료장비 등 각종 설비를 지역주민들에게 유·무상대여	34.1	32.3	25.0	28.6	15.3	19.2	-	-	28.4
지역주민들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오락회, 후원의 밤 등 각종 행사개최	8.1	15.6	15.8	5.4	26.4	26.9	-	-	14.8
지역주민과 지역유지들이 중심이 되는 시설후원조직의 구성	14.8	20.4	15.1	19.6	25.0	3.8	-	_	17.9
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의 활성화	25.2	15.2	25.7	10.7	20.8	26.9	-	25.0	20.0
시설운영발전위원회를 조직, 지역유지·종교단체 등 관련 인사를 참여시켜 재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토론 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마련	8.1	8.6	10.5	16.1	8.3	11.5	50.0	50.0	9.9
법인이사회에 지역유지 등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	4.4	1.9	0.7	5.4	1.4	3.8	-	_	2.4
기타	_	0.7	2.0	3.6	_	_	_	_	1.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註: 1) 각각에 응답한 비율임.

〈附表 1-43〉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自體에서 하고 있는 收益事業¹⁾

(單位: %)

									· · · · ·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부동산 임대업	8.1	22.3	4.6	28.6	11.1	_	=	=	14.2
농·축·임업	24.4	26.0	7.2	8.9	22.2	38.5	50.0	25.0	20.5
도·소매업	_	_	_	3.6	_	_	_	_	0.3
제조업	0.7	0.4	9.9	1.8	1.4	7.7	_	_	2.9
용역, 서비스업	_	1.5	2.6	3.6	1.4	11.5	_	_	2.0
기타	13.3	13.0	13.2	19.6	15.3	15.4	-	50.0	14.1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註: 1) 각각에 응답한 비율임.

〈附表 1-44〉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95年度 總 收益金額 및 平均金額

(單位: 백만원)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수익사업하는 시설수	39	127	38	23	23	11	1	2	264
총 수익금액	1,860	4,935	1,557	751	980	1,003	6	90	11,182
시설당 평균 수익금액	47.7	38.9	41.0	32.7	42.6	91.2	6	45.0	42.4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5〉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行 政府補助金 支援方式인 收容人員 比例方式에 대한 意見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찬성	57.8	75.1	60.5	73.2	52.8	65.4	50.0	75.0	65.9
반대	19.3	11.2	22.4	7.1	38.9	26.9	_	25.0	18.2
기타	14.1	11.5	9.9	16.1	5.6	_	_	_	10.9
무응답	8.8	2.2	7.2	3.6	2.7	7.7	50.0	_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6〉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行 項目別 豫算編成·執行方式을 탈피하여 總額으로 支援하는데 대한 意見

(單位: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찬성	81.5	90.0	88.2	82.1	83.3	88.5	100.0	50.0	86.5
반대	5.9	3.7	3.9	3.6	9.7	7.7	_	25.0	5.0
기타	7.4	3.7	3.9	3.6	4.2	_	_	25.0	4.5
무응답	5.2	2.6	4.0	10.7	2.8	3.8	_	_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7〉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從事者 總數, 單純勞務者 및 社會福祉士 比率

(單位: 명,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종사자 총수	1,346	3,155	3,134	320	1,153	496	13	63	9,680
단순노무자 비율	48.0	28.6	36.4	27.2	36.8	33.9	30.8	36.5	35.1
사회복지사 비율	18.4	24.8	13.9	37.5	12.1	21.0	23.1	46.0	19.2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8〉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現行 施設運營主體 制限規定에 대한 意見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찬성	41.5	29.7	38.8	28.6	50.0	42.3	50.0	25.0	36.3
반대	38.5	53.5	52.0	50.0	40.3	42.3	_	75.0	48.3
기타	6.7	5.2	_	7.1	_	7.7	_	_	4.1
무응답	13.3	11.6	9.2	14.3	9.7	7.7	50.0	_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49〉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현행 施設設置基準에 대한 意見 및 適定 收容人員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현행 시설설치기준에 대한 의견									
찬성	42.2	56.9	50.7	48.2	40.3	42.3	100.0	50.0	50.0
반대	43.0	33.1	41.4	26.8	47.2	46.2	_	25.0	38.0
기타	14.8	10.0	7.9	25.0	12.5	11.5	_	25.0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찬성이면, 적정수용인원									
5명 미만	_	1.9	-	-	-	_	_	-	0.7
5~8명	1.5	1.9	7.2	_	_	3.8	50.0	_	2.8
9~10명	5.9	4.1	3.3	_	1.4	_	_	_	3.5
11~15명	2.2	4.1	5.3	7.1	4.2	3.8	_	25.0	4.3
16~20명	15.6	13.0	15.1	12.5	11.1	11.5	_	25.0	13.7
21~25명	6.7	8.6	8.6	7.1	5.6	_	_	_	7.4
26~30명	10.3	23.3	11.2	21.5	18.0	23.2	50.0	_	17.6
비해당	57.8	43.1	49.3	51.8	59.7	57.7	_	50.0	5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附表 1-50〉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無許可 施設을 合法的으로 許可하는데 대한 意見

(單位: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찬성	48.1	51.7	55.3	48.2	59.7	53.8	50.0	25.0	52.2
반대	33.3	33.5	35.5	30.4	26.4	34.6	_	50.0	33.0
기타	2.2	4.8	3.3	1.8	1.4	3.8	_	25.0	3.5
무응답	16.4	10.0	5.9	19.6	12.5	7.8	50.0	_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6	2	4	716

〈附表 1-51〉 社會福祉 收容施設 種別 施設長과 法人代附表理事와의 關係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친족관계가 아닌 사회복지사	45.2	36.1	32.9	37.5	16.7	34.6	100.0	25.0	35.3
친족관계가 아닌 비사회복지사	17.8	8.6	19.7	3.6	20.8	23.1	_	75.0	14.4
친족관계인 사회복지사	23.0	43.9	33.6	44.6	34.7	19.2	_	_	35.6
친족관계인 비사회복지사	7.4	6.7	7.2	5.4	13.9	7.7	_	_	7.5
무응답	6.6	4.7	6.6	8.9	13.9	15.4	_	_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5	269	152	56	72	26	2	4	716

(單位: 명, %)

· 형 태	비 율
아동복지시설수	100.0(269)
1실 평균수용인원	7
전체 보육사수	535
남자 보육사수	182
여자 보육사수	353
보육사 근무형태	
전체	100.0(229)
시간제	1.7
반일제	6.1
종일제	86.9
기타	5.3
건물구조상 소숙사 형태로의 증·개축 가능 여부	
전체	100.0(219)
가능	50.2
불가능	49.8
소숙사제도 운영의 필요 여부	
전체	100.0(241)
필요	81.3
불필요	18.7
소숙사의 원하는 1실 평균 수용인원	4

附錄 2. 社會福祉 收容施設 從事者

〈附表 2-1〉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一般特性 百分率 分布

									(阜	旦位: %)
7.11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보건	정신질환	부랑인	결핵	나장애	기타	
구분	시설	시설		(부녀)시설	시설	(아)시설	시설	인시설	시설	전체
성별										
남자	23.8	19.5	23.5	29.5	51.4	46.7	25.0	22.9	36.1	26.9
여자	73.4	76.9	73.8	69.3	46.8	50.4	75.0	72.9	59.7	70.2
무응답	2.8	3.6	2.7	1.2	1.8	2.9	-	4.2	4.2	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결혼상태										
기혼	67.7	50.5	46.5	63.9	67.0	57.9	41.7	79.2	52.8	54.7
미혼	31.9	49.1	53.3	35.3	32.6	41.8	58.3	18.8	44.4	45.0
무응답	0.4	0.4	0.2	0.8	0.4	0.3	-	2.0	2.8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										
24세 이하	8.0	20.9	19.4	6.2	9.1	10.6	8.3	8.3	22.2	16.1
25~29	11.7	19.3	24.8	17.0	18.6	16.6	8.3	8.3	22.2	19.6
$30 \sim 34$	12.9	11.5	14.1	17.0	14.2	14.3	16.7	10.4	15.3	13.2
35~39	13.3	10.4	10.8	12.4	13.3	14.6	-	6.3	11.1	11.5
40~44	12.2	8.4	7.0	11.2	12.0	13.5	25.0	8.3	11.1	9.3
45~49	9.3	7.5	5.6	8.3	7.4	7.7	20.0	12.5	8.3	7.2
50~54	10.6	5.9	5.8	5.8	8.4	4.6	8.3	16.7	2.8	6.9
55~59	10.4	6.5	6.1	7.5	7.8	8.6	-	8.3	2. 0	7.2
60~64	7.0	4.0	3.0	6.2	4.9	6.0	16.7	8.3	4.2	4.5
65세 이상	3.8	5.3	2.5	7.5	2.9	2.9	8.3	8.3	2.8	3.9
무응답	0.7	0.4	0.8	0.8	1.2	0.6	8.3	4.2	2. 0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세)	42.2	37.4	35.4	41.6	39.3	39.3	44.8	45.5	34.2	37.9
학력									9	
무학	1.4	1.5	2.0	0.4	0.8	1.4	8.3	8.3	1.4	1.6
국졸	16.5	7.9	9.8	5.8	6.6	6.6	-	37.5	8.3	9.7
중졸	14.2	8.2	9.1	8.3	11.4	9.2	_	16.7	5.6	9.8
고졸	35.7	48.2	42.0	33.2	52.1	49.9	66.7	20.8	43.1	44.3
고 대졸	28.2	30.9	33.8	44.0	25.7	30.1	8.3	14.6	34.7	31.1
대학원 이상	3.0	2.4	2.1	5.4	2.2	2.6	8.3	2.1	5.6	2.5
무응답	1.0	0.9	1.2	2.9	1.2	0.2	8.4		1.3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교										
기독교	45.8	66.4	53.1	62.2	36.9	34.1	8.3	89.6	54.2	53.9
천주교	22.7	14.3	17.9	19.5	12.4	32.7	66.7	8.3	13.9	17.4
불 교	10.9	6.2	8.8	4.6	20.7	11.5	8.3	2.1	13.9	9.7
절 표 천도교	0.6	0.5	0.6	0.8	0.7	0.3	8.3		-	0.6
기타	4.1	1.4	0.5	1.7	2.4	3.7	-	_	_	1.7
없음	14.3	10.5	18.2	10.8	26.7	17.2	_	_	15.3	15.7
무응답	1.6	0.7	0.9	0.4	0.2	0.5	8.4	_	2.7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_,,,,	• • •				• • •	

									\ 1	- ·· /0/
 구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모자보건 (부녀)시설	정신질환 시설	부랑인 (아)시설	결핵 시설	나장애 인시설	기타 시설	 전체
	기열	71倍	一一一	(十月)八百	기열	(%)/1/2	기열	한기결	기열	
부양가족수										
0(없음)	36.9	53.6	52.1	34.4	30.4	38.1	58.3	20.8	40.3	46.3
1명	10.5	10.3	10.2	14.1	8.5	10.0	25.0	20.8	6.9	10.2
2명	15.4	12.2	13.5	16.6	18.0	14.0	16.7	39.6	9.7	14.2
3명	17.7	12.3	12.3	16.2	19.8	19.2	_	12.5	23.6	14.5
4명	11.7	6.5	6.3	10.8	14.6	8.6	_	2.1	9.7	8.4
5명	4.8	2.8	3.4	5.0	6.7	5.2	_	4.2	2.8	3.9
6명 이상	3.0	2.3	2.2	2.9	2.0	4.9	_	_	7.0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위치										
시설내거주	43.4	70.2	52.5	39.0	36.8	44.7	75.0	62.5	38.9	54.2
시설외거주	55.4	29.3	46.9	59.8	63.2	55.3	16.7	35.4	61.1	45.3
무응답	1.2	0.5	0.6	1.2	_	_	8.3	2.1	_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주형태										
자가	39.4	21.0	31.8	39.4	41.3	40.4	33.3	64.6	33.3	31.4
전세집(전체)	10.6	5.9	9.3	11.2	11.7	11.7	_	12.5	13.9	8.9
전세방	8.9	4.3	6.8	8.3	11.4	5.7	_		12.5	6.9
월세집(전체)	0.8	0.5	1.2	0.4	1.3	1.7	_	2.1		0.9
월세방	2.5	0.5	2.3	1.7	2.1	2.6	_	_	5.6	1.8
(영구)임대아파트	2.0	1.5	1.6	2.1	1.9	2.3	8.3	_	1.4	1.7
원사(관사)	28.8	57.9	36.0	33.6	23.1	32.1	58.4	18.8	18.1	39.9
기타	3.1	4.0	4.7	2.1	5.1	1.7	-	2.0	15.2	4.2
무응답	3.9	4.4	6.3	1.2	2.1	1.8	_	_	-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1)}$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1)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2〉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專攻 百分率 分布 및 資格證(免許證) 數

(單位: 명, %)

 구 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모자보건 (부녀)시설	정신질환 시설	부랑인 (아)시설	결핵 시설	나장애 인시설	기타 시설	전체
전공학과										
사회복지(사업)학	7.6	7.2	6.7	23.7	4.0	12.0	_	4.2	9.7	7.4
심리학	0.3	0.4	0.4	0.4	0.6	1.7	_	2.1	1.4	0.5
- 특수교육학	0.7	0.3	0.8	0.8	0.2	0.3	8.3		_	0.5
유아교육학	0.8	6.4	2.3	1.7	0.8	1.7	_	_	1.4	3.2
간호학	4.9	2.0	2.2	2.5	5.1	3.2	8.3	6.3	_	3.0
물리치료학	2.8	0.2	3.8		0.3	0.3	8.3	-	_	1.8
기타	14.8	17.4	18.6	22.8	17.0	15.2	-	4.2	29.2	17.4
해당없음 ¹⁾	68.1	66.1	65.2	48.1	72.0	65.6	75.1	83.2	58.3	6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격증(면허증)수										
사회복지사 1급	89	328	141	59	46	48	1	1	11	724
사회복지사 2급	83	135	97	29	37	18	0	0	0	399
사회복지사 3급	48	108	112	21	30	18	0	0	3	340
특수교육교사	7	14	22	6	3	1	0	0	0	53
유아교사	10	148	56	5	9	8	0	0	1	237
간호사	64	37	46	6	47	9	1	3	0	213
물리치료사	33	2	98	0	6	1	1	1	0	142
간호조무사	103	138	117	7	170	34	1	16	3	589
영양사	16	28	98	0	16	13	0	1	3	175
교육교사	10	111	65	3	5	4	2	0	1	201
보육사	10	99	55	1	1	9	0	1	0	176
$N^{2)}$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1) 고졸이하

2)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3〉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在 職位 및 職種 百分率 分布

(單位:%)

직위직종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보건	정신질환	부랑인	결핵	나장애	기타	전체
ৰ্মাৰ্ভ	시설	시설	시설	(부녀)시설	시설	(아)시설	시설	인시설	시설	선세
시설장	8.7	7.8	3.6	17.8	5.1	6.3	25.0	4.2	2.8	6.5
총무	9.7	8.7	5.2	18.3	6.7	7.4	_	4.2	4.2	7.6
생활지도원	5.8	8.4	6.8	21.2	7.0	26.6	_	6.3	1.4	8.4
의사	1.2	_	0.7	-	1.5	_	_	2.1	_	0.6
간호사	6.5	1.8	2.4	2.5	5.1	2.6	8.3	6.3	-	3.2
영양사	0.8	0.7	3.6	_	1.5	2.0	_	2.1	2.8	1.8
보조원	30.2	32.7	46.3	2.5	37.0	25.5	16.7	33.3	23.6	35.9
물리치료사	2.5	0.1	4.0	_	0.2	0.3	_	2.1	_	1.7
직업훈련교사	0.1	1.1	3.4	13.3	0.4	1.7	_	2.1	2.8	2.0
간호조무사	7.0	3.5	2.6	2.1	15.7	6.0	16.7	10.4	2.8	5.3
취사부	11.6	7.9	4.7	2.9	6.0	4.0	8.3	10.4	4.2	6.9
세탁부	4.1	2.7	3.2	_	1.3	0.9	-	4.2	_	2.7
기타	8.7	20.2	10.8	18.7	9.7	15.5	8.3	10.4	55.4	14.2
무응답	3.1	4.4	2.7	0.7	2.8	1.2	16.7	1.9	_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4〉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職場 採用 方法, 現施設 從事期間 및 社會福祉에 從事한 總期間 百分率 分布

									(里)	区: %)
 구분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	부랑인	결핵	나장애	기타	 전체
一	시설	시설	시설	(부녀)시설	시설	(아)시설	시설	인시설	시설	건계
채용방법										
공개채용	10.7	9.6	13.0	4.1	11.5	7.4	8.3	8.3	15.3	10.9
학교장 및 기관장 추천	6.9	7.9	8.4	16.2	5.7	8.3	_	4.2	9.7	7.9
연고 및 소개	59.4	62.0	60.0	64.3	70.1	62.5	33.3	77.1	47.2	61.9
기타	20.1	19.0	17.0	14.5	11.3	20.3	41.7	10.4	25.0	17.5
무응답	2.9	1.5	1.6	0.9	1.4	1.5	16.7	_	2.8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시설 종사기간										
6개월 미만	12.7	12.6	14.4	10.4	13.5	9.2	33.3	43.2	23.6	13.2
6개월~1년 미만	14.9	8.4	13.4	7.1	9.9	7.7	25.0	10.4	12.5	11.1
1∼2년 미만	16.1	13.9	16.3	17.0	18.5	11.5	16.7	4.2	18.1	15.5
2~3년 미만	12.5	9.9	12.3	14.5	10.4	10.0	8.3	12.5	9.7	11.3
3∼10년 미만	30.9	27.7	32.9	29.9	32.4	39.8	16.7	4.7	26.4	31.1
10년 이상	12.7	27.3	10.4	20.7	15.0	21.8	-	25.0	9.7	17.6
무응답	0.2	0.2	0.3	0.4	0.3	_	_	_	_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총기	간									
1년 미만	24.7	16.8	21.5	13.3	19.5	12.9	41.7	10.4	33.3	19.7
1∼3년 미만	22.1	22.4	27.3	22.4	26.2	17.5	16.7	8.3	25.0	24.1
3∼5년 미만	15.9	14.1	18.0	17.0	14.0	15.5	16.7	16.7	13.9	15.8
5~10년 미만	20.5	17.1	19.6	19.5	21.1	29.2	16.7	33.3	15.3	19.6
10~20년 미만	11.1	16.5	8.8	14.1	13.3	18.1	8.2	20.8	6.9	12.8
20년 이상	4.4	12.4	4.1	12.9	4.8	5.7	_	10.5	_	7.2
무응답	1.3	0.7	0.7	0.8	1.1	1.1	_	_	5.6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1)}$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1)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5〉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施設에 勤務하기 以前 다른 施設에 勤務한 經驗 및 다른 施設로 옮긴 理由 百分率 分布

(單位:%)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보건 정신질환 부랑인 결핵 나장애 기타 구분 전체 시설 시설 시설 (부녀)시설 시설 (아)시설 시설 인시설 시설 타시설 근무경험 1개시설 12.3 13.9 12.3 16.7 13.7 13.4 21.6 14.9 16.7 19.4 2개시설 5.7 4.5 4.4 6.6 6.2 5.7 33.3 1.4 4.9 2.1 3개시설 1.9 1.1 1.6 2.5 2.2 2.6 1.6 없음 73.7 74.4 75.7 68.0 72.2 69.1 50.0 79.2 73.6 74.0 무응답 6.4 6.6 4.4 1.3 7.1 7.7 2.0 5.6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1)}$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타시설로 옮긴 이유 보수가 적어서 7.7 2.7 8.1 8.4 7.1 11.0 14.8 16.7 적성이 안맞아서 5.0 6.3 9.0 8.1 8.5 6.2 20.0 7.4 근무여건이 힘들어서 22.2 12.6 17.8 20.8 6.8 16.5 12.3 20.0 17.0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10.1 7.1 12.2 22.2 8.2 8.0 9.0 3.7 13.3 직원간의 불화 1.7 2.0 2.9 2.1 1.0 1.2 11.1 6.7 기타 45.4 43.0 64.9 33.3 44.9 43.1 43.5 51.9 83.3 40.0 무응답 16.8 9.5 15.7 5.3 10.5 9.9 11.2 1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2)}$ 238 490 74 200 6 9 1,622 509 81 15

〈附表 2-6〉 從事者의 現職位 및 職種別 認定받지 못하고 있는 類似經歷 年數

(單位: 년)

직위직종	타시설 근무경력	군 경력	공무원 경력	기타 경력	계	$N^{1)}$
시설장	2.25	0.03	0.65	1.00	3.93	160
총무	2.33	0.21	0.35	0.55	3.44	148
생활지도원	1.54	0.04	0.43	0.24	2.25	182
의사	_	_	_	_	_	1
간호사	1.20	_	0.13	0.42	1.75	85
영양사	0.81	_	0.18	0.57	1.56	20
보조원	1.26	0.05	0.13	0.37	1.81	449
물리치료사	1.39	0.06	0.09	0.60	2.14	39
직업훈련교사	0.73	_	_	_	0.73	27
간호조무사	1.52	0.06	0.07	0.67	2.32	113
취사부	0.47	_	_	0.08	0.55	71
세탁부	1.57	_	_	0.29	1.86	21
기타	0.92	0.16	0.22	0.33	1.63	244
무응답	0.50	0.10	0.08	_	0.68	62
전체	1.38	0.07	0.23	0.43	2.11	1,622

註: 1) 현시설에 근무하기 이전 다른 시설에 근무 경험이 있는 종사자

註: 1)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²⁾ 다른 시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만 해당됨.

〈附表 2-7〉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1日 平均 勤務時間 百分率 分布

근무시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모자보건 (부녀)시설	정신질환 시설	부랑인 (아)시설	결핵 시설	나장애인 시설	기타 시설	전체
8시간	45.4	13.5	31.0	53.9	38.8	43.6	33.3	72.9	45.8	30.1
12시간	25.9	18.0	21.3	17.0	32.7	27.5	33.3	16.7	13.9	22.4
16시간	4.7	11.9	5.4	5.4	5.8	4.0	25.0	2.1	4.2	7.4
16시간 이상	4.8	12.3	7.9	6.2	4.1	2.9	_	_	1.4	8.0
기타	17.7	40.6	31.3	16.6	15.9	20.3	8.4	6.3	31.9	29.3
무응답	1.5	3.7	3.1	0.9	2.7	1.7	_	2.0	2.8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8〉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社會福祉施設에 從事하게 된 動機 百分率 分布

(單位:%)

									` '	
종사동기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모자보건 (부녀)시설	정신질환 시설	부랑인 (아)시설	결핵 시설	나장애 인시설	기타 시설	<u>전체</u>
부모친지로 부터 물러받아서	4.3	4.5	1.6	9.1	3.0	2.6	_	4.2	2.8	3.4
취업목적으로	28.9	20.9	26.4	18.3	39.0	31.8	8.3	16.7	26.4	26.4
전문지식 활용	7.6	5.6	9.5	14.5	7.1	7.4	_	2.1	12.5	7.7
사회복지시설에 뜻이 있어서	38.7	53.6	46.8	50.6	38.1	45.8	83.3	52.1	37.5	46.8
기타	17.9	13.9	14.0	6.6	11.4	12.0	8.4	22.9	20.8	14.1
무응답	2.6	1.5	1.7	0.9	1.4	0.4	_	2.0	_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9〉 現職位 및 職種別 社會福祉施設에 從事하게 된 動機 百分率 分布

								() ()
직위직종	부모친지로부터 물려 받아서	취업 목적	전문지식 활용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어서	기 타	무응답	계	N
시설장	22.7	2.7	3.7	59.2	11.6	0.1	100.0	519
총무	9.1	13.0	5.0	59.0	12.8	1.1	100.0	615
생활지도원	2.5	14.1	14.6	56.6	11.3	0.9	100.0	679
의사	2.1	6.3	41.7	39.6	10.3	_	100.0	48
간호사	0.8	22.7	24.3	33.7	16.5	2.0	100.0	255
영양사	0.7	36.3	32.9	22.6	5.5	2.0	100.0	146
보조원	1.5	28.5	2.8	49.4	16.3	1.5	100.0	2,892
물리치료사	-	20.7	40.7	31.4	7.2	-	100.0	140
직업훈련교사	0.6	31.7	26.2	35.4	4.9	1.2	100.0	164
간호조무사	0.5	34.7	10.5	41.2	12.1	1.0	100.0	430
취사부	1.1	51.8	1.1	26.5	15.8	3.7	100.0	558
세탁부	0.9	46.8	0.5	32.7	14.1	5.0	100.0	220
기 타	1.8	27.6	8.2	46.3	14.6	1.5	100.0	1,150
무응답	0.7	23.6	5.8	41.8	11.6	16.5	100.0	292
전체	3.4	26.4	7.7	46.6	14.0	2.1	100.0	8,108

〈附表 2-10〉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職場의 滿足度 및 不滿足 理由 百分率 分布

 구분	노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시설	모자보건 (부녀)시설	정신질환 시설	부랑인 (아)시설	결핵 시설	나장애 인시설	기타 시설	<u>전체</u>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8.7	9.9	4.7	5.8	5.7	5.7	-	_	18.1	7.3
만족한다	32.6	34.3	28.7	35.3	25.5	21.2	25.0	20.8	19.4	30.4
보통이다	42.2	41.1	45.1	37.8	44.6	36.7	50.0	62.5	45.8	42.9
불만이다	13.7	12.5	18.3	18.7	21.5	29.8	25.0	16.7	11.1	16.6
매우불만이다	1.8	1.5	2.5	1.7	2.2	4.6	-	-	1.4	2.1
무응답	1.0	0.7	0.7	0.7	0.5	2.0	-	_	4.2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1)}$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불만 이유										
낮은 급여수준	65.1	48.9	46.5	75.5	59.6	54.2	33.3	50.0	33.3	52.9
열악한 근무환경	11.3	19.1	21.3	10.2	23.5	22.5	33.3	12.5	11.1	19.5
과중한 업무	8.6	12.4	14.0	_	4.8	12.5	_	12.5	_	10.9
장래성이 없어서	8.1	10.2	10.3	14.3	3.9	5.8	33.4	_	55.6	9.1
사회인식이 나빠서	-	1.7	1.7	_	4.3	1.7	_	25.0	_	1.9
기 타	3.2	6.4	4.3	_	2.6	0.8	_	_	_	3.9
무응답	3.7	1.3	1.9	_	1.3	2.5	_	_	_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2)}$	186	362	535	49	230	120	3	8	9	1,502

註: 1)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11〉 現職位 및 職種別 現職場에 대한 滿足度

직위직종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만	매우불만	무응답	계	N
시설장	26.0	41.8	22.5	7.3	1.0	1.4	100.0	519
총 무	7.6	37.2	39.8	13.8	0.8	0.8	100.0	615
생활지도원	6.5	31.4	39.3	19.1	2.5	1.2	100.0	679
의 사	10.4	45.8	41.7	2.1	_	_	100.0	48
간호사	5.5	25.9	47.8	19.2	1.6	_	100.0	255
영양사	2.7	26.0	42.5	24.0	4.1	0.7	100.0	146
보조원	7.1	28.7	44.6	16.2	2.7	0.7	100.0	2,892
물리치료사	2.1	23.6	49.3	22.1	2.1	0.8	100.0	140
직업훈련교사	4.9	25.0	43.3	25.0	1.8	_	100.0	164
간호조무사	2.3	26.0	49.5	20.9	0.5	0.8	100.0	430
취사부	3.4	30.8	45.3	17.7	2.0	0.8	100.0	558
세탁부	2.7	32.3	45.0	17.3	2.3	0.4	100.0	220
기 타	5.9	29.4	44.3	17.0	2.3	1.1	100.0	1,150
무응답	5.8	25.3	40.8	13.4	2.1	12.6	100.0	292
계	7.2	30.3	42.6	16.5	2.1	1.3	100.0	8,108

²⁾ 현직장의 만족도에서 "불만이다,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종사자만 해당됨.

〈附表 2-12〉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現職場에서 계속 從事할 생각이 있는 從事者 百分率 分布

		.1 =	المالات الح		-1 .1-1-1	U -1 41	-1.×11	. l-11al	_1_1	
현직장에서 계속 종사여부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보건	정신질환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기타	전체
연작성에서 계속 등사역구	시설	시설	시설	(부녀)시설	시설	(아)시설	시설	시설	시설	겐세
과 소계 가 시크 그 기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	63.0	64.0	57.8	60.2	55.3	47.0	50.0	83.3	54.2	60.0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고 싶다	4.6	3.3	5.8	5.0	3.6	4.6	8.3	_	9.7	4.5
그만두고 싶다	5.5	8.5	9.4	7.1	9.8	11.2	_	2.1	9.7	8.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6.5	15.5	17.6	14.1	22.5	27.8	16.7	12.5	11.1	17.6
기타	4.9	5.8	6.4	11.2	5.0	4.9	16.7	2.1	9.7	5.9
무응답	5.5	2.9	3.0	2.4	3.8	4.5	8.3	_	5.6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13〉 從事者의 現職位 및 職種別 平均 給與額 및 希望給與額

(單位: 만원)

직위직종 -		월평균-	급여액 ¹⁾		- 희망급여액	$N^{2)}$
식귀식당 -	소계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 의당뉴어액	IN
시설장	140.1	85.7	36.1	18.3	152.3	453
총무	116.5	66.9	32.0	17.6	130.9	572
생활지도원	88.2	50.1	22.5	15.6	99.6	597
의사	142.6	99.2	8.1	35.3	125.4	42
간호사	92.3	52.1	24.8	15.4	96.6	231
영양사	85.9	50.1	22.6	13.2	92.4	123
보조원	82.4	46.0	20.2	16.2	93.8	2,638
물리치료사	89.1	50.8	22.8	15.5	110.8	131
직업훈련교사	96.0	55.2	24.0	16.8	111.1	145
간호조무사	89.2	50.9	22.9	15.4	96.0	393
취사부	75.7	40.9	19.3	15.5	86.5	486
세탁부	69.2	39.2	16.5	13.5	80.8	196
기타	81.0	46.0	20.1	14.9	92.8	979

註: 1) 월평균 급여액 = 기본급 + 상여금 + 제수당

〈附表 2-14〉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月給與額 대비 年間賞與金 比率 百分率 分布 및 諸手當 受惠率

(單位: %)

 구 분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보건	정신질환	부랑인	결핵	나장애	기타	 전체
1 U	시설	시설	시설	(부녀)시설	시설	(아)시설	시설	인시설	시설	선세
연간상여금비율										
400% 미만	4.7	4.6	5.0	3.7	6.0	4.9	8.3	_	9.7	4.9
400%	39.0	32.8	29.6	51.5	32.0	32.1	8.3	66.7	6.9	33.0
400% 이상	45.3	57.5	57.8	41.9	54.6	57.3	41.7	29.2	72.2	54.9
무응답	11.0	5.1	7.6	2.9	7.4	5.7	41.7	4.1	11.2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수당 수혜율										
시간외근무수당	11.9	7.3	8.3	3.3	8.0	12.0	_	8.3	13.9	8.5
일숙직수당	8.7	3.4	10.1	10.8	29.8	28.7	_	2.1	11.1	10.9
복지수당	19.8	2.2	19.2	25.3	26.0	20.3	16.7	50.0	38.8	21.5
효도휴가비	5.8	14.2	13.1	6.6	23.0	10.6	8.3	_	9.7	13.1
체력단련비	9.9	4.5	6.4	5.0	1.9	0.3	8.3	2.1	20.8	5.6
교통수당	1.8	1.6	2.0	4.1	3.8	0.6	_	4.2	18.1	2.2
기타수당	25.0	27.3	23.6	27.0	30.3	20.9	25.0	2.1	41.7	25.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註: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²⁾ 무응답자는 제외됨.

〈附表 2-15〉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福祉制度 受惠率

시설별	퇴직금제도	의료보험	학비보조 제도	주택보조	호봉제도	N
노인시설	87.4	86.2	8.4	4.6	76.4	1,193
아동시설	94.4	95.1	5.2	4.3	88.6	2,584
장애인시설	92.5	93.1	5.3	3.3	86.0	2,571
모자(부녀)	91.3	91.7	5.9	3.3	84.2	241
정신질환시설	92.2	93.3	5.3	4.2	84.0	971
부랑인(아)시설	91.4	92.6	3.4	1.7	84.5	349
결핵시설	58.3	66.6	_	8.3	41.7	12
나장애인시설	91.7	85.4	10.4	2.1	27.1	48
기타시설	81.9	84.7	20.8	4.2	76.4	72
전체	92.1	92.5	5.8	3.9	84.5	8,041

註: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附表 2-16〉 施設種類別 從事者의 停年 年齡 有無 百分率 分布 및 平均 停年 年齡

									(丰	业.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보건	정신질환	부랑인	결핵	나장애	기타	 전체
丁 ゼ	시설	시설	시설	(부녀)시설	시설	(아)시설	시설	인시설	시설	신세
정년연령										
있다	25.7	18.5	23.8	21.6	38.2	36.4	25.0	31.3	37.5	24.7
없다	62.9	71.3	62.0	72.6	50.4	54.4	66.7	68.7	52.8	63.7
무응답	11.4	10.2	14.2	5.8	11.4	9.2	8.3	_	9.7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1)}$	1,193	2,584	2,571	241	971	349	12	48	72	8,041
직위 및 직종별평균	균 정년연령	²⁾								
시설장	62.1	61.3	63.5	60.0	62.1	65.6	60.0	_	60.0	61.7
총 무	58.3	59.5	61.7	61.8	56.0	57.2	_	55.0	61.0	59.1
생활지도원	57.0	51.5	57.9	44.7	54.3	60.1	_	65.0	65.0	55.5
의 사	59.3	_	61.0	_	66.0	_	_	65.0	_	61.2
간호사	44.6	58.6	58.5	57.5	46.7	58.8	-	50.0	-	51.5
영양사	59.8	52.8	55.1	_	56.7	60.0	_	70.0	60.0	56.0
보조원	58.0	57.3	55.6	58.0	57.7	55.9	60.0	70.0	63.3	56.8
물리치료사	49.2	_	53.0	_	-	_	-	_	_	50.3
직업훈련교사	_	48.8	56.4	50.0	62.5	60.0	-	_	40.0	54.6
간호조무사	55.0	51.4	55.2	55.0	57.3	60.0	60.0	60.0	55.0	56.1
취사부	57.3	51.4	54.0	61.3	58.9	59.0	-	_	_	57.6
세탁부	52.2	52.0	61.4	_	60.3	_	-	_	_	55.1
기 타	58.3	51.8	55.4	62.6	56,9	50.1	_	65.0	49.2	54.3
N	307	477	611	52	371	127	3	15	27	1,990

註: 1)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에 무응답한 종사자 67명 제외됨.

^{2) &}quot;정년연령이 있다"라고 응답한 종사원에 한함.

〈附表 2-17〉 現職位 및 職種別 지난 一年동안 敎育訓練 받은 經驗 百分率 分布

직위직종	있다	없다	무응답	계	N
시설장	54.7	42.0	3.3	100.0	519
총무	51.2	46.7	2.1	100.0	615
생활지도원	46.7	50.2	3.1	100.0	679
의사	10.4	85.4	4.2	100.0	48
간호사	45.5	52.2	2.3	100.0	255
영양사	43.8	50.7	5.5	100.0	146
보조원	28.8	67.0	4.2	100.0	2,892
물리치료사	52.1	41.4	6.5	100.0	140
직업훈련교사	29.3	67.1	3.6	100.0	164
간호조무사	37.4	60.2	2.4	100.0	430
취사부	16.1	78.1	5.8	100.0	558
세탁부	14.1	80.9	5.0	100.0	220
기타	33.9	60.8	5.3	100.0	1,150
무응답	27.7	51.0	21.3	100.0	292
전체	34.6	60.7	4.7	100.0	8,108

〈附表 2-18〉 現職位 및 職種別 지난 一年동안 敎育訓練 받은자의 도움정도 百分率 分布

(單位:%)

직위직종	많은도움	조금도움	별로도움되지 않음	전혀도움되지 않음	무응답	계	N
시설장	45.8	44.4	5.6	_	4.2	100.0	284
총무	44.2	44.1	9.2	1.3	1.2	100.0	315
생활지도원	41.6	43.2	10.1	1.6	3.5	100.0	317
의사	60.0	20.0	_	_	20.0	100.0	5
간호사	31.9	53.4	9.5	2.6	2.6	100.0	116
영양사	35.9	43.8	12.5	3.1	4.7	100.0	64
보조원	42.1	45.0	7.4	1.8	3.7	100.0	834
물리치료사	46.6	41.1	4.1	2.7	5.5	100.0	73
직업훈련교사	37.5	37.5	18.8	-	6.2	100.0	48
간호조무사	38.5	42.9	13.7	1.9	3.0	100.0	161
취사부	41.1	42.2	6.7	3.3	6.7	100.0	90
세탁부	32.3	41.9	6.5	3.2	16.1	100.0	31
기타	34.9	46.4	14.9	0.8	3.0	100.0	390
무응답	33.3	51.9	9.9	1.2	3.7	100.0	81
전체	40.3	44.8	9.5	1.5	3.9	100.0	2,809

註: 지난 1년동안 교육훈련 받지 않은 종사자는 제외시켰음.

〈附表 2-19〉 現職位 및 職種別 지난 一年동안 敎育訓練 받지 못한 理由 百分率 分布

직위직종	과중한업무	시설재정상 어려움	정보부재	자격미비	기타	무응답	계	N
시설장	12.8	8.3	14.2	2.3	28.9	33.5	100.0	218
총무	22.3	7.7	8.4	5.6	25.4	30.6	100.0	287
생활지도원	10.0	11.7	13.8	7.3	29.6	27.6	100.0	341
의사	7.3	4.9	4.9	2.4	39.0	41.5	100.0	41
간호사	9.0	9.8	23.3	2.3	27.1	28.5	100.0	133
영양사	8.1	6.8	12.2	4.1	29.7	39.1	100.0	74
보조원	9.2	8.5	6.8	13.1	25.0	37.4	100.0	1,937
물리치료사	5.2	17.2	8.6	3.4	31.0	34.6	100.0	58
직업훈련교사	10.0	10.0	14.5	6.4	22.7	36.4	100.0	110
간호조무사	5.0	6.9	8.5	9.7	27.8	42.1	100.0	259
취사부	8.5	2.8	5.7	17.2	25.5	40.3	100.0	436
세탁부	6.2	9.0	2.2	24.7	23.0	34.9	100.0	178
기 타	9.2	7.7	9.2	11.4	28.9	33.6	100.0	699
무응답	9.4	6.0	8.7	10.7	18.8	46.4	100.0	149
전체	9.7	8.0	8.6	11.3	26.3	36.1	100.0	4,920
		· · · · · · · · · · · · · · · · · · ·						

註: 지난 1년동안 교육훈련 받은 종사자는 제외시켰음.

附錄 3. 無許可施設

〈附表 3-1〉 地域 및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分布

(單位: 개소)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서울	10	12	29	1	0	9	1	0	62
부산	1	0	3	0	0	2	0	0	6
인천	2	3	6	0	1	2	0	1	15
광주	2	2	12	0	0	1	0	0	17
대전	0	1	0	0	0	0	0	0	1
경기	28	8	49	2	1	6	2	0	96
강원	12	6	8	0	0	3	1	0	30
충북	3	0	3	0	0	0	0	0	6
충남	5	0	7	0	2	1	0	0	15
전북	3	1	4	0	0	0	0	0	8
전남	2	2	2	0	0	2	0	0	8
경북	8	2	2	0	1	1	0	0	14
경남	0	0	3	0	0	0	0	0	3
제주	0	0	2	0	0	0	0	0	2
계	76	37	130	3	5	27	4	1	283

註: 1) 소재지 불명의 1개시설은 제외함

〈附表 3-2〉 設立年度 및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分布

(單位: 개소)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무응답	4	3	6	1	0	3	1	0	18
1960년 이전	1	2	2	0	0	0	1	0	6
1970년대	4	1	6	0	1	1	1	1	15
1980년대	22	11	49	1	3	9	1	0	96
1990년 이후	45	21	67	1	1	14	0	0	149
계	76	38	130	3	5	27	4	1	284

〈附表 3-3〉 宗教 및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分布

(單位: 개소)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무응답	2	1	3	0	0	1	0	0	7
종교시설	67	35	113	2	5	22	3	0	247
(기독교)	31	9	69	0	4	13	1	0	127
(천주교)	31	20	38	2	0	8	2	0	101
(불교)	3	4	1	0	0	1	0	0	9
(기타)	2	2	5	0	1	0	0	0	10
비종교시설	7	2	14	1	0	4	1	1	30
계	76	38	130	3	5	27	4	1	284

〈附表 3-4〉 施設 種別 1個 無許可 施設當 平均定員 對 平均現員

(單位: 개소, 명,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시설전체
1개 시설당 평균정원	16	11	15	7	5	29	31	0	16
1개 시설당 평균현원	18	18	20	7	57	33	28	30	22
평균수용률	112.5	163.6	133.3	100.0	1,140.0	113.8	90.3	3,000.0	137.5
총수용인원	1,354	675	2,696	21	286	891	107	30	6,060
N	76	38	130	3	5	27	4	1	284

〈附表 3-5〉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收容人員規模

(單位: 개소)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u>계</u>
무응답	0	1	0	0	0	0	0	0	1
10인 미만	33	10	29	2	1	3	1	0	79
10~19인	18	15	47	1	2	7	0	0	90
20~29인	13	9	28	0	1	6	1	0	58
30~39인	6	0	11	0	0	3	1	1	22
$40 \sim 49$	2	2	9	0	0	3	1	0	17
50~99인	4	0	6	0	0	4	0	0	14
100인 이상	0	1	0	0	1	1	0	0	3
N	76	38	130	3	5	27	4	1	284

〈附表 3-6〉 無許可施設 宗教別 收容人員規模

(單位: 개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
10인 미만	22	35	3	2	14
10~19인	42	36	3	4	4
20~29인	30	19	0	2	6
30~39인	16	3	0	1	2
$40 \sim 49$	12	2	0	1	2
50~99인	4	6	1	0	2
100인 이상	1	0	2	0	0
N	127	101	9	10	30

註: 수용인원에 무응답한 7case는 제외시켰음.

〈附表 3-7〉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入所者의 入所經路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행정관서 의뢰	8.5	15.0	6.3	0.0	0.0	4.3	4.7	0.0	7.1
경찰관서 의뢰	1.2	0.3	1.2	8.3	0.0	3.4	2.3	0.0	1.4
병원에서 후송	1.2	0.6	3.2	8.3	2.0	10.4	46.5	0.0	4.2
타시설 전원	2.3	4.5	4.1	0.0	11.2	6.9	16.3	0.0	4.6
연고자 의뢰	41.5	39.4	42.5	0.0	73.1	23.9	9.3	0.0	39.6
자진입소	30.2	11.1	22.9	83.4	0.4	31.8	17.4	100.0	24.2
기타	15.1	29.1	19.8	0.0	13.3	19.3	3.5	0.0	1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28	639	2,468	24	249	865	86	30	5,689

〈附表 3-8〉 無許可施設 宗教別 入所者의 入所經路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비종교	전체
행정관서 의뢰	4.5	5.5	11.6	2.0	2.6	7.2
경찰관서 의뢰	2.2	0.1	1.5	1.5	1.4	1.4
병원에서 후송	4.8	3.9	0.0	0.5	7.6	4.3
타시설 전원	4.3	5.8	5.9	4.1	2.6	4.7
연고자 의뢰	39.8	46.2	28.5	41.6	19.9	39.2
자진입소	24.8	18.4	19.0	25.9	41.6	24.1
기타	19.6	20.1	33.5	24.4	24.3	1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1}	2,456	1,628	337	197	502	5,120

註: 1) 종교에 무응답한 입소자 569명은 제외하였음.

〈附表 3-9〉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退所者의 退所理由

(單位: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u></u> 취업	8.7	4.1	9.8	40.0	0.0	25.8	17.4	_	13.6
연고자인계	19.8	63.9	34.1	40.0	97.9	17.9	4.3	_	33.1
타시설전원	5.0	7.5	9.8	0.0	2.1	2.5	4.3	_	5.8
무단퇴소	11.6	15.6	8.1	20.0	0.0	40.0	32.6	_	19.5
입양.위탁	1.2	0.0	3.2	0.0	0.0	0.2	0.0	_	1.2
사망	51.2	5.4	17.9	0.0	0.0	7.7	30.4	_	18.2
기타	2.5	3.5	17.1	0.0	0.0	5.9	11.0	_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퇴소율	18.2	23.0	19.0	20.8	39.0	51.1	53.5	0	25.5
N	242	147	469	5	97	442	46	0	1,448

〈附表 3-10〉 無許可施設 宗教別 退所者의 退所理由

(單位:%)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비종교 취업 15.1 16.8 1.7 2.2 11.1 연고자인계 32.7 22.5 64.4 58.9 21.0 타시설전원 5.0 9.8 3.4 3.3 1.2 무단퇴소 22.1 15.9 5.1 18.9 21.0 입양.위탁 1.9 0.3 0.0 0.0 1.2 사망 12.9 27.6 25.4 14.4 34.6 기타 10.3 7.1 0.0 2.3 9.9 계 100.0 100.0 100.0 100.0 퇴소율 35.8 19.3 17.5 45.7 16.1							
연고자인계 32.7 22.5 64.4 58.9 21.0 타시설전원 5.0 9.8 3.4 3.3 1.2 무단퇴소 22.1 15.9 5.1 18.9 21.0 입양.위탁 1.9 0.3 0.0 0.0 1.2 사망 12.9 27.6 25.4 14.4 34.6 기타 10.3 7.1 0.0 2.3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퇴소율 35.8 19.3 17.5 45.7 16.1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비종교	계
타시설전원 5.0 9.8 3.4 3.3 1.2 무단퇴소 22.1 15.9 5.1 18.9 21.0 입양.위탁 1.9 0.3 0.0 0.0 1.2 사망 12.9 27.6 25.4 14.4 34.6 기타 10.3 7.1 0.0 2.3 9.9 계 100.0 100.0 100.0 100.0	취업	15.1	16.8	1.7	2.2	11.1	13.9
무단퇴소 22.1 15.9 5.1 18.9 21.0 입양.위탁 1.9 0.3 0.0 0.0 1.2 사망 12.9 27.6 25.4 14.4 34.6 기타 10.3 7.1 0.0 2.3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고자인계	32.7	22.5	64.4	58.9	21.0	32.8
입양.위탁 1.9 0.3 0.0 0.0 1.2 사망 12.9 27.6 25.4 14.4 34.6 기타 10.3 7.1 0.0 2.3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타시설전원	5.0	9.8	3.4	3.3	1.2	5.7
사망 12.9 27.6 25.4 14.4 34.6 기타 10.3 7.1 0.0 2.3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퇴소율 35.8 19.3 17.5 45.7 16.1	무단퇴소	22.1	15.9	5.1	18.9	21.0	19.8
기타 10.3 7.1 0.0 2.3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퇴소율 35.8 19.3 17.5 45.7 16.1	입양.위탁	1.9	0.3	0.0	0.0	1.2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퇴소율 35.8 19.3 17.5 45.7 16.1	사망	12.9	27.6	25.4	14.4	34.6	18.0
퇴소율 35.8 19.3 17.5 45.7 16.1	기타	10.3	7.1	0.0	2.3	9.9	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77 315 59 90 81	퇴소율	35.8	19.3	17.5	45.7	16.1	25.5
	N	877	315	59	90	81	1,422

註: 종교에 무응답한 퇴소자 26명은 제외하였음.

〈附表 3-11〉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從事者 現況

(單位: 명, %)

	Ž	· · · · · · · · · · · · · ·		종사자 1인당	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수	'95년도	드증감
	계	남	여	입소자수	(소지자수/전체종사사)	퇴직자수(비율)	충원자(비율)
노인	231	68	163	5.7	8(3.5)	17(7.4)	18(7.8)
아동	106	31	75	6.0	9(8.5)	12(11.3)	9(8.4)
장애인	464	170	294	5.3	27(5.8)	51(11.0)	50(10.8)
모자·부녀	6	0	6	4.0	0(0.0)	0(0.0)	0(0.0)
정신요양	29	15	14	8.6	0(0.0)	0(0.0)	1(3.4)
부랑인	83	52	31	10.4	1(1.2)	9(10.8)	14(16.9)
결핵	6	2	4	14.3	0(0.0)	0(0.0)	0(0.0)
나장애인	2	0	2	15.0	0(0.0)	0(0.0)	0(0.0)
전체	100.0	36.5	63.5	-	4.9	9.6	9.9
평균	3.3	1.2	2.1	6.1	0.2	0.3	0.3
N	927	338	589	-	45	89	92

〈附表 3-12〉 施設 種別 및 宗教別 無許可施設 從事者 賃金現況

(單位: 천원)

	(半点・ここ)
	평균보수 ¹⁾
시설종류별	
노인	280
아동	346
장애인	318
모자, 부녀	300
정신요양	355
부랑인	305
결핵	87
나장애인	400
종교별	
기독교	294
천주교	285
불교	659
기타종교	533
비종교	254
 전체	310

註: 1) 무급으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도 많으므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음.

〈附表 3-13〉 施設 種別 및 宗教別 無許可施設 收入規模와 構成比

(單位: 만원, %)

	시설수	총수입	자체수입	上	조금 및 지원	금	 기타
	시설구	371	사세구입	정부보조	외원보조	민간보조	잡수입
시설종류별							
노인	65	5,743(100.0)	34.7	6.0	5.8	33.3	20.2
아동	34	3,874(100.0)	44.3	2.8	11.2	31.8	9.9
장애인	123	4,912(100.0)	31.3	8.4	11.7	30.7	17.9
모자,부녀	2	2,605(100.0)	5.5	0.0	16.9	65.5	12.1
정신요양	5	8,118(100.0)	7.7	0.0	0.9	1.0	90.4
부랑인	25	4,767(100.0)	6.0	1.6	39.7	47.2	5.5
결핵	4	4,796(100.0)	0.0	21.1	0.0	71.1	7.8
나장애인	1	9,116(100.0)	0.0	100.0	0.0	0.0	0.0
종교별							
기독교	122	5,348(100.0)	37.6	4.3	13.2	21.1	23.8
카톨릭	90	5,003(100.0)	21.4	8.1	7.9	53.1	9.5
불교	8	7,168(100.0)	26.9	5.2	40.5	6.3	21.1
기타종교	7	4,470(100.0)	10.6	3.6	18.4	39.3	28.1
비종교	26	2,410(100.0)	28.8	29.9	3.9	8.3	29.1
전체	259 ¹⁾	4,550(100.0)	32.9	7.8	13.2	25.6	20.5

註: 1) 무응답 25사례는 제외하였음.

〈附表 3-14〉 施設 種別 宗教別 無許可施設 後援金 現況

(單位: 개소, 만원)

		,
종류	총시설수	평균후원금
시설종류별		
노인	76	2,571
아동	38	1,550
장애인	130	1,817
모자, 부녀	3	1,432
정신요양	5	192
부랑인	27	2,646
결핵	4	2,669
나장애인	1	0
종교별		
기독교	127	2,179
카톨릭	101	2,343
불교	9	3,300
기타종교	10	1,654
비종교	30	543
전체	284	2,034

〈附表 3-15〉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總支出 및 支出項目別 支出構成比

(單位: 만원, %)

		7	2 2 2		2.2.1.2	2222		3 3 3 3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전체
직접비	58.3	46.4	48.8	81.1	93.0	62.6	72.0	100.0	56.2
주식비	15.1	10.4	10.9	23.0	15.6	13.8	17.7	16.1	12.5
부식비	13.9	10.2	15.2	4.3	28.3	13.8	11.4	41.0	14.9
피복비	4.2	4.0	2.7	6.5	3.1	2.3	4.2	2.2	3.2
의료비	5.1	1.8	2.1	5.2	0.6	5.0	9.3	0.0	3.1
연료비	8.5	5.5	5.6	3.5	3.8	7.0	8.3	6.8	6.1
간식비	3.3	2.3	2.7	0.0	38.6	1.8	0.8	31.6	4.6
위생재료비	0.9	0.6	1.2	0.0	0.4	1.7	2.5	0.0	1.1
수용경비	1.6	2.4	2.6	25.4	1.0	10.8	9.1	2.3	3.4
공공요금	2.8	2.6	2.4	5.5	0.6	3.3	2.3	0.0	2.5
학용품비	1.2	2.8	1.3	7.7	0.9	1.7	0.4	0.0	1.5
교통비	1.7	3.8	2.1	0.0	0.1	1.4	6.0	0.0	3.3
간접비	41.7	53.6	51.2	18.9	7.0	37.4	28.0	0.0	43.8
인건비	21.5	28.1	25.2	17.8	1.6	13.7	5.2	0.0	21.8
시설유지비	4.7	7.8	7.0	0.0	0.3	6.1	14.2	0.0	6.2
서무비품비	2.3	2.0	2.2	1.1	0.3	2.9	4.3	0.0	2.2
제세공과금	6.7	4.8	3.6	0.0	3.6	10.8	3.6	0.0	5.2
기능보강사업	1.1	2.2	8.0	0.0	0.0	0.4	0.0	0.0	4.4
장비보강사업	0.6	1.1	2.0	0.0	0.7	1.5	0.0	0.0	1.4
기타	4.8	7.6	3.2	0.0	0.5	2.0	0.7	0.0	2.6
시설당 평균지출액	4,336	4,125	5,026	2,299	12,704	5,625	4,729	9,113	4,930
수입대비 지출액	75.5	106.5	102.3	88.3	156.5	118.0	99.2	100.0	108.4
전체	65	34	123	2	5	25	4	1	259 ¹⁾

註: 1) 무응답 25사례는 제외하였음.

〈附表 3-16〉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敷地面積

(單位: 개소, 천m², %)

	응답시설수	합 계	대지	전답	입야	기타
노인	67	6,011(100.0)	21.3	33.3	45.0	0.4
아동	31	1,939(100.0)	71.3	4.7	23.9	0.1
장애인	97	2,486(100.0)	30.4	36.7	18.5	14.4
모자·부녀	2	627(100.0)	100.0	0.0	0.0	0.0
정신요양	4	13,953(100.0)	22.6	12.0	65.4	0.0
부랑인	21	3,688(100.0)	28.0	36.7	34.0	1.3
결핵	3	3,790(100.0)	49.0	49.2	0.0	1.8
나장애인	_	_	_	_	_	-
전체	2251)	3,777(100.0)	28.6	31.3	36.9	3.2

註: 1) 무응답한 59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附表 3-17〉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建築面積 및 平均 建築面積

(單位: 개소, 천m², %)

	응답시설수	합계	철근조	벽돌조	연와조	스레트	목조	기타
노인	69	5,124(100.0)	36.4	23.6	14.0	12.5	3.6	9.9
아동	34	2,457(100.0)	38.1	28.6	13.4	5.1	7.2	7.6
장애인	119	10,643(100.0)	5.8	8.1	65.7	5.7	1.7	13.0
모자, 부녀	2	10(100.0)	0.0	0.0	100.0	0.0	0.0	0.0
정신요양	5	1,904(100.0)	87.4	4.7	0.0	0.0	7.9	0.0
부랑인	24	2,197(100.0)	3.6	15.6	7.8	29.2	2.2	41.6
결핵	4	1,132(100.0)	0.0	19.6	18.4	60.3	0.0	1.7
나장애인	1	688(100.0)	100.0	0.0	0.0	0.0	0.0	0.0
전체	258 ¹⁾	7,262(100.0)	18.6	15.3	37.8	10.3	4.3	13.7

註: 1) 무응답 26사례는 제외하였음.

〈附表 3-18〉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의 施設設備現況(設備率)

(單位: 개소, %)

	응답시설수	시무실	거실	교육훈련실	작업치료실	강당	상담실	도서실	오락휴게실	창고	기타
노인	76	46.1	69.7	2.6	13.2	18.4	15.4	5.3	22.4	40.8	34.2
아동	38	42.1	71.1	15.8	0.0	13.2	26.3	26.3	15.8	26.3	28.9
장애인	130	51.5	62.3	26.2	25.4	19.2	23.1	10.8	15.4	46.2	30.0
모자,부녀	3	100.0	66.7	0.0	0.0	0.0	33.3	0.0	0.0	0.0	33.3
정신요양	5	20.0	20.0	0.0	0.0	40.0	20.0	0.0	0.0	20.0	20.0
부랑인	27	70.4	70.4	11.1	3.7	25.9	14.8	3.7	11.1	44.4	33.3
결핵	4	50.0	100.0	0.0	25.0	75.0	25.0	0.0	50.0	75.0	50.0
나장애인	1	100.0	100.0	0.0	100.0	100.0	0.0	0.0	100.0	100.0	100.0
전체	284	49.3	65.5	15.8	16.2	20.1	20.4	10.2	17.3	41.5	31.7

〈附表 3-19〉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의 施設設備 安全度

(單位: 개소, %)

	시설수	전기 시설	가스 시설	냉방 시설	난방 시설	급수 시설	배수 시설	소화 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누전 차단시설	축대, 난간	비상구
노인	72	72.2	73.1	39.6	66.2	73.2	72.5	56.9	53.3	72.1	66.7	60.0
아동	34	72.2	81.8	56.5	71.4	75.0	73.5	56.3	63.6	77.1	72.4	53.6
장애인	126	65.9	63.6	33.0	58.1	53.3	56.6	40.2	50.7	68.1	65.6	46.9
모자,부녀	3	66.7	66.7	66.7	66.7	100.0	100.0	66.7	66.7	66.7	66.7	50.0
정신요양	5	60.0	60.0	60.0	60.0	60.0	60.0	40.0	50.0	80.0	50.0	60.0
부랑인	25	44.0	54.5	22.2	26.1	37.5	37.5	35.0	45.5	60.0	35.0	38.9
결핵	4	75.0	75.0	33.3	75.0	100.0	75.0	50.0	0.0	50.0	50.0	50.0
나장애인	1	0.0	0.0	0.0	0.0	0.0	0.0	0.0	_	0.0	0.0	0.0
전체	270 ¹⁾	66.2	67.6	37.5	59.4	61.3	61.8	46.7	52.2	69.3	63.1	50.7

註: 1) 무응답인 14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附表 3-20〉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 火災保險과 스프링클러 設置與否

(單位: 개소, %)

	응답시설수	화재보험가입여부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노인	65	16.9	5.0
아동	27	7.4	3.7
장애인	119	10.9	3.0
모자,부녀	3	0.0	0.0
정신요양	5	0.0	0.0
부랑인	22	4.5	0.0
결핵	4	0.0	0.0
나장애인	1	0.0	0.0
전체	2461)	11.4	3.2

註: 1) 무응답인 38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附表 3-21〉 施設 種別 1個 無許可 施設當 生活保護對象者 比率

(單位: 개소, 명,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u></u> 계
평균보호인원	18	18	20	7	57	33	28	30	22
생활보호대상자수	10	7	7	1	0	10	17	0	8
생활보호대상자율	55.6	38.9	35.0	14.3	0.0	30.3	60.7	0.0	35.4
N	76	38	130	3	5	27	4	1	284

〈附表 3-22〉 無許可施設 宗教別 1個 施設當 生活保護對象者 比率

(單位: 개소, 명, %)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비종교
평균보호인원	20	14	36	12	18
생활보호대상자수	7	8	13	4	9
생활보호대상자율	35.0	57.1	36.1	33.3	50.0
N	127	101	9	10	30

〈附表 3-23〉 施設 種別 門戶開放, 基準緩和 및 合法化에 대한 贊成率

(單位: %)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계
문호개방	93.8	92.9	88.3	100.0	80.0	100.0	100.0	-	91.5
기준완화	93.8	93.3	91.0	100.0	100.0	95.7	100.0	_	92.8
합법화	91.9	80.8	96.6	100.0	100.0	100.0	66.7	_	93.7

〈附表 3-24〉 無許可施設 宗敎別 門戶開放, 基準緩和 및 合法化에 대한 贊成率

(單位: %)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비종교	계
문화개방	95.9	84.8	100.0	88.9	86.4	91.5
기준완화	93.3	94.1	87.5	90.0	86.4	92.8
합법화	98.3	89.3	87.5	100.0	81.0	93.7

〈附表 3-25〉 生計費補助 및 施設運營費 補助에 대한 態度

(單位: 개소, 만원)

	크고 기교스	평:	균액수
	찬성 시설수 -	생계비	시설운영비
시설종류별			
노인	57	146	1,179
아동	21	56	1,632
장애인	112	140	1,897
모자,부녀	1	60	800
정신요양	5	96	192
부랑인	24	101	1,105
결핵	2	85	2,500
나장애인	_	_	
종교별			
기독교	115	146	1744
카톨릭	67	105	1460
불교	7	61	1097
기타종교	10	60	552
비종교	17	141	1206
N	222	128	1,564

〈附表 3-26〉 施設 種別 無許可施設의 適切한 收容人員

	노인	아동	장애인	모자/부녀	정신요양	부랑인	결핵	나장애인	<u></u> 계
10명 미만	22.8	43.3	32.2	100.0	25.0	8.7	25.0	-	35.2
11~15명 이하	42.1	20.0	18.6	0.0	25.0	23.0	0.0	_	18.0
16~20명 이하	17.4	16.7	22.0	0.0	25.0	40.2	0.0	_	23.8
21~25명 이하	7.8	16.7	13.6	0.0	0.0	8.7	50.0	_	10.7
26~30명 이하	10.9	3.3	13.6	0.0	25.0	19.4	25.0	_	1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64	30	118	1	4	23	4	0	244

註: 1) 무응답 40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附表 3-27〉 無許可施設 宗教別 適切む 收容二元

(單位: %)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비종교	계
10명 미만	21.1	54.0	25.0	22.2	50.0	35.2
11∼15명 이하	20.2	13.8	25.0	22.2	20.0	18.0
16~20명 이하	27.2	19.5	37.5	33.3	10.0	23.8
21~25명 이하	12.3	10.3	0.0	0.0	10.0	10.7
26~30명 이하	19.2	2.4	12.5	22.3	10.0	1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4	87	8	9	20	2381)

註: 1) 무응답 46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음.

附錄 4. 社會福祉法人

〈附表 4-1〉 地域別 社會福祉法人 分布

(單位:%)

 지역	법인수	비율
 서울	71	14.6
부산	49	10.1
대구	35	7.2
인천	17	3.5
광주	22	4.5
대전	18	3.7
경기	53	10.9
강원	21	4.3
충북	18	3.7
충남	38	7.8
전북	37	7.6
전남	34	7.0
경북	39	8.0
경남	27	5.5
제주	8	1.6
	487	100.0

註: 1) 무응답 2 제외

〈附表 4-2〉 地域別 法人 設立年度別 分布

(單位:%)

지 역	1949년 이하	1950~59	1960~69	1970~79	1980~89	1990~96	N
서 울	7.2	46.4	15.9	10.1	14.5	5.9	71
부 산	7.0	44.2	25.6	11.6	11.6	_	49
대 구	6.5	32.3	29.0	3.2	3.2	25.8	35
인 천	_	43.8	31.3	12.5	12.4	_	17
광 주	_	45.5	36.4	9.1	_	9.0	22
대 전	_	42.9	14.3	14.3	21.4	7.1	18
경 기	7.5	43.4	15.1	7.5	15.1	11.4	53
강 원	5.3	42.1	_	5.3	21.1	26.2	21
충 북	11.1	27.8	27.8	16.7	5.6	11.0	18
충 남	2.8	44.4	8.3	8.3	30.6	5.6	38
전 북	12.5	18.8	12.5	12.5	31.3	12.4	37
전 남	3.0	72.7	6.1	6.1	12.1	_	34
경 북	_	44.7	7.9	5.3	31.6	10.5	39
경 남	20.8	58.3	8.3	_	12.6	_	27
제 주		57.1	_	_	28.6	14.3	8
전 체	6.2	44.2	16.0	8.4	16.7	8.5	487

註: 무응답 2사례는 제외하였음.

〈附表 4-3〉 地域別 法人 種類別 分布

 지역		종 교	법 인		- 비종교법인	N
시 - -	기독교	천주교	불 교	기 타	미등파법인	IN
서울	32.4	5.6	1.4	_	60.6	71
부산	28.6	6.1	2.0	_	63.3	49
대구	25.7	14.3	_	2.9	57.1	35
인천	41.2	_	_	_	58.8	17
광주	54.5	13.6	_	_	31.9	22
대전	22.2	_	_	11.1	66.7	18
경기	30.2	5.7	3.8	1.9	58.4	53
강원	42.9	4.8	9.5	4.8	38.0	21
충북	27.8	22.2	5.6	_	44.4	18
충남	34.2	2.6	_	5.3	57.9	38
전북	24.3	8.1	2.7	10.8	54.1	37
전남	47.1	2.9	2.9	_	47.1	34
경북	28.2	10.3	5.1	2.6	53.8	39
경남	44.4	_	_	_	55.6	27
제주	12.5	_	12.5	_	75.0	8
전체	33.1	6.6	2.5	2.5	55.3	487

〈附表 4-4〉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總計

(單位: %)

								(—	122.
지역	1억미만	1~2억미만	2~5억미만	5~10억미만	10~20억미만	20~100억미만	100억이상	무응답	N
서울	=	1.4	1.4	12.7	26.8	33.8	14.1	9.8	71
부산	_	_	4.1	2.0	28.6	55.1	4.1	6.1	49
대구	2.9	2.9	8.6	14.3	22.9	31.4	5.7	11.3	35
인천	_	_	11.8	11.8	17.6	52.9	5.9	_	17
광주	_	_	9.1	9.1	22.7	45.5	4.5	9.1	22
대전	5.6	_	5.6	11.1	33.3	38.9	_	5.5	18
경기	_	3.8	9.4	17.0	17.0	35.8	11.3	5.7	53
강원	4.8	_	9.5	38.1	19.0	23.8	_	4.8	21
충북	5.6	5.6	5.6	11.1	22.2	33.3	_	16.6	18
충남	_	2.6	26.3	34.2	13.2	15.8	_	7.9	38
전북	_	8.1	16.2	24.3	18.9	24.3	5.4	2.8	37
전남	_	_	20.6	29.4	17.6	29.4	3.0	_	34
경북	7.7	2.6	12.8	33.3	20.5	20.5	2.6	_	39
경남	_	_	18.5	44.4	14.8	14.8	_	7.5	27
제주	14.3	_	14.3	28.6	28.6	-	-	14.2	8
전체	1.6	2.1	10.9	20.4	21.4	31.9	5.3	6.4	487

〈附表 4-5〉 法人種類別 任員現況: 理事 및 監事

지 역		종 교	법 인		- 비종교법인	N	
A =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미등파업인	11	
이사							
없음	1.2	3.1	_	_	1.5	1.4	
1~4명	1.2	3.1	_	_	3.0	2.2	
5~9명	92.6	84.4	83.3	100.0	90.8	91.0	
10 이상	5.0	9.4	16.7	_	4.7	5.4	
평균	5.9	5.8	6.7	6.7	5.9	5.9	
감사							
없음	1.9	3.1	_	=	1.8	1.8	
1명	0.6	_	_	_	0.7	0.6	
2명	96.3	93.8	100.0	58.3	97.0	95.7	
3명 이상	1.2	3.1	_	41.7	0.5	1.9	
(평균: 명)	2.0	2.0	2.0	2.4	2.0	2.0	

지역	이사	감사
서울 부산	6.28	1.97
부산	5.41	1.92
대구	5.43	2.03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6.12	2.00
광주	6.05	2.00
대전	5.72	1.94
경기	5.92	1.94
강원	6.67	2.10
충북	6.61	2.00
충남	5.58	1.95
전북	5.86	1.96
전남	6.09	2.09
경북	5.74	1.95
전남 경북 경남	6.22	2.00
제주	6.38	2.00
계	5.94	1.98

〈附表 4-7〉 法人種類別 專門分野別 任員 分布: 理事

						(單位:%)
		종 교	법 인		미즈크비시	الت ا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 비종교법인	전체
종교계 인사						
없음	32.1	18.8	25.0	25.0	59.8	46.2
1명	25.9	3.1	16.7	_	26.9	24.1
2명	17.9	6.3	8.3	33.3	7.7	11.7
3명∼5명	19.1	56.3	33.3	16.7	5.2	14.1
6명 이상	5.0	15.5	16.7	25.0	0.4	3.9
의사						
없음	74.1	87.5	58.3	83.3	66.8	70.8
1명	17.9	9.4	33.3	16.7	22.9	20.4
2명	6.8	3.1	_	_	6.6	6.1
3명 이상	1.2	_	8.4	_	3.7	2.7
사회복지전문가						
없음	37.7	71.9	75.0	50.0	37.3	40.9
1명	30.9	9.4	16.7	8.3	28.4	27.2
2명	16.0	9.4	8.3	33.3	20.3	18.2
3명 이상	15.4	9.3	_	8.4	14.0	13.7
교육계 인사						
없음	63.6	87.5	100.0	50.0	59.4	63.4
1명	22.8	3.1	_	33.3	25.5	22.7
2명	8.0	6.3	_	8.3	10.0	8.8
3명 이상	5.6	3.1	_	8.4	5.1	5.1
지역사회유지						
없음	40.7	87.5	33.3	58.3	39.9	43.6
1명	23.5	_	25.0	41.7	19.9	20.4
2명	16.7	6.3	8.3	_	12.2	12.9
_ 3명 ∼5명	18.5	6.2	33.4	_	24.0	20.7
6명 이상	0.6	_	-	_	4.0	2.4
기 타						
	63.6	75.0	41.7	58.3	42.8	52.1
2명						
			_	_	4.0	
없음 1명 2명 3명~5명 6명 이상	63.6 17.3 8.0 8.6 2.5	75.0 15.6 3.1 3.1 3.2	41.7 16.7 33.3 8.3	58.3 25.0 8.3 8.3	42.8 21.8 15.5 15.9 4.0	52.1 19.8 12.5 12.3 3.3

〈附表 4-8〉 法人種類別 専門分野別 任員 分布: 감사

		종 교	ul 즈 크비스l	-1 -1)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법인	전체
종교계 인사						
없음	69.8	25.0	66.7	50.0	86.7	75.7
1명	19.1	18.8	16.7	16.7	10.3	14.1
2명	11.1	56.2	16.6	33.3	3.0	10.2
의사						
없음	94.4	100.0	100.0	100.0	94.5	95.1
1명	5.6	-	-	_	5.2	4.7
2명	_	_	_	_	0.3	0.2
사회복지전문가						
없음	79.6	96.9	83.3	75.0	81.9	82.0
1명	15.4	3.1	16.7	25.0	15.1	14.7
2명	5.0	-	_	_	3.0	3.3
교육계 인사						
없음	86.4	90.6	91.7	100.0	83.0	85.3
1명	9.9	9.4	_	_	14.8	12.1
2명	3.7	_	8.3	_	2.2	2.6
지역사회유지						
없음	50.6	78.1	66.7	58.3	53.9	54.8
1명	31.5	12.5	16.7	16.7	25.8	26.4
2명	17.9	9.4	16.6	25.0	20.3	18.8
 기타						
없음	71.6	87.5	41.7	66.7	55.0	62.6
1명	19.1	3.1	33.3	33.3	24.7	21.9
2명	9.3	9.4	25.0	_	20.3	15.5

〈附表 4-9〉 法人種類 및 專門分野別 平均 理事 및 監事數

(單位: 명)

전문분야		종교	비종교법인	전체			
신군군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미중파법인	겐세	
이사							
종교계인사	1.63	3.78	2.83	3.58	0.65	1.30	
의사	0.36	0.16	0.58	0.17	0.50	0.43	
사회복지전문가	1.19	0.63	0.33	1.00	1.16	1.11	
교육계인사	0.60	0.28	0.00	0.75	0.62	0.58	
지역사회유지	1.27	0.41	1.83	0.42	1.61	1.39	
기타	0.87	0.75	1.08	0.75	1.39	1.15	
감사							
종교계인사	0.42	1.31	0.50	1.17	0.16	0.36	
의사	0.56	0.00	0.00	0.00	0.59	0.05	
사회복지전문가	0.25	0.03	0.17	0.25	0.21	0.21	
교육계인사	0.17	0.09	0.17	0.00	0.19	0.17	
지역사회유지	0.68	0.31	0.50	0.67	0.66	0.64	
기타	0.38	0.22	1.08	0.33	0.65	0.54	

〈附表 4-10〉 法人種類別 年間運營經費의 20/100以上을 充當할 수 있는 收益用 基本財産保有 與否 및 收益用 基本財産 保有規定에 관한 意見

		종 교	법 인		비종교법인	전체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미중파립인	신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여부							
없음 ¹⁾	45.3	62.5	33.3	_	53.3	49.5	
1~10% 미만	18.6	_	16.7	33.3	9.3	12.5	
10~30% 미만	18.0	21.9	41.7	33.3	19.6	20.1	
30~50% 미만	6.8	3.1	_	_	3.0	4.1	
50~80% 미만	4.3	_	_	16.7	9.6	7.2	
80~100% 미만	1.9	_	_	_	0.4	0.8	
100 이상	5.1	12.5	8.3	16.7	4.8	5.8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규정							
규정대로 20/100이 적합	7.5	21.9	_	_	6.7	7.6	
15/100으로 낮추었으면 함.	1.2	3.1	_	16.7	1.5	1.8	
10/100으로 낮추었으면 함.	11.2	18.8	25.0	25.0	17.0	15.6	
50/100으로 낮추었으면 함.	1.9	3.1	_	_	0.7	1.2	
전면폐지하였으면 함.	59.6	21.9	50.0	50.0	60.4	57.1	
기타	5.0	_	8.3	8.3	4.8	4.7	
무응답	13.6	31.2	16.7	_	8.9	12.0	

註: 1)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11〉 現行 社會福祉關係 法令中 改正의 必要性이 있다고 생각되는 法令

(單位:%)

관련법	응답수	비율
사회복지법	68	13.9
노인복지법	20	4.1
아동복지법	22	4.5
장애인복지법	15	3.1
모자복지법	4	0.8
생활보호법	14	2.9
전체	143	29.3

註: * 전체 응답대상 489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율임.

〈附表 4-12〉 法人種類別 個人이나 法人이 아닌 團體의 施設運營을 위한 門戶開放에 대한 意見

(單位:%)

 찬성여부		종교	비종교법인	الد الد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미중파립인	전체	
 찬 성	26.7	43.8	33.3	8.3	32.2	30.6	_
반 대	55.3	40.6	33.3	83.3	44.4	48.5	
무응답	18.0	15.6	33.4	8.4	23.4	20.9	

〈附表 4-13〉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總計

	1억미만	1~2억미만	2~5억미만	5~10억미만	10~20억미만	20~100억미만	100억이상	무응답	N
종교법인	1.8	0.9	12.0	18.0	18.0	33.2	7.4	8.7	217
기독교	1.9	1.2	13.6	17.9	17.9	34.6	6.2	6.7	162
천주교	3.1	_	3.1	15.6	12.5	31.3	12.5	21.9	32
불 교	_	_	18.2	36.4	18.2	27.2	_	_	11
기 타	_	=	8.3	8.3	33.3	25.0	16.7	8.4	12
비종교법인	1.5	3.0	10.0	22.1	24.0	31.4	3.7	4.3	271

〈附表 4-14〉 法人種類別 收益用 基本財産 및 普通財産

		;	종 교 법 인			비종교법인	전체
	소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可多亚自己	건세
수익용 기본재산							
없음 ¹⁾	47.9	46.9	68.8	45.5	8.3	47.2	47.5
5천만원 미만	7.4	8.0	3.1	9.1	8.3	7.0	7.2
5천만~1억 미만	6.0	7.4	_	-	8.3	7.0	6.6
1~3억 미만	17.1	18.5	6.3	18.2	25.0	12.9	14.8
3~5억 미만	6.0	5.6	6.3	9.1	8.3	6.3	6.1
5~10억 미만	7.4	6.8	6.3	18.1	8.3	8.9	8.2
10~20억 미만	4.1	3.1	6.3	-	16.7	5.2	4.7
20억 이상	4.1	3.7	2.9	_	16.8	5.5	4.9
보통재산							
없음 ²⁾	66.5	63.6	71.9	75.0	83.3	60.4	63.1
1천만원 미만	6.0	6.2	6.3	_	8.3	5.9	5.9
1~3천만원 미만	10.1	11.1	6.3	16.7	-	9.3	9.6
3~5천만원 미만	5.0	4.9	6.3	_	8.4	7.0	6.1
5~1억 미만	6.9	8.6	3.1	_	-	6.7	6.8
1~3억 미만	3.7	3.1	6.1	8.3	_	7.0	5.5
3~5억 미만	0.5	0.6	_	_	_	1.1	0.8
5억 이상	1.3	1.9	_	-	-	2.6	2.2

註: 1), 2)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15〉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總收入

(單位:%)

총수입			종교법인			비종교법인	 전체
중 구 합	소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미중교립인	신세
1천만원 미만	2.3	3.1	-	-	_	1.5	0.8
1~5천만원 미만	9.2	9.9	-	16.7	16.7	11.4	10.4
5천만~1억 미만	6.0	6.2	3.1	_	16.7	6.3	6.1
1~3억 미만	33.9	32.1	34.4	50.0	41.6	33.2	35.4
3~5억 미만	21.6	24.7	18.8	8.3	-	17.3	19.2
5~10억미만	13.3	11.1	21.9	8.3	25.0	16.6	15.1
10억 이상	10.1	8.6	21.8	8.3	-	8.5	9.1
무응답	3.6	4.3	_	8.4	_	5.2	3.9

〈附表 4-16〉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收益事業收入

(單位:%)

수익사업수입			종교법인		<u>전체</u>		
十月八百十百	소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법인	신세
없음 ¹⁾	39.0	37.7	59.4	41.7		44.3	41.9
5백만원 미만	15.1	18.5	-	16.7	8.3	12.5	13.7
5백~1천만원 미만	9.6	10.5	3.1	8.3	16.7	7.0	8.2
1~3천만원 미만	16.1	16.7	9.4	_	41.7	14.4	15.1
3~5천만원 미만	7.3	7.4	9.4	8.3	_	5.5	6.3
5천만~1억 미만	7.3	5.6	6.3	25.0	16.7	4.1	5.5
1~10억미만	5.1	3.1	12.4	_	16.6	9.6	7.5
10억 이상	0.5	0.5	=	_	=	2.6	1.8

〈附表 4-17〉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補助金 및 支援金中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補助

	1		종교법인			ul フ 크 비 Al	11ì
	 소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법인	전체
국고보조금							
없음 ¹⁾	28.6	29.0	25.0	33.3	27.3	32.8	30.9
1천만원 미만	_	-	-	_	-	_	-
1~5천만원 미만	1.8	1.9	3.1	_	-	3.0	2.5
5천만원~1억 미만	11.1	8.6	15.6	16.7	27.3	10.3	10.7
1~3억 미만	41.0	42.6	31.3	41.7	45.4	36.2	38.3
3~5억 미만	8.8	8.6	15.6	_	-	9.2	9.0
5~10억미만	6.5	7.4	3.1	8.3	-	6.3	6.4
10억 이상	2.2	1.9	6.3	_	_	2.2	2.2
지방비 보조							
없음 ²⁾	39.5	35.8	50.0	50.0	45.5	37.6	38.3
1천만원 미만	1.4	1.2	3.1	-	_	1.1	1.2
1~5천만원 미만	16.1	14.8	9.4	33.3	36.4	15.9	16.0
5천만~1억 미만	20.3	22.8	15.6	_	18.1	18.1	19.1
1∼3억 미만	18.4	20.4	15.6	16.7	_	21.0	19.9
3~5억 미만	2.3	2.5	3.1	-	_	3.7	3.1
5~10억 미만	1.8	1.9	3.2	_	_	2.2	2.0
10억 이상	0.2	0.6	_	_	_	0.4	0.4

註: 1), 2)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18〉 法人種類別 財政現況: 補助金 및 支援金中 外援團體補助 및 民間補助

(單位: %)

							(/ 0 /
			종교법인			미조그비이	الد الح
	소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법인	전체
외원단체보조							
없음 ¹⁾	74.3	76.5	56.3	83.3	83.3	81.2	78.1
5백만원 미만	3.7	2.5	9.4	-	8.3	3.7	3.7
5백만~1천만원 미만	9.6	11.7	-	8.3	8.4	4.8	7.0
1~3천만원 미만	7.8	7.4	12.5	8.4	-	7.0	7.4
3~5천만원 미만	-	-	-			1.1	0.6
5천만~1억 미만	1.4	0.6	6.3	=	-	1.1	1.2
1∼10억미만	2.3	1.3	9.4	-	-	0.7	1.4
10억 이상	0.9	_	6.1	_	_	0.4	0.6
민간보조							
없음 ²⁾	29.4	29.0	25.0	33.3	41.7	41.0	35.8
5백만원 미만	4.6	4.3	3.1	8.3	8.3	5.9	5.3
5백만~1천만원 미만	9.6	9.6	9.4		16.7	9.2	9.4
1~3천만원 미만	23.9	25.3	9.4	41.7	25.0	19.6	21.5
3~5천만원 미만	9.6	11.1	9.4			8.9	9.2
5천만~1억 미만	12.8	15.4	6.3	8.3	-	7.7	10.0
1∼10억미만	8.7	3.1	37.4	8.4	8.3	7.4	8.0
10억 이상	1.4	2.2	_	_	_	0.3	0.8

	1		종교법인		- 비종교법인	 전체	
	소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 미중파립인	신세
없음 ¹⁾	13.8	13.0	12.5	16.7	25.0	12.2	12.9
1백만원 미만	9.2	10.5	3.1	16.7	_	13.3	11.5
1~5백만원 미만	12.8	13.6	12.5	8.3	8.3	15.5	14.3
5백만~1천만원 미만	9.2	9.3	6.3	16.7	8.3	8.1	8.6
1~5천만원 미만	26.6	27.2	18.8	25.0	41.7	26.2	26.4
5천만~1억 미만	12.8	12.3	18.8	8.3	8.3	11.8	12.3
1~10억미만	14.7	13.6	25.0	8.3	8.4	11.1	12.7
10억 이상	0.9	0.5	3.0	_	_	1.8	1.3

註: 1), 2)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20〉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事業費 比率

(單位:%)

	10% 미만	10~19%	20~49%	50~79%	80% 이상
종교법인	40.0	9.0	36.2	11.9	2.9
기독교	43.9	8.4	32.3	12.9	2.5
천주교	29.0	9.7	38.7	16.1	6.5
불교	33.3	-	66.7	-	_
기타	25.0	25.0	50.0	_	_
비종교법인	41.4	10.9	37.1	9.0	1.6
전체	40.8	10.1	36.7	10.3	2.1

〈附表 4-21〉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事務費 比率

(單位:%)

	5% 미만	5~9%	10~19%	20~49%	50% 이상
종교법인	73.8	11.9	5.2	5.2	3.9
기독교	75.5	11.0	5.2	3.9	4.4
천주교	71.0	16.1	_	12.9	_
불교	58.3	16.7	8.3	8.3	8.4
기타	75.0	8.3	16.7	_	_
비종교법인	77.7	10.9	4.3	6.3	0.8
전체	76.0	11.4	4.7	5.8	2.1

〈附表 4-22〉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人件費 比率

	10% 미만	10~19%	20~49%	50% 이상
종교법인	40.0	5.2	45.2	9.6
기독교	40.0	4.5	47.7	7.8
천주교	38.7	12.9	25.8	22.6
불 교	41.7	_	50.0	8.3
기 타	41.7	_	58.3	_
비종교법인	44.1	3.5	38.3	14.1
전 체	42.3	4.3	41.4	12.0

〈附表 4-23〉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施設運營 轉出金 比率

	10% 미만	10~19%	20~49%	50~79%	80% 이상
종교법인	30.9	8.6	18.7	11.5	30.3
기독교	33.0	5.8	17.5	9.7	34.0
천주교	19.0	23.8	33.3	14.3	9.6
불교	33.3	_	16.7	16.7	33.3
기타	33.3	11.1	_	22.2	33.4
비종교법인	28.6	11.1	12.7	13.8	33.8
전체	29.6	10.1	15.2	12.8	32.3

〈附表 4-24〉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備品費 比率

(單位:%)

	1% 미만	1~4%	5~9%	10% 이상
종교법인	39.8	39.8	8.0	12.4
기독교	41.8	40.5	3.8	13.9
천주교	40.9	36.4	13.6	9.1
불교	_	66.7	16.7	16.6
기타	50.0	16.7	33.3	_
비종교법인	34.1	45.0	11.6	9.3
전체	36.8	42.6	9.9	10.7

〈附表 4-25〉 法人種類別 總支出中 제세 공과금 비율

(單位: %)

	1% 미만	1~4%	5~9%	10% 이상
종교법인	30.8	61.0	3.8	4.4
기독교	27.2	64.0	3.5	5.3
천주교	38.5	50.0	7.7	3.8
불교	44.4	55.6	_	_
기타	40.0	60.0	_	-
비종교법인	32.1	56.8	7.9	3.2
전체	31.5	58.7	6.0	3.8

〈附表 4-26〉 法人種類別 負債: 總計

(單位:%)

		2	비종교법인	전체			
•	소 계	: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대		기타	미중파법인	신세	
없음 ¹⁾	89.4	90.7	87.5	75.0	91.7	89.7	89.6
1천만원 미만	1.8	2.5	_	_	-	1.5	1.6
1~5천만원 미만	0.9	0.6	_	8.3	-	2.2	1.6
5~1억 미만	0.9	1.2	-	-	-	0.7	0.8
1~5억만원 미만	3.2	2.5	3.1	8.3	8.3	3.0	3.1
5~10억 미만	0.9	_	6.3	-	-	1.8	1.4
10억 이상	2.9	2.5	3.1	8.4	_	1.1	1.9

〈附表 4-27〉 法人種類別 目的事業, 收益事業 및 其他 負債

	:		ŋ 공크비시	الد اح			
	소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비종교법인	전체
목적사업 부채							
없 <u>음</u> 1)	93.1	95.1	87.5	83.3	91.7	94.4	93.9
1천만원 미만	0.9	1.2	-	_	-	0.7	0.8
1~5천만원 미만	0.5	0.6	_	_	-	2.2	1.4
5천만~1억 미만	0.9	1.2	-	_	-	0.4	0.6
1~5억만원 미만	1.8	0.6	3.1	8.3	8.3	0.7	1.2
5~10억 미만	0.9	_	6.3	_	-	0.1	1.0
10억 이상	1.9	1.3	3.1	8.4	_	1.5	1.1
목적사업 부채							
없음 ²⁾	97.2	97.5	100.0	91.7	91.7	95.2	96.1
1천만원 미만	0.5	0.6	_	_	-	0.4	0.4
1천만~1억 미만	1.4	0.6	_	8.3	8.3	0.7	1.0
1~5억 미만	0.5	0.6	_	_	-	2.2	1.4
5억 이상	0.4	0.7	_	_	_	1.5	1.1
기타부채							
없음 ³⁾	98.2	97.5	100.0	100.0	100.0	97.8	98.0
1천만원 미만	0.5	0.6	_	_	_	0.7	0.6
1천만~1억 미만	-	_	-	_	_	0.7	0.4
1~5억 미만	0.5	0.6	-	_	_	0.4	0.4
5억 이상	0.8	1.3	_	_	_	0.4	0.6

註: 1), 2), 3)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28〉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目的事業用 基本財産

(單位: %)

지	역	1억 미만	1~5억 미만	5~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억 이상	없음 ¹⁾	N
서	울	2.8	2.8	8.5	50.7	15.5	19.7	71
부	산	_	4.1	6.1	57.1	8.2	24.5	49
대	구	_	8.6	17.1	34.3	11.4	28.6	35
인	천	_	12.5	6.3	37.5	12.5	31.2	17
광	주	_	22.7	9.1	50.0	4.5	13.7	22
대	전	5.6	5.6	22.2	50.0	11.1	5.7	18
경	기	1.9	9.4	15.1	34.0	15.1	24.5	53
강	원	_	19.0	28.6	33.3	4.8	14.3	21
충	북	5.6	11.1	22.2	38.9	-	22.2	18
충	남	_	34.2	28.9	26.3	_	10.6	38
전	북	2.7	29.7	18.9	37.8	5.4	5.5	37
전	남	5.8	23.5	20.6	35.3	5.9	8.9	34
경	북	5.1	15.4	30.8	30.8	2.6	15.3	39
경	남	_	33.3	33.3	18.5	3.7	11.2	27
제	주	-	14.3	14.3	28.6	-	42.8	8
전	체	2.2	15.3	17.9	39.0	8.0	17.6	487

〈附表 4-29〉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目的事業用 基本財産

	1억 미만	1~5억 미만	5~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억 이상	없음 ¹⁾	N
종교법인	2.8	15.3	18.1	34.7	9.3	19.8	216
기독교	3.7	16.8	19.3	33.5	7.5	19.2	161
천주교	_	6.3	12.5	40.6	15.6	25.0	32
불교	-	27.3	27.3	18.2	9.1	18.1	11
기타	_	8.3	8.3	50.0	16.7	16.7	12
비종교법인	1.8	15.1	17.7	42.4	7.4	15.6	271

註: 1)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30〉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不動産

(單位: %)

지	역	1억 미만	1~5억 미만	5~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억 이상	없음 ¹⁾	N
서	울	1.4	2.8	12.7	54.9	16.9	11.3	71
부	산	_	8.2	8.2	67.3	10.2	6.1	49
대	구	_	14.7	26.5	35.3	14.7	8.8	35
인	천	_	11.8	17.6	58.8	11.8	-	17
광	주	_	18.2	13.6	54.5	_	13.7	22
대	전	11.1	5.6	16.7	50.0	11.1	5.5	18
경	기	1.9	13.2	22.6	37.7	15.1	9.5	53
강	원	_	23.8	23.8	38.1	4.8	9.5	21
충	북	11.1	15.6	27.8	45.5	_	_	18
충	남	_	34.2	26.3	26.3	_	13.2	38
전	북	8.1	18.9	21.6	40.5	5.4	5.5	37
전	남	8.8	23.5	23.5	38.2	6.0	-	34
경	북	7.7	23.1	33.3	30.8	2.6	2.5	39
경	남	_	37.0	33.3	18.5	3.7	7.5	27
제	주	_	14.3	28.6	28.6	_	28.5	8
전	체	3.1	16.3	21.2	42.7	8.5	8.2	487

註: 1)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31〉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不動産

(單位:%)

	1억 미만	1~5억 미만	5~10억 미만	10~50억 미만	50억 이상	없음 ¹⁾	N
종교법인	2.8	16.2	19.9	40.3	11.1	9.7	216
기독교	3.7	17.9	20.4	40.7	9.9	7.4	161
천주교	_	6.5	12.9	38.7	16.1	25.8	31
불 교	-	27.3	36.4	27.3	9.0	_	11
기 타	-	8.3	16.7	50.0	16.7	8.3	12
비종교법인	3.3	16.2	22.1	44.6	6.6	7.2	271

〈附表 4-32〉 地域別 法人의 資産現況: 動産

지	역	5천만원 미만	5천~1억 미만	1~5억 미만	5~10억 미만	10억 이상	없음 ¹⁾	N
서	울	11.4	2.9	17.1	_	2.9	65.7	71
부	산	18.4	6.1	10.2	6.1	4.1	55.1	49
대	구	20.6	2.9	14.7	2.9	2.9	56.0	35
인	천	11.8	_	5.9	_	-	82.3	17
광	주	22.7	-	9.1	4.5	4.5	59.2	22
대	전	5.9	-	_	5.9	17.6	70.6	18
경	기	15.7	5.9	7.8	3.9	5.9	60.8	53
강	원	9.5	14.3	9.5	_	-	66.7	21
충	북	22.2	5.6	5.6	_	-	66.6	18
충	남	28.9	2.6	10.5	_	-	58.0	38
전	북	21.6	8.1	2.7	_	-	67.6	37
전	남	23.5	8.8	14.7	_	-	53.0	34
경	북	15.4	2.6	5.1	_	-	76.9	39
경	남	34.6	3.8	11.5	_	-	50.1	27
제	주	25.0	_	_	_	_	75.0	8
전	체	18.7	4.6	9.8	1.7	8.5	56.7	487

註: 1) 없음에는 무응답도 포함됨.

〈附表 4-33〉 法人種類別 法人의 資産現況: 動産

(單位: %)

	5천만원 미만	5천~1억 미만	1~5억 미만	5~10억 미만	10억 이상	없음 ¹⁾	N
종교법인	20.4	4.2	8.8	0.9	1.8	63.9	216
기독교	20.5	3.7	9.9	1.2	1.9	62.8	161
천주교	15.6	6.3	6.3	_	3.1	68.7	31
불 교	16.7	8.3	_	_	-	75.0	11
기 타	36.4	_	9.1	_	-	54.5	12
비종교법인	17.2	4.9	10.5	2.2	3.0	62.2	271